#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시각예술분야를 중심으로-

2023. 1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시각예술 분야를 중심으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 연구 개요

#### 1. 서론

- 시각예술 분야는 미술시장의 성장세에 있으며,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매체 와 재료 등의 물질적인 작업을 비롯하여 비물질적인 창작행위 및 유통의 대 상이 다양화되고 있음
- 한편 미술시장의 성장세 이면에 구두계약 관행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불공정한 계약이행을 강요받는 경우도 많은 실정(법률신문, 2019)이며, 타 분야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과 재료, 작업환경에 따른 사고성 재해율과 현대미술의 특성상 심리적인 질병에 노출되어있음
- 시각예술 분야의 실태조사는 미술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이거나 전체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시각예술 분야에 특정한 산업재해 현장 및 종사자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는 부족한 실정임. 시각예술 분야에 관계하는 다양한 사업주/근로자 주체와 시의적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고찰하기 위한 다각적 연구가 필요함
- 산업재해로부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프리랜서 예술인도 2012년부터 임의가입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 입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2021년 이후 예술인산재보험 가입유지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신규가입자 수도 감소하는 등 가입현황은 부진한 상태임. 이에 임의가입 방식의 예술인산재보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의 산업재해 현황 및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의 대상적 범위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위한 15개분과 분류에 해당하는 미술(일반미술), 미술(전통미술), 미술(디자인/공예), 사진 분야로 설정하며,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정의)에 따라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면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및 기획을 통해 시각예술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관련된 계약을 맺는 자로 봄
- O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관계자 인터뷰, 현장조사, 설문조사로 진행함
  - 전문가 자문은 시각예술 분야 연구자를 포함한 8명 수행됨

- 관계자 인터뷰는 현재 시각예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5개의 포커스 그룹으로 나누어 13명의 인터뷰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함
- 현장조사는 시각예술인의 개인작업실, 공동작업실, 복합공간 10개 수행됨
- 설문조사는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예술인활동증명을 수행한 시각예술인 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법에 의해서 시각예술인의 작업여건, 산재현황, 산재보험 관련 인식 및 교육 수준, 예술인 산재보험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

#### 2. 시각예술인의 작업 활동과 환경

- 본 조사에서 현재 주로 활동하는 예술 분야는 '작가(92.4%)'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업 예술인 고용형태에 대한 「2021 예술인 산재보험」 조사 결과, 시각예술분야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가장 지배적인 고용형태로 나타 남. 이는 전체 예술인 평균(25.7%)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타 예술 분야에 비해 시각예술분야에서 1인 사업체의 고용 비율이 높았음
- O 시각예술인이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을 하는 관행이 여전히 나타남. 작업 시간과 계획의 변동성 많으며, 사전과 사후 작업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경향을 보임. 이는 불공정 계약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남
- 미술(일반미술), 미술(디자인, 공예) 분야의 창작활동을 하는 시각예술인의 작업공간은 공통적으로 '소음이나 먼지, 오염물질이 발생'하며, 활동 공간 및 매체의 다양화로 인해 일과 일상생활의 구분이 모호하며 예측이 어려운 위 험 요소가 증대하고 있음
- 그동안 개별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문학, 공연, 출 판, 음악, 영화 등에 비해, 미술은 개별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오다가 2023년 미술진흥법이 제정됨

#### 3. 시각예술인의 산업 재해 분석

- 시각예술인이 경험한 가장 심각한 업무상 사고는 주로 '전시 설치, 운송, 철 거'(41.8%)가 가장 높았으며, 주로 '개인창작공간(집 밖 별도 공간)'에서 발 생했다는 응답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가장 많이 겪는 직업관련 질 병은 '근골격계 질환 및 관절염'이 82.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전신피 로'(76.0%), '근육통이나 디스크'(53.5%) 등의 순이었음.
- 작업 과정 및 주된 작업공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소음이나 먼지, 오염물질이 발생한다'의 긍정 의견이 43.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스케줄로 인해 수면시간이 부족하다'(43.3%)는 결과가 나타남.
- 시각예술은 작업공간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창작공간 (집안)'이 지배적이며, 1인 작업 방식이 우세함. 이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더 라도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의 기인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O 대다수의 시각예술인은 사고 시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 비용으로 처리한 주된 이유는 '내 잘못으로 일어난 피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50.2%로 가장 높았음. 이는 시각예술의 개 별작업 속성에서 기인함
- 시각예술인의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한 인식수준은 '나는 예술활동에 필요한 안전 수칙을 잘 지킨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2.4%로 가장 높았으며, 예방 교육이 사고 및 예방 및 재해 대처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시각예술인 대부분은 예술 활동에 대한 안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음
- 시각예술인은 산재보험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 예술인의 8.7%만이 '민간 상해 보험과의 차이'를 안다고 응답했으며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70.2%로 높 게 나타난 반면, 시각예술인의 약 80%는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 는 시각예술인 스스로 작업환경의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됨
- 시각예술인에게 산재보험료를 개인이 부담하는 비중을 점차 낮추어 가며 질 문한 결과, 산재보험료 바담 여부와 부담 수준에 따라 가입 의향이 35% 내 외에서 80% 내외까지 다르게 나타남

○ 그러나 시각예술인의 43.3%가 산업재해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이 없다고 응답해, 여전히 산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이 추정됨

#### 4. 시각예술인 산업재해 대응과 정책 방향

- 시각예술의 작업특성 및 인식 수준에 부합하는 산재 대응 체계 구축 필요함. 특히, 작업 과정에서 분업구조가 공연, 영화, 방송 분야와 달리 개인 작업의 비중이 큰 상황을 고려하고 산재의 위험도에 대한 다양한 인식 수준을 반영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한 상황임
- 시각예술인 산재 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시각예술인의 사고 및 질병 경험에 비해 시각예술인의 산재 현황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실제 시각예술인의 특성에 맞는 보장 체계 설계를 위해서는 응답 자의 기억 및 진술에 의존하는 서베이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고비용 이 수반되는 보험 설계가 불가피한 상황임
- 점진적 보장 강화 및 보장 대상 확대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술인 산재보험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의 형태로 임의가입이 도입되어 자영업 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시작된 결과로 가능해진 것임. 이러한 점에서 2023년 노무제공자에게 당연적용된 사례는 노무제공의 성격을 갖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로 볼 수 있음
- O 현재의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 형태 외의 방식으로 예술인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는 직종을 특정하여 당연적용하는 방안과 특정 조건 하에서 임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는 아티스트피를 주고 작품을 의뢰한 경우에는, 보험 신고와 관리/납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산재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것이 도입가능할 것이라 전망되며, 실제 산재보험 적용 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O 시각예술 분야의 관행과 예술인의 인식도 산재보험 확대 적용의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보호 필요성과 보호 대상 적용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

성이 높음. 더불어 예술인 실제 작업 활동 기간과 산재보험 계약기간 불일 치의 문제가 예상됨

- O 시각예술 분야 현황과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징수 및 보상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종합저긍로 고려할 때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활으로 판단되며, 현실적으로는 예술인 산재보험의 임의 가입을 의무적용하는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공공사업 및 공공시설 이용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추진을 고려할 수 있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지원 소관기관과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다양한 미술 관련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미술 관련 사업들 중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시 및 작업공간 안전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위험 요인 파악하고 위험 대비 방안을 도출. 주요 재해를 야기하는 특수장비의 올바른 사용법과 사고 시 대처 방법을 포괄하는 <시각예술분야 안전가이드라인> 제시 및 전시 공간 및 레지던시 안전 관리 감독 체계를 수립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장치를 마련
- 시각예술인 고유 직업, 질병 대응체계 구축과 지역 기반 예술인 안전관리 시 스템 및 종합상해보험 도입을 통해, 당연 가입 산재보험을 궁극적인 이상 목 표로 추진하되 현실적으로는 상해보험 가입 확산과 보장 확대를 병행 추진

# 목차

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11
2장	시각예술 동향	18
	제1절 시각예술 현황	20
	1. 시각예술의 발전동향	20
	2. 시각예술 분야 환경 분석	22
	3. 시각예술의 다양화	27
	제2절 시각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경험	31
	1. 시각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쟁점	31
	2. 시각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방식	35
	3.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현황	40

3장	시각예술인의 작업 활동	48
	제1절 시각예술활동 일반 현황	50
	1. 활동 분야	50
	2. 소득 수준	54
	3. 고용 및 계약 현황	58
	제2절 시각예술 분야 작업 특성	69
	1. 작업 방식의 비정형성	69
	2. 개별 및 팀별 작업 특성	80
4장	시각예술인의 작업환경	86
	제1절 시각예술인의 작업공간 유형	88
	제2절 시각예술인의 작업공간 안전도	91
	1. 작업공간 위험 요소	91
	2. 작업공간 분석	96
5장	시각예술인의 산업 개해	106
	제1절 시각예술인의 산재 현황	108
	1. 시각예술인의 사고 현황	108
	2. 시각예술인의 질병현황	116
	제2절 시각예술인의 산재 대처 현황	120
	1. 시각예술인의 산재 대처 유형	120
	2. 사고와 질병에 대한 인식 및 교육	127
	제3절 시각예술인의 산재보험 인식	135
	제4절 시각예술인의 산재승인 및 보상현황	153
	1. 분석 대상	153
	2. 재해 특성 및 보상 현황	155

6장	시각예술 분야 산재 대응 정책 방향	158
	제1절 시각예술 분야 산재 대응 기본 방향	160
	1. 시각예술 분야 산재 보호 필요성	160
	2.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 산재 보호 방향	161
	제2절 산재보험 가입 확대	163
	1. 산재보험 확대 과정의 의의	163
	2.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확대	169
	제3절 시각예술 분야 안전 관리 시스템	173
	1. 전시 및 작업공간 안전 관리 감독 체계	173
	2. 안전 교육 강화	174
	3. 시각예술인 직업질병 대응 체계 구축	177
	4. 지역 기반 예술인 안전관리시스템과 종합상해보험 도입	180

참고문헌 / 184 부록/ 187

# 표 목차

〈표 1-1〉시각예술분야의 범위 설정(굵은 선 표시)	7
〈표 1-2〉「시각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른 시각예술 범위	8
〈표 1-3〉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따른 미술 분야 직종	9
〈표 1-4〉「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에 따른	
시각예술 범위	10
〈표 1-5〉시각예술 분야 주요 활동 공간	10
〈표 1-6〉 조사 항목 구성	12
〈표 1-7〉시각예술 분야 표본 설계	13
〈표 1-8〉설문 조사 개요	13
〈표 1-9〉 응답자 특성	14
〈표 1-10〉 FGI조사 대상자	15
〈표 1-11〉 FGI 개요	15
〈표 1-12〉 현장 조사 개요	16
〈표 1-13〉 전문가 자문 개요	17
〈표 2-1〉미술 시장 거래 작품 수(2010-2021)	20
〈표 2-2〉미술 시장 거래 금액 (2010-2021)	21
〈표 2-3〉 2022 한국 미술 시장 주요 내용	21
〈표 2-4〉 17개 시도별 문화예술활동 건수	22
〈표 2-5〉인구 10만 명당 전시 건수	23
〈표 2-6〉 17개 시도 문화시설 운영주체별 전시 건수	24
〈표 2-7〉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	40
〈표 2-8〉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경험	41
〈표 2-9〉 예술인 고용보험 인지도	42
〈표 2-10〉 예술활동 관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43
〈표 2-11〉 실업급여 수혜 경험	45
〈표 3-1〉 해당 분야 활동 기간	51
〈표 3-2〉화랑, 미술관 전시 개최 현황	52
〈표 3-3〉 지난 1년간 활동분야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	53
〈표 3-4〉시각예술 전시 건수 및 평균 전시 기간(시각/융합)	53
〈표 3-5〉 연간 소득-예술활동을 통한 총 소득	55

〈표 3-6〉 연간 소득-예술활동을 통한 직접 소득	56
〈표 3-7〉 개인수입 중 예술활동 수입	57
〈표 3-8〉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58
〈표 3-9〉 전업 예술인 고용형태	59
〈표 3-10〉시각예술인 겸업 고용형태	60
〈표 3-11〉 분야별 자유계약자 종사 여부	61
〈표 3-12〉예술활동 종류(복수응답)	62
〈표 3-13〉 지난 1년간 계약유형(최대3건) 계약기간	64
〈표 3-14〉지난 1년간 계약유형(최대 3건) 계약 금액	65
〈표 3-15〉 지난 1년간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	66
〈표 3-16〉예술 분야 및 활동유형별 일평균 작업시간	70
〈표 2-17〉가장 바쁠 때 일평균 작업시간	71
〈표 3-18〉 작업 전, 후 관련 업무 계약상 명시 여부	75
〈표 3-19〉 계약상 명시되지 않았으나 계약 수행시 작업 또는 업무 경	형험 여부-
아이디어, 기획, 리서치 등 준비 작업	76
〈표 3-20〉 계약상 명시되지 않았으나 계약 수행시 작업 또는 업무 경	켨험 여부-
작업 종료 후 유지·보수 관련 업무	77
〈표 3-21〉 주된 계약의 업무 시작일 결정 기준	79
〈표 3-22〉팀 단위 예술활동 계약 경험 여부	80
〈표 3-23〉 팀 단위 계약시 본인의 역할 수준	81
〈표 3-24〉 주된 계약 수행 목적으로 보조, 조수(어시스턴트 등) 고용 (	여부 83
〈표 4-25〉 가입하여 활동중인 예술인 단체,협회,조합 여부	85
〈표 4-1〉 활동 중인 공간 유형(복수응답)	89
〈표 4-2〉 개인 창작공간 보유현황	90
〈표 4-3〉 작업 과정 및 주된 작업공간에 대한 의견에 대한 상위 3개 응	답 92
〈표 4-4〉작업과정과 공간의 안전 정도	94
〈표 4-5〉 작업공간 분석 - 개인 작업실1	97
〈표 4-6〉 작업공간 분석 - 공동 작업실1	97
〈표 4-7〉 작업공간 분석 - 공동 작업실2	98
〈표 4-8〉 작업공간 분석 - 개인 작업실2	99
〈표 4-9〉 작업공간 분석 - 공동 작업실3	100
〈표 4-10〉 작업공간 분석 - 공동 작업실4	100
〈표 4-11〉 작업공간 분석 - 개인 작업실3	101
(표 4-12) 작업공가 부선 - 개인 작업식4	102

〈표 4-13〉 작업공간 분석 - 공공레지던시	103
〈표 4-14〉작업공간 분석 - 비영리전시공간	103
〈표 4-15〉시각예술분야 작업실의 주요 유해 · 위험요인	104
〈표 5-1〉 사고 직접 경험 여부-부딪힘	109
〈표 5-2〉 가장 크게(심각하게 당한 업무상 사고 발생시 예술 활동 유형	110
〈표 5-3〉 업무상 사고 직접 경험 여부	111
〈표 5-4〉 작업강도와 건강 악화	112
〈표 5-5〉 가장 크게(심각하게) 당한 업무상 사고의 목격자 유무	115
〈표 5-6〉 근골격계 질환 및 관절염 경험	117
〈표 5-7〉 직업 관련 질병 직접 경험 여부	117
〈표 5-8〉 피해 보상 없이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 이유(복수응답)	123
〈표 5-9〉 충분한 치료·재활을 받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	124
〈표 5-10〉 가장 크게(심각하게) 당한 업무상 사고로 인해 일을 쉰 기간	125
〈표 5-11〉 업무상 사고로 인해 일을 쉰 기간	126
(표 5-12) 예술 활동시 안전 수칙 인식-나는 예술 활동에 필요한 안전 수칙을	
잘 지킨다	127
(표 5-13) 예술 활동시 안전 수칙 인식 -내가 속한 예술 분야의 종사자들은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편이다	128
〈표 5-14〉예술 활동에 대한 안전 교육 경험 여부	129
〈표 5-15〉 안전 교육을 받은 기관(복수응답)	130
〈표 5-16〉예방 교육의 사고 예방과 재해 대처에 도움 유무	131
〈표 5-17〉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조건(복수응답)	134
〈표 5-18〉 산재보험 필요 정도	137
〈표 5-19〉 산재보험료 75% 부담시 가입 의향	139
〈표 5-20〉 산재보험료 50% 부담시 가입 의향	140
〈표 5-21〉 산재보험료 25% 부담시 가입 의향	141
〈표 5-22〉예술인산재보험 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143
〈표 5-23〉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의향	147
〈표 5-24〉 가장 주된 문화예술활동계약의 계약당사자	151
〈표 5-25〉예술인 산재보험 내용 인지 여부	152
〈표 5-26〉시각예술분야 재해자 현황	154
〈표 5-27〉시각예술분야 재해자의 재해 특성	156
〈표 5-28〉 대중문화예술인 요양승인자의 보상 특성	157
〈표 6-1〉 노무제공자의 적용범위	164

(표	6-2>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168
⟨표	6-3>	미술 관련 사업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지원 소관기관)	171
⟨표	6-4>	작가 구분별 전시 경험 수준	175
⟨표	6-5>	작가 커리어 형성 과정	175
⟨표	6-6>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2022년 기준)	178
⟨표	6-7>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2021년 기준)	179
⟨표	7-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189
⟨표	7-2>	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담보 및 가입금액 (2023년 기준)	193

# 그림 목차

[그림	1-1]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의 업무상 사고 직접 경험 비율	5
[그림	2-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	40
[그림	2-2] 가장 주된 문화예술용역계약의 계약 형태 및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43
[그림	2-3]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경험 유무	44
[그림	3-1] 활동 중인 예술 분야(복수응답)	50
[그림	3-2] 주 활동 예술 분야	51
[그림	3-3] 지난 1년간 활동분야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	52
[그림	3-4] 현 거주지 및 주된 예술활동 지역	54
[그림	3-5] 연간 소득	55
[그림	3-6] 예술활동 종류(복수응답)	61
[그림	3-7] 예술활동 계약 기간	63
[그림	3-8] 예술활동 계약 체결 형태	67
[그림	3-9] 예술활동 서면계약시 표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계약서 사용 여부	- 68
[그림	3-10] 시각예술인의 일평균 작업 시간	69
[그림	3-11] 가장 바쁠 때 일평균 작업시간	71
[그림	3-12] 야간/밤샘 작업 빈도	72
[그림	3-13] 작업 과정의 유연 정도	73
[그림	3-14] 작업 계획 관련 발생 정도	74
[그림	3-15] 계약상 명시 여부	74
[그림	3-16] 계약상 명시되지 않았으나 계약 수행시 작업 또는 업무 경험 여부	76
[그림	3-17]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전 준비기간 및 사후 보수기간	78
[그림	3-18] 주된 계약의 업무 시작일 결정 기준	78
[그림	3-19] 팀 단위 예술활동 계약 관련	80
[그림	3-20] 주된 계약 수행 목적으로 보조, 조수(어시스턴트 등) 고용 여부	82
[그림	3-21] 가입하여 활동중인 예술인 단체,협회,조합	84
[그림	4-1] 활동 중인 공간 유형(복수응답)	88
[그림	4-2] 작업 과정 및 주된 작업공간에 대한 의견	91
[그림	4-3] 작업과정과 공간의 안전 정도	93
[그림	5-1] 사고 목격 여부	108
[그림	5-2] 가장 크게(심각하게) 당한 업무상 사고 발생시 예술 활동 유형	110

[그림	5-3] 작업강도와 건강 손상	112
[그림	5-4] 가장 크게(심각하게) 당한 업무상 사고 발생 공간	114
[그림	5-5] 가장 크게(심각하게) 당한 업무상 사고의 목격자 유무	114
[그림	5-6] 직업 관련 질병 경험	116
[그림	5-7] 예술활동 스트레스(10점 만점)	118
[그림	5-8] 업무상 사고 피해 보상 방법	120
[그림	5-10] 피해 보상 없이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 이유(복수응답)	121
[그림	5-11] 피해 보상 없이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 이유(복수응답)	121
[그림	5-12] 본인 또는 동료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	로·재
	활 여부 및 받지 못하는 이유	123
[그림	5-13] 예술 활동시 안전 수칙 인식	127
[그림	5-14] 예술 활동에 대한 안전 교육 경험	129
[그림	5-15]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조건(복수응답)	132
[그림	5-16] 시각예술인의 산재보험 인지 정도	135
[그림	5-17] 산재보험 제도 이해도	136
[그림	5-18] 산재보험 필요 정도	136
[그림	5-19] 산재보험료 부담 비중별 가입 의향	138
[그림	5-20] 예술인산재보험 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142
[그림	5-21] 산업재해 대비 가입한 보험 종류(복수응답)	146
[그림	5-22] 예술인산재보험 가입 의향	146
[그림	5-23] 예술활동 재해나 질병 위험에 대한 대비 정도	148
[그림	5-24] 산재보험 가입 경험 및 수혜 경험	148
[그림	5-25] 개인 상해보험 가입 경험 및 수혜 경험	149
[그림	5-26] 단체 상해보험 가입 경험 및 수혜 경험	149
[그림	5-27] 예술인산재보험 가입 경로	150
[그림	5-28] 공공 예산 및 기금으로 운영하는 시각예술분야 사업 참여 경험	150
[그림	5-29] 예술인산재보험 내용 인지 여부	151
[그림	6-1] 아르코무대예술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176
[그림	7-1] 한국 지방 행정공제회	191
[그림	7-2] 자원봉사종합보험 업무매뉴얼(2022년 기준)	193
[그림	7-3] 예술인 산재보험 관리기구 추진 모델(안)	194

 $\prod$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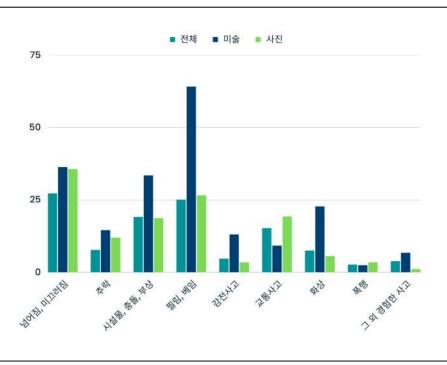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O 산업재해로부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1964년 500명 이상 광업과 제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된 산재보험이 적용 업종 과 규모 확대 끝에 2000년 7월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 특수근로종사자 대상 산재보험도 2008년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부터 적용된 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2023년 7월부터 전속성 규정 폐지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예외 없이 의무화됨
- O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다른 직군에 비해 상해, 실업 등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이 부족하였던 예술인 대상의 복지정책 추진
  - 2021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가의 연간 수입은 1,200만 원 미만이 86.6%, 평균 695만 원으로, 최저임금제 기준 2,187만 원의 31.7%에 불과함
  - 예술인은 대부분 자유계약자(75.2%)로 활동하고 있으며, 단기 일자리 또는 1인 사업체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음. 또 예술인의 업무상 상해 경험률(4.9%)은 근로자산업 재해율(21년 0.63%) 대비 7배 이상 높으며 대부분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83.1%)
  - 예술인 사회보험으로서 예술인 고용보험이 당연 가입 방식으로 2020년 12월 도입되어 2022년 3월 31일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의 취득 신고 건수는 305,624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수는 120,725명에 이름
- O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프리랜서 예술인 산 재보험 가입 제도의 운영을 임의가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가입현황 부진하

#### 여 개선방안 모색 중

-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8.5%에 그치며, 2022년 예술인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수는 1,767명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발표한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현물 지원 복지정책을 탈피하고 정책 다양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보험 강화 목표 제시
- 예술인 산재보험의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예술인 복지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예술인단체 및 사업주단체와 7차에 걸친 포럼을 진행하면서 산재보험 당연 가입 적용을 위한 연구 수행
- 또한, 예술인 산업재해 보호를 위한 예술분야별 연구로서 2022년 한국문화관광연구 원의 연구진에 의해 공연예술분야를 중심으로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수행
- O 시각예술의 작업 다양화에 따른 위험요인 증가로 사고와 질병 위험 증대하고 있으나 예술인에 대한 보호 장치는 미비함
  -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매체와 재료 등의 물질적인 작업을 비롯하여 비물질적인 창작행위까지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한 상황에 놓임
  - 창작 및 설치 과정에서 타 분야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과 재료, 작업환경에 따른 사고성 재해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의 특성상 심리적인 질병에 노출
  - 시각예술의 협업과 작업 공간의 다양성 증대는 시각예술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함
  - 사업주의 성격을 가지던 화랑, 미술관, 민간 업체, 공공기관 외에 개인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는 도제 방식의 창작행위, 공동스튜디오 운영, 프로젝트 단위로 결합하는 일
     시 업무 공간 등 작업의 공간 분업 다양성 증대



출처: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오종은 외), 연구진 표로 재구성

#### [그림 1-1]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의 업무상 사고 직접 경험 비율

- 미술시장은 성장세에 있으나 이에 따른 예술인의 공정계약 이행은 저조함
  -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2년 미술시장 규모 추산 결과'에 따르면, 미술시장은 1조 377원으로 추산되며 2021년 7563억원 대비 37.2% 증가한 수치임. 분아별로는 아트페어 매출액이 2021년(1889억원) 보다 59.8% 늘어난 3020억 원, 화랑을 통한 판매액 역시 2021년 31억 원보다 1880억원(59.8%) 증가한 5022억 원으로 증가 추세임(문화체육관광부, 2023).
  - 하지만 미술계는 구두계약 관행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불공정한 계약이행을 강요받는 경우도 많은 실정임(법률신문, 2019).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술계 종사자의 서면계약 경험비율은 33.7%에 그쳤음.
  - 이에 시각예술 분야에 관계하는 다양한 사업주/근로자 주체와 시의적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고찰하기 위한 다각적 연구가 필요함

## 2. 연구 목적

- O 본 연구는 시각예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술인의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하고, 산재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목적 1: 시각예술 분야와 관계하는 다양한 시장 주체와 다변화된 예술창작 및 업무 환경에 따른 업무적 특성을 파악하여 시각예술 분야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함
  - 연구목적 2: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의 산업재해 유형, 계약 및 근로환경의 특성, 그에 따른 현황 등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의 기초를 마련함
  - 연구목적 3: 시각예술 분야 현장의 요구와 개별적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서 산재보상 제도 개선과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및 후속 과제 등을 제안함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1) 연구 대상적 범위
  - O 이 연구의 '시각예술'의 범위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위한 15개 분과 분류에 해당하는 미술(일반미술), 미술(전통미술), 미술(디자인/공예), 사진 분야로 설정함
    - 「예술인복지법」제2조(정의)에 따르면,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함

<표 1-1> 시각예술분이의 범위 설정(굵은 선 표시)

문학	미술(일반미술)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음악)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활동증명 운영지침」에 따르면 "'미술'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로 공간 예술, 조형 예술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응용 미술'은 실제적인 효용에 목적을 둔 미술로 도안, 장식"등을 의미함. "'사진'은 빛의 작용으로 사물의 형상을 감광판(필름, 센서)에 각인시켜 보존하는 이미지를 뜻하며, 널리 사실의 기록과 증명의 수단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한편 사진가의 생각과 감성을 표현하는 창작수단"을 일컬음
  - 미술 분야 범주에는 그림, 판화, 조각, 공예, 서야, 디자인,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프랙탈 아트, 행위예술 등의 세부 장르와 미술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포함되며, 사진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

- O 본 '시각예술'의 범위는 예술 활동 유형(창작, 실연, 기술 지원 및 기획)이 포함된 개념임
  - 「시각예술인 실태조사」(김달진미술연구소, 2007)에서는 시각예술 범위를 창작분야, 비창작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에 한국화, 서양화, 조각 등과 큐레이터, 미술사가, 미 술평론가 등을 포함함

<표 1-2>「시각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른 시각예술 범위

구분	내용
	한국화 (문인화 포함)
	서양화 (수채화 포함)
	조각
창작 분야	공예
	판화
	서예
	영상설치
	큐레이터
비창작 분야	미술사가
	미술평론가

출처:시각예술인 실태조사(김달진미술연구소, 2007), p.31

-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개정판(2021)」에 따른 미술 분야의 직종은 창작, 전시, 유통, 기타로 분류됨. 각 직종에 따른 직업군은 다음 <표 1-3>과 같음

<표 1-3>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따른 미술 분야 직종

영역	직업군	직무내용
	작가	신작을 창작하거나 구작을 개변하는 업무
	어시스턴트	작가의 활동을 보조하는 업무
	테크니션	영상설치와 음악(음향) 등 기술적 측면과 관련된 전반적 지원
창작	평론가 (비평가)	특정전시의 전시 서문, 작가에 대한 비평문이나 평론 등을 작성해서 제공
	안무가	실연자들의 춤동작이나 움직임을 구성(퍼포밍 아트)
	실연자	안무가가 구성한 춤동작이나 움직임을 실연(퍼포밍 아트)
	기획자	전시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전반적인 문제들을 결정
	공간 디자이너	미술품 설치 방식 및 위치, 벽의 색깔, 공간의 높이와 폭, 조명의 위치와 세기, 관람자의 동선, 시선, 전시실 온도를 비롯하여 미술품을 보여주는 방식 전반을 디자인
	도록 디자이너	도록이나 전시기관의 출판물을 디자인하는 업무(예술인 고용보험 제외)
전시	도슨트	전시를 관람객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업무(예술인 고용보험 제외)
L: 1	에듀케이터	관람객이나 일반인이 전시와 미술을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 (예술인 고용보험 제외)
	홍보미케팅	전시와 관련하여 언론매체 응대 및 관리, VIP응대, 이벤트, 프로모션, 미디어 제휴, SNS관리, 콘텐츠 개발·디자인 등의 업무(예술인 고용보험 제외)
	행정	회원관리, 회계관리, 시설운영 및 관리, 대관, 티켓매니저, 전시장 지킴이, 안내 등(예술인 고용보험 제외)
	유통업자	미술품의 대여·중개 또는 판매(예술인 고용보험 제외)
유통	아트컨설턴트	공간 연출, 소장품, 전시공간 등과 관련하여 기획, 운영, 자문 등 일련의 컨설팅 제공(예술인 고용보험 제외)
	감정인	미술품의 진위나 예술적·문화적·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감정서 발급(예술인 고용보험 제외)
기타	설치·운송	미술품의 포장, 운송과 작품 설치, 수출·입시 선적 및 통관, 보험 업무 대행, 철거 등의 업무(예술인 고용보험 제외)

출처: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개정판(2021)-문화체육관광부, 2021) p.226

- O 또한, '시각예술' 범위에 포함되는 주요 활동 공간을 함께 고려하였음
  -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는 시각예술의 대상적 범위를 미술관 및 갤러리, 창작스튜디오 및 레지던시, 미술은행, 시각예술 비엔날레 및 축제, 예술지원기관, 기타 시각예술단체 및 기업으로 상정함

<표 1-4>「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에 따른 시각예술 범위

대상	내용
미스간 미 개기기	국공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문화시설의 전시공간, 비영리
미술관 및 갤러리	전시공간, 사립 갤러리
창작스튜디오 및 레지던시	국공립 및 사립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미술은행	각종 미술은행
시각예술 비엔날레 및 축제	비엔날레 및 시각예술 축제・행사
에스파이기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위원회), 지자체,
예술지원기관	기업문화재단
기타 시각예술단체 및 기업	전문예술법인-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기업 행사 등

출처: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p.6

- 본 연구에서는 시각예술 활동 유형별 주요 활동 공간을 <표 1-5>와 같이 구성하고 분석 시 활동 공간이 대표될 수 있도록 설계함

<표 1-5> 시각예술 분야 주요 활동 공간

예술 활동 유형	주요 활동 공간
- 창작, 실연	개인, 공동 작업실
창작, 실연	민간 및 국공립 레지던시
창작, 실연	(역0
창작, 실연	민간 및 국공립 미술관
창작, 실연	민간 회랑
_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복합미술공간, 비영리전시공간, 빈집
기술지원 및 기획	컨벤션센터(코엑스, 벡스코 등)

출처: 시간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p.6

#### 2) 연구의 내용적 범위

- O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의 산재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계획을 수립함
  -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인 보호를 위한 선행연구 및 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사항을 검토함
  -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산재보상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 구 방향을 설정함
- O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인의 사고 및 질병 경험 등 산업재해 현황을 조사함
  - 시각예술 분야의 작업 여건, 업무상 사고 및 질병 경험, 치료·보상, 산재보험 필요성 인식 등을 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
- O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인의 산재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언함

-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인의 산업재해 조사 결과의 시사점을 도출함
-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시 쟁점을 분석함
-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 및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 방향에 대한 후속 과제를 제안함

## 2. 연구 방법

#### 1) 문헌조사

O 시각예술 분야의 산업 재해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와 다른 직종의 산업 재해의 연구 및 사례를 조사함

#### 2) 설문 조사

- O 시각예술분야 예술인의 재해 및 산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시각예술 분야의 산업재해 실태 및 보험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며,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도 예술인의 작업 관련 사고·질병 경험 및 산업재해 보장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아, 시각예술 분야의 산재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예술인의 작업 여건,
     산업 재해 현황, 산재 인식 및 교육수준, 예술인 산재보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함
- 조사 항목은 시각예술 분야에 특화된 항목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시각예술 분야 현황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8; 김달진 외, 2007), 안전 관리를 위한 교육 자료 및 언론 기사, 예술인의 산재 현황 및 예술인 산재보험 연구(오종은 외, 2022; 차민경 외, 2022;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한국노동연구원, 2012)를 참고함
  - 또한, 시각예술인 FGI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 항목을 확정함

# <표 1-6> 조사 항목 구성

	조사 항목
	의평규 자연 시가
	OPH/밤샘 작업 빈도
7101 0171	활동 중인 공간 유형 작업 과정 및 주된 작업공간에 대한 의견 작업 계획 관련 발생 정도
작업 여건	작업 과정 및 주된 작업공간에 대한 의견 작업 계획 관련 발생 정도
	<u>역합 계획 원인 결정 정도                                 </u>
	작업 계획 관련 발생 정도 작업 과정의 유연 정도 작업과정과 공간의 안전 정도 사고 직접 경험 여부
	사고 직접 경험 여부
	사고 목격 여부   지나 1년 동안 사고 경헌 여부
	지난 1년 동안 사고 경험 여부 가장 크게(심각하게) 당한 업무상 사고 발생시 예술 활동 유형
	가장 크게(심각하게) 당한 업무상 사고 발생시 예술 활동 유형 가장 크게(심각하게) 당한 업무상 사고 발생 공간
산재현황	가장 크게(심각하게) 당한 업무상 사고로 인해 일을 쉰 기간
L/1127	가장 크게(심각하게) 당한 업무상 사고의 목격자 유무 어머사 자기 피해 비사 비번
	피해 보상 없이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 이유 본인 또는 동료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재활 여부
	지입 관련 질병 경험   산재보험 인지 정도
	중문한 시료·새왈을 맡지 못하는 이유   직업 관련 질병 경험   산재보험 인지 정도   산재보험 필요 정도
	사재보험료 부담 비중별 기입 의향
산재보험	산업재해 대비 기입한 보험 종류
관련	예술인산재보험 가입 경로 예술인산재보험 내용 인지 여부
	예술인산재보험 내용 인지 여부 예술인산재보험 가입 의향
	I 예숙인신채보역 가입 의양이 없는 이유
	메울 활동시 안전 수식 인식
산재 인식 및	예술 활동에 대한 안전 교육 경험 여부 아저 교육을 받은 기관
교육 수준	<u> </u>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조건
	l 확동 중인 예술 분야
	호 활동 예술 분야 해당 분야 활동 기간
	에ሪ 문약 필증 기년   지난 1년간 활동분야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
	연간 소득
	가입하여 활동중인 예술인 단체,협회,조합 여부 및 개수 가입하여 활동중인 예술인 단체,협회,조합에 회비 납부 여부
	기입하여 활동중인 예술인 단체.협회.조합에 회비 납부 여부 예술활동 계약 종류
	예술활동 계약 기업
예술활동	l 에수화도 게야 체견 형태
현황	예술활동 서면계약시 표순계약서 또는 그에 순하는 계약서 사용 여부
건당	티 다의 게야치 보이이 여한 스추
	l 계약상 명시 여부
	<u>   계약상 명시되지 않았으나 계약 수행시 작업 또는 업무 경험 여부                                  </u>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전 준비기간 주된 계약의 업무 시작일 결정 기준
	주된 계약의 업무 시작일 결정 기준 주된 계약 수행 목적으로 보조, 조수(어시스턴트 등) 고용 여부
	<u> </u>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경험 유무
	공공 예산 및 기금으로 운영하는 시각예술분야 시업 참여 경험 성별 연령
응답자	<u> </u>
특성	l 연 거수시
70	주된 예술활동 지역

- O 모집단은 예술인활동증명을 통해 등록된 예술인으로 설정함
  - 모집단 분포는 예술인활동증명의 예술 분과(전체 15개 분과 중 시각예술 4개 분과) 와 주 활동 영역(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교차표를 구성함
  - 목표표본 수는 모집단의 활동 분과/활동 영역별로 비례배분하여 확정함

<표 1-7> 시각예술 분야 표본 설계

구분	모집단 현황		합계	표본 배분			합계	
	창작	실연	<i>기술</i> 지원		창작	실연	<i>기술</i> 자원	
			및기획				및기획	
	20,814	94	644	21,552	424	2	13	439
(일반미술)								
울	5,559	38	97	5,694	114	1	2	117
_ (다인, 공예)	5,557		, ,					
울	2 6 2 5	85	8	2 720	74	2	1	77
(전통미술)	3,635	00	0	3,728	74	Z	l	//
사진	3,167	23	25	3,215	65	1	1	67
합계	33,175	240	774	34,189	677	6	17	700

○ 조사기간은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8일로,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조사 수행 <표 1-8> 설문 조사 개요

구 분	내용
생개사조	예술활동증명 완료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표 <u>본추출</u>	분야/활동 유형별 모집단 비율 기반 단순 비례배분법
유효표본	700명
조사기간	2023년 8월 29일 ~ 9월 8일
조사기관	(주)케이스탯리서치

- O 성별, 연령, 예술분야, 예술활동유형,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여부별 응답자 특성은 <표 1-9>와 같음
  -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은 여성(66.8%)이 남성(33.2%)보다 많았고, 30대(35.5%)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예술 분야 중에선 일반미술이 (62.7%) 디자인 /공예, 전통미술, 사진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예술 활동 유형에선 창작(96.7%)이 실연(0.9%), 기술지원 및 기획(2.4%)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표 1-9>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	구분	사례수	가중전 비율	가중후 비율
전체		(700)	100.0	100.0
が増	남성	(233)	33.2	33.2
·02	여성	(467)	66.8	66.8
	20 <sup>E</sup> H	(113)	16.1	16.2
	30EH	(247)	35.0	35.3
연령	40EH	(150)	21.3	21.4
110	50대	(96)	13.9	13.7
	60 <sup>C</sup> H	(72)	10.4	10.2
	70세 이상	(22)	3.3	3.2
	미술(일반미술)	(439)	61.6	62.7
예술분야	미술(디자인,공예)	(117)	16.9	16.7
에놀正아	미술(전통미술)	(77)	12.2	11.0
	사진	(67)	9.3	9.6
 예술활동	창작	(677)	96.8	96.7
	실연	(6)	0.8	0.9
유형 	기술지원 및 기획	(17)	2.4	2.4
예술인 고용보험	기입	(111)	15.7	15.8
개입 여부	미/입	(589)	84.3	84.2

#### 3) FGI

- O 현재 시각예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5개의 포커스 그룹으로 나 누어 13명의 인터뷰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함
  - 폭넓은 시각예술분야 예술인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술활동유형(창작, 기획, 기술지원) 및 예술활동공간 경험(개인·공동작업실, 민간·공공레지던시, 비영리전시공간, 사립·공립 미술관, 아트페어 등)별 시각예술인과 FGI를 수행함

<표 1-10> FGI조사 대상자

구분	예술분야	예술활동 유형	직 <del>종</del> /직업	활동공간
Α	미술(일반미술)	창작	설치	공동작업실
В	미술(일반미술)	기획 및 비평	기획, 비평	비영리전시공간
С	미술(일반미술)	창작, 기술지원 및 기획	호화, 기획	공동작업실
D	미술(일반미술)	창작, 기술지원 및 기획	공공미술, 설치, 기획	역이
Е	미술(일반미술)	창작, 기술지원 및 기획	공공미술, 조각, 기획	역이
F	미술(일반미술)	창작, 기술지원 및 기획	영상, 테크니션	국공립 미술관
G	미술(디자인, 공예)	창작	디자인, 출판	공동작업실
Н	미술(디자인, 공예)	창작, 기술지원 및 기획	디자인, 설치운송	아트페어
1	미술(일반미술) 미술(다자인, 공예)	창작	조각, 공예	공동작업실
J	미술(일반미술) 미술(다자인, 공예)	창작	설치, 리서치, 0月이브	민간레지던시
K	미술(일반미술) 미술(다자인, 공예)	창작, 기술지원 및 기획	설치, 디자인, 기획	국공립 레지던시
L	사진	창작, 기술지원 및 기획	사진, 기획	빈집, 폐건물
М	사진	창작, 기술지원 및 기획	사진, 테크니션	사립 미술관, 갤러리, 화랑

## 조사 기간은 2023년 8월 5일부터 9월 22일로, 눈덩이 표집을 통해 진행함

<표 1-11> FGI 개요

구 분	내용
생대사조	현장에서 활동 중인 시각예술인
TH 시스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표본추출	눈덩이 표집
대상인원	13명
조사기간	2023년 8월 29일 ~ 9월 8일

#### 4) 현장 조사

- O 시각 예술인의 활동 공간의 특징과 위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창작공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함
  - 개인작업실, 공동작업실, 공공레지던시, 비영리전시공간 10개 사례의 공간크기, 임차비, 안전시설, 주요작업, 장비, 지역을 조사하였으며, <표 1-12>와 같음

<표 1-12> 현장 조사 개요

구 분	공간크기( 평)	임차비(만원)	안전시설	주요작업	장비	지역
개인작업실1	90	(전세)5500	소화기, 환기(창문)	금속조각	산소용접기, 각종공구	경기도 안성시
개인작업실2	7	47	소화기, 환기(창문), 화재보험	판화 (실 <u>크스크</u> 린)	김광기 각종도구	경기도 안산시
개인작업실3	15	25	소화기, 환기(창문, 환풍기), 화재보험	호호	아크릴물감, 각종도구	인천광역시 중구
개인작업실4	32	65	소화기, 환기(창문, 환풍기), 화재보험	디자인	노트북, 컴퓨터	경기도 안산시
공동작업실1	50	(사카))	소화기, 환기(창문, 환풍기), 화재경보기, 화재보험	디자인, 호화, 조소	조소도구 각종공구	경기도 양평군
공동작업실2	40	50	소화기, 창문	조소	호이스트, 각 <del>종</del> 공구	경기도 가평군
공동작업실3	30	60	소화기, 환기(창문, 환풍기)	판화 (실크스크린 공판 목판)	감광기, 판화 프레스기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작업실4	25	100	소화기, 스프링클러, 환기(창문)	호화, 디자인, 설치운송	유화물감, 각종도구	서울시 동작구
공공레지던시	4	_	소화기, 창문	시각예술	드로잉도구 노트북	서울시 종로구
비영전시공간	160	100	소화기, 환기(창문, 환풍기)	시각예술, 복합장르	원형톱, 그라인더 및 각종도구	인천광역시 동구

## 5) 전문가 자문회의

- O 전문가 자문 위원은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와 다양한 쟁점을 이끌 수 있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함
- O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시각예술분야 내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의 필요성, 쟁점,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표 1-13> 전문가 자문 개요

자문 위원 분야	내용	일시
사립 갤러리 및 공립 미술관 운영, 기획자	사립갤러리 및 공립미술관 내 예술인 산재 적용에 대한 필요성 및 쟁점	2023.07.13
아트페어 기획 및 운영	아트페어 현황 및 산재보험 적용방안	2023.07.18
문화예술 공공지원	시각예술분야 산재 인식 및 산재 업무 대행 관련 쟁점	2023,07,27
장애 예술 지원	장애예술인 시업특징 및 산재 도입에 대한 의견	2023.07.28
문화예술 공공지원	사업 내 산재보험 가입 현황 및 시각예술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쟁점	2023,07,28
문화예술 공공지원	시각예술분이의 산재 및 상해보험의 적합성 및 업무 대행 관련 쟁점	2023,07,28
민간 상해 보험 설계	민간보험 예술인 적용 이슈	2023,10,13

II

# 시각예술 동향

1절 시각예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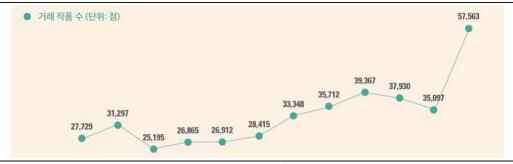
2절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제1절 시각예술 현황

## 1. 시각예술의 발전동향

- O 한국 미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2022년 국내 미술시장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함(문화체육관광부, 2018; 2022)
  - 2022미술 시장은 역대 최초로 미술품 유통액 1억 377억 원을 달성해 2021년 미술시장 대비 37.2% 성장함.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아트페어로, 매출액은 2021년 대비 59.8% 증가한 3.020억 원임(문화체육관광부, 2022)
- O 미술시장 거래 규모와 거래 금액은 2021년에 크게 증가하였음(문화체육관 광부, 2022)
  - 2021년 미술시장 작품 거래 금액 및 거래 작품 수는 경매회사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화랑이 높게 나타남

<표 2-1> 미술 시장 거래 작품 수(2010-2021)



출처: 2022 미술시장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

<표 2-2> 미술 시장 거래 금액 (2010-2021)



출처: 2022 미술시장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

○ 최근 한국 미술 시장의 주요 내용은 아트페어의 시장 점유율 증가, 국제 갤러리 및 옥션 하우스의 국내 유입, 경기침체로 인한 미술시장의 하락 예상, 거래 규모의 급증, 기업 미술관 및 갤러리 증대 예상, 젊은 개인 컬렉터의 부상, NFT 등 기술 변화에 대한 시장의 빠른 적응, 새로운 구매 및 수집가의 유입을 도모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효과로 정리할 수 있음(서울대학교외, 2022)

<표 2-3> 2022 한국 미술 시장 주요 내용

	내용
	갤러리는 한국 미술시장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나, 아트 페어는 시장 점유율을
1	늘리기 시작함. 아트페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이 95% 증가. 2021년에는
	갤러리, 옥션, 그리고 아트페어가 미술 시장의 48%, 35%, 15%를 차지
2	국제 갤러리와 옥션 하우스는 서울에 사무실과 지점을 개업함. Thaddaeus Ropac,
Ζ	König, Gladstone, 그리고 Tang Contemporary는 한남동과 청담동 등에 위치
	작품 경매 매출액 분석 결과, 한국의 포스트 팬데믹 아트 붐은 2021년 3분기에 정점에
3	달함.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미술 시장이 조정 단계를 마주하는
	일은 불가띠할 것임
1	한국 미술 시장의 거래 규모는 시장의 유동성 증가와 새로운 개인 구매자의 유입으로
4	인해 2021년에 9223억원으로 급증하였고, 2022년에는 1조 원을 넘음
Е	많은 한국 기업들이 리움(삼성),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스페이스 K(코오롱), 파라다이스
5	아트 센터와 같이 민간 미술관을 소유하고 있으나, 기업 미술관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미술관과 갤러리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
	현재 한국 시장에서 Gen-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가장 영향력 있는 개인 컬렉터
6	그룹임. 베이비 붐 세대와 Gen-X세대와 비교하여, 밀레니얼 세대는 한국 외의 외국
6	작가에 대한 선호도가 더 큼. 밀레니얼 컬렉터들은 향후 미술 구매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 국제 갤러리를 선택함
	한국 미술 시장은 NFT, DAO, AI 및 미술에 대한 분할 투자와 같은 기술적 변화에
7	빠르게 적응하는 데 미국과 유사한 활동 수준을 보임. 지난 1년 반동안 대한민국 전역에
7	다수의 예술가 콜렉티브가 생겨났으며, 예술가들은 개인 또는 공동작업을 제작하고
	전시를 기획하며 NFT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를 조직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음
	하고에너 디디털 프래포의 미슨 나자이 저투저이 기느의 버엉덩이 바므고난 개되기 그리고
8	한국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미술 시장의 전통적인 기능을 보완하여 박물관, 갤러리, 그리고
	옥션으로 새로운 구매자와 수집가의 유입을 늘리고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보임

출처: Korea Art Market(서울대학교 외. 2022)

- O 한국 미술시장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기반이 부족하여 정책 적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문화체육관광부, 2022)
- 미술 분야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미술인의 직업병 조사 및 이에 근거한 산재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산재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 및 교육이 필요함(양현미, 2014)

## 2. 시각예술 분야 환경 분석

- 1) 시각예술 국내 전시 현황
- O 2021년 시각예술 분야의 전시 건수 중 서울에서 개최된 전시가 총 5,562건 으로 가장 많이 개최되었고, 이어서 경기 1,602건, 부산 806건, 대구 759건 순임(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표 2-4> 17개 시도별 문화예술활동 건수

						융	합					
지역	시각	예술	공연	예술	문	학	공연 문		소	계	겨	
	전시 건수	비율	전시 건수	비율	전시 건수	비율	 전시 건수	비율	전시 건수	비율	전시 건수	비율

서울	5,562	42.0	9	36.0	38	36.2	0	0.0	47	35.9	5,609	42.0
부산	797	6.0	5	20.0	4	3.8	0	0.0	9	6.9	806	6.0
대구	750	5.7	3	12.0	6	5.7	0	0.0	9	6.9	759	5.7
인천	390	2.9	1	4.0	2	1.9	0	0.0	3	2.3	393	2.9
광주	355	2.7	2	8.0	1	1.0	0	0.0	3	2.3	358	2.7
대전	237	1.8	1	4.0	2	1.9	1	100	4	3.1	241	1.8
울산	232	1.8	2	8.0	0	0.0	0	0.0	2	1.5	234	1.8
세종	49	0.4	0	0.0	1	1.0	0	0.0	1	0.8	50	0.4
경기	1,572	11.9	0	0.0	30	28.6	0	0.0	30	22.9	1,602	12.0
강원	365	2.8	0	0.0	3	2.9	0	0.0	3	2.3	368	2.8
충북	246	1.9	0	0.0	4	3.8	0	0.0	4	3.1	250	1.9
충남	273	2.1	0	0.0	5	4.8	0	0.0	5	3.8	278	2.1
전북	382	2.9	1	4.0	1	1.0	0	0.0	2	1.5	384	2.9
전남	392	3.0	0	0.0	0	0.0	0	0.0	0	0.0	392	2.9
경북	713	5.4	1	4.0	3	2.9	0	0.0	4	3.1	717	5.4
경남	635	4.8	0	0.0	5	4.8	0	0.0	5	3.8	640	4.8
제주	283	2.1	0	0.0	0	0.0	0	0.0	0	0.0	283	2,1
계	13,233	100	25	100	105	100	1	100	131	100	13364	100

출처: 문예연감 2022(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인구 10만명 당 전시 건수는 전국 평균 25.9건이며, 인구 대비 전시가 가장 많이 열린 곳은 서울(59건)임. 이어 제주(41.8건), 대구(31.8건)으로 나타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표 2-5> 인구 10만 명당 전시 건수

단위: 천명, %

			융	합					
지역	(인구수)	시각예 술	(+공연 예술)	(+ <del>문</del> 학 )	(+공연 예술, 문학)	소계	개인전	단체전	전체
서울	(9509)	58.5	0.1	0.4	0	0.5	35.8	23.2	59
부산	(3350)	23.8	0.1	0.1	0	0.3	11.8	12.2	24.1
대구	(2385)	31.4	0.1	0.3	0	0.4	15.4	16.4	31.8
인천	(2948)	13.2	0	0.1	0	0.1	6.7	6.6	13.3
광주	(1442)	24.6	0.1	0.1	0	0.2	13.5	11.4	24.8
대전	(1452)	16.3	0.1	0.1	0.1	0.3	10.3	6.3	16.6
울산	(1122)	20.7	0.2	0	0	0.2	11.8	9.1	20.9
세종	(372)	13.2	0	0.3	0	0.3	8.6	4.8	13.4

경기	(13565)	11.6	0	0.2	0	0.2	6.7	5.1	11.8
강원	(1538)	23.7	0	0.2	0	0.2	13.1	10.8	23.9
충북	(1597)	15.4	0	0.3	0	0.3	8.9	6.8	15.7
충남	(2119)	12.9	0	0.2	0	0.2	7	6.1	13.1
전북	(1787)	21.4	0.1	0.1	0	0.1	11.8	9.7	21.5
전남	(1833)	21.4	0	0	0	0	10.6	10.8	21.4
경북	(2627)	27.1	0	0.1	0	0.2	16.6	10.7	27.3
경남	(3314)	19.2	0	0.2	0	0.2	11.3	8.1	19.3
제주	(677)	41.8	0	0	0	0	15.1	26.7	41.8
전국 평균	(51,639)	25.6	0	0.2	0	0,3	14.7	11.2	25.9

출처: 문예연감 2022(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 17개 시도 문화시설 운영주체별 전시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간보다 공공운영 문화시설에서 개최된 전시 비중이 높았음. 민간 운영시설 전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82.7%), 대전(64.3%), 광주(51.3%)순임(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표 2-6> 17개 시도 문화시설 운영주체별 전시 건수

단위: 건, %

7	1	전시장 운영주체					
구분	<u> </u>	공공	민간	계			
 //울	빈도	964	4,610	5,574			
	비율	17.3%	82.7%	100.0%			
부산	빈도	464	341	805			
<b>一</b> 世	비율	57.6%	42.4%	100.0%			
대구	빈도	475	284	759			
니구	비율	62.6%	37.4%	100.0%			
 인천	빈도	253	139	392			
간	비율	64.5%	35.5%	100.0%			
 광주	빈도	174	183	357			
<del>5</del> T	비율	48.7%	51.3%	100.0%			
대전	빈도	86	155	241			
네건	비율	35.7%	64.3%	100.0%			
으사	빈도	151	83	234			
울산	비율	64.5%	35.5%	100.0%			
네조	빈도	34	15	49			
세종 	비율	69.4%	30.6%	100.0%			

	빈도	907	683	1,590
경기	비율	57.0%	43.0%	100.0%
7101	빈도	244	123	367
강원	비율	66.5%	33.5%	100.0%
 충북	빈도	202	47	249
중독	비율	81.1%	18.9%	100.0%
	빈도	178	100	278
충남	비율	64.0%	36.0%	100.0%
	빈도	285	99	384
전북	비율	74.2%	25.8%	100.0%
	빈도	265	127	392
전남	비율	67.6%	32.4%	100.0%
 경북	빈도	592	100	692
6节	비율	85.5%	14.5%	100.0%
그러나	빈도	581	55	636
경남	비율	91.4%	8.6%	100.0%
 제주	빈도	228	55	283
^II <del></del>	비율	80.6%	19.4%	100.0%
	빈도	6,083	7,199	13,282
계 	비율	45.8%	54.2%	100.0%
	·		せ・ロ에のはた つりつつ/さして	그리에스이이라 2022/

출처: 문예연감 2022(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 2) 한국 미술시장 현황

## (1) 사업주의 영세성 및 편중

○ 『2022 미술시장 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작품판매금액기준 전체 598개 화랑의 1.7%에 해당하는 상위 10개 화랑의 시장 점유율은 71.6%로 화랑 간 격차가 심함. 또한 연간 작품판매금액 1천만 원 미만화랑이 26.0%(127개)를 차지했으며, 5천만 원 미만 화랑이 전체의 54.2%, 1억원 미만의 전체의 71.9%를 차지하였고, 판매 작품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간 10점 이하의 작품을 판매한 화랑이 40.8%(200개)를 차지했으며, 연간 50점 이하의 작품을 판매한 화랑이 전체의 70.2%를 차지함. 이외에도 서울 지역 화랑의 판매 작품 수가 16,933점으로 전체 판매량의 73.5%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적 편중이 심함. 또한 대표자를 포함한 화랑의 종사자 수는 평균 2.6명(총 1,562명)으로 조사됨.

- 전속작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화랑은 전체 화랑의 36.0%로 매출 규모 10 억 원 이상 화랑의 운영률이 80.3%로 전속작가 제도 역시 매출이 많은 화 랑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10억 원 이상 화랑에 소속된 작가 수 역시 평균 8.7명으로 가장 많았음
- 사립 미술관의 경우 미술관으로서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개인 또는 기업 등의 사적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리 활동에 제한이 없음.1)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박물관·사립 미술관의 경우 모기업이나 수익형 재산이 없는 경우 재정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며, 공적 지원, 입장료 수입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2021년 12월 기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등록 미술관 중66.7%(190개)²)를 차지하는 사립 미술관의 경우 평균 직원 수는 5명(전체 1005명), 평균 학예인력 수는 2명(전체 421명)명으로 조사됨³)

### (2) 전시기회의 제한

- 『2022 미술시장 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21년 전시 개최가 있는 화랑의 평균 전시 개최횟수는 약 9.6회이며, 전시 참가 작가수는 총 18,735명(평균 33.1명)으로 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음. 2021년 261개 미술관의 전시 개최횟수는 총 2,588회이며, 참가 작가수는 27,931명(평균 107.0명)으로 국・공립 미술관이 14.4회로 대학·사립 미술관 8.0회에 비해 약 1.8배 더 많음. 국・공립 미술관의 전시에 참여할수 있는 작가의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실제 전시에 참여하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게다가 대관전을 개최한 화랑이 전체의 30.3%를 차지하고 평균 개최횟수 역시 대관전이 7.5회로 가장 많으며 미술관의 경우에도 대관전을 개최한 미 술관이 전체의 39.6%를 차지하고 평균 개최횟수는 대관전이 10.4회로 가장

<sup>1)</sup>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경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비 영리성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제65집, 한국예술경영학회(2023), 211-238 참고.

<sup>2)</sup> 국립미술관 1개(0.4%), 공립미술관 79개(27,7%), 대학미술관 15개(5.3%) 등임.

<sup>3)</sup> 문화체육관광부,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22), 27면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작가가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대 관전이 전시 영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전속작가 제도를 운영하는 215개 화랑에 소속된 작가 수는 총 950명 (평균 4.4명)으로 전속작가 제도 운영을 통해 전시회 개최를 지원받는 작가 수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추정

## 3. 시각예술의 다양화

- 1) 창작 방식 및 유통 환경의 다양화
  - (1) 매체 및 창작 방식의 다양화
  - 재료의 확장과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기술과의 적극적인 결합에 따른 새로운 표현, 공표 방법의 등장과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장르의 발생은 예술의 창작뿐 아니라 유통 및 소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아날로그 매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물성 기반 작업 (object-based work)과 달리 비물성 기반 작업(nonobject-based work)이 증가함.<sup>4)</sup> 또한 영상, 공연, 게임 등 타 장르와의 융복합 역시 증가하고 있음. 미술진흥법 역시 미술을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행위예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미술품과 미술기록물 "작가가 미술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무형의 창작물"과 "미술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 중 보존할 가치를 지닌 기록"으로 정의하는 한편, "미술전시"란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활동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함

## (2) 유통 대상의 다양화

○ 『2022 미술시장 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미술시장 주요 유통영역에서 거래되는 작품은 조각·설치, 판화, 사진, 미디어아트,

<sup>4)</sup> 박경신, 2020, "미래의 소장품: 법제도적 준비; 저작권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SeMA Agenda 2020 '수집' <소유에서 공유로, 유물에서 비트로>』,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96쪽.

현대공예, 판화, 작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거래되는 있음. 전속작가 판매작품의 경우에도 판화, 조각ㆍ설치, 현대공예, 사진 등의 비율이 적지 않으며, 미술관이 구입하는 작품은 여전히 서양화 및 동양화가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조각ㆍ설치의 비율(34.2%), 사진 26.2%, 판화(18.1%), 현대공예(16.1%), 미디어아트(15.6%)의 비율 역시 상당히 높음. 또한 공공영역의 81.5%(작품설치 및 구입금액 기준)를 차지하는 건축물미술작품은 제작 및 설치 목적의 특성상 조각ㆍ설치작품, 미디어아트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전체 설치금액의 93.5%, 전체 설치작품 수의 82.2%)임

- 이에 따라 기존의 창작 영역 이외에 실연, 기술지원 인력 역시 증가하고 있음.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미술 (94.5%), 사진(92.6%), 공예(90.4%)는 예술활동 영역 중 창작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실연 역시 미술(13.5%), 공예(12.7%), 사진(11.4%) 모두 10%를 넘는 수치를 보여줌. 또한 사진은 기술지원 영역(7.9%)이 미술 분야(4.0%), 공예(4.8%)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O 국내 국공립 및 민간 레지던시의 경우에도 회화, 조각, 사진, 도예, 디자인, 설치, 뉴미디어, 영상, 퍼포먼스 등 지원 장르가 시각예술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함
- 미술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화랑의 아트페어 참여 횟수 및 아트페어 참여 작가 수가 큰 증가를 보이고 있음. 화랑참가 아트페어가 전체 작품판매 금액의 96.1%, 전체 판매 작품 수의 89.0%를 차지하고 있으나, 작가참가 아트페어 역시 41개(전체의 63.1%)가 운영되어 총 5,704명(평균 139.1명)의 작가가 아트페어를 통한 전시 기회를 얻었음. 아트페어 수입액의 경우자체 수입 비중이 70.2%로 가장 많았으나, 공공지원금(14.4%)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 『2022 미술시장 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21년 건축 물미술작품(총 금액 971억 원, 총 작품 수 672점)은 전체 공공영역의 작품 설치 및 구입금액(약 1,191억 원)의 81.5%, 전체 설치 및 구입작품 수 (2,348점)의 28.6%를 차지함. 화랑의 매출액을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건 축물미술작품을 통한 수입 역시 4.2%에 해당함

### 2) 시각예술 분야 법적 근거 확대

#### (1) 미술진흥법 제정

- 그동안 개별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문학, 공연, 출판, 음반, 영화 등에 비해, 예술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미술은 개별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왔음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미술진흥법이 제정됨
- O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미술 서비스업 신고,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함

## (2) 미술진흥 시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근거 법정화

- 2023년 미술진흥법 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제3 조)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 중·장기 기본방향, 미술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미술 창작·기획·전시 활동의 지원 등이 포함된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4조)

#### (3) 미술진흥 관련 다양한 지원 근거 마련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 창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7조)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미술 향유를 확대하고 미술 관련 서비 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술전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제8조)
- O 이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 및 미술품등의 전시·보존·보 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9조)
- O 누구든지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제15조제4항)
- (4)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동법 제13조) 및 미술 서비스업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동법 제14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화랑, 미술관뿐 아니라 미술 관련 단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5) 미술진흥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근거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미술 관련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미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 O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술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 제2절 시각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경험

## 1. 시각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쟁점

- O 개인 간 구두계약 위주의 불명확한 계약 관행
  - 미술계에서 미술관,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술인과 직접 용역계 약을 맺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구두계약을 맺는 것이 여전히 관행임
  -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이 아닌 작가 개인이 실연자, 어시트턴트, 테크니션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기획자 개인이 개인인 작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처럼 개인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어시스턴트와 같은 하위 인력들은 작가와 구두계약은 맺는 경우가 많아 계약 내용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 O 복수 용역체결에 따른 전속성 확보 미흡으로 고용보험 납부 주체인 주사업 주 확정 어려움
  -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달리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들은 비전속적 특징으로 인하여 동시에 복수의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용역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복수인 경우가 많음. 설사 전속계약을 체결한 작가인 경우에도 전속된 화랑이나 미술관이 아닌 제3의 기관과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함
  - 또한, 용역 기간, 인건비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납부 주체인 주사업주를 특히 복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용역대가, 용역 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여부가 문제임
- O 개인사업자 형태로 노무제공 경우 많음
  - 대부분의 작가는 개인(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활동함. 독립기획자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음. 테크니션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으나 개인사업자나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음. 작가나 기획자 등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라도 1인 자영업자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음
- 전시계약의 경우 근로 형태가 아닌 전시기간 중 필요시 전시기관 방문 형태

#### 로 작업

- 작가는 정기적 출퇴근하는 근로 형태가 아닌 자신의 집이나 별도의 공간에서 작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전시기관을 방문하며 일반적으로 전시 기간 중에도 전시장에 상주하지는 않음. 독립기획자는 기획 단계에 합류하여 신작 제작 등 전시의 전 과정에 참여함. 그러나 전시 기획 및 전시 기간 동안 정기적 출퇴근하는 근로 형태가 아닌 전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만 전시기관을 방문함
- 대부분의 테크니션은 작품의 기획 단계부터 전시 종료 후까지 참여함. 공간디 자이너는 대형 전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시 기획 단계부터 투입이 되며, 회의 가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참여함
- O 작가의 계약은 주로 용역계약의 형태로 체결됨
  - 창작, 전시 및 유통 관련하여 계약의 유형이 다양하지만 주로 용역계역을 체결함
  - 작가는 화랑/미술관/기관 등과 전시를 위한 구작 및 신작을 전시기관에게 인도하고 전시계약을 체결함. 작가가 전시와 관련하여 신작 제작을 의뢰받은 경우전시계약의 일부로 신작 제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또한 작가가 화랑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화랑에게 작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음
  - 의뢰를 받아 신작을 제작하거나 구작을 재해석해서 변형하는 경우 용역계약으로 볼 수 있음. 판매를 목적으로 신작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신작 제작 계약서 가 아닌 판매 계약서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음
  - 건축물미술작품이나 공공미술과 같이 예산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경우 작가는 원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의 형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사업주가 작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음
- O 아티스트 콜렉티브는 팀 단위 계약을 체결함
  - 아티스트 콜렉티브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나 임의단체 대표이지만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계약당사자의 노무제공 외에 팀원 등의 노무제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팀 단위 계약'을 체결함
- O 화랑이나 미술관과의 전속계약은 수익 배분을 내용으로 삼아서 용역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 특정 화랑이나 미술관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작가가 해당 화랑으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지급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작품 판매 수익 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화랑이나 미술관이 전속작가에게 소정의 금원을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 하는 경우라도 작가가 체결한 전속계약이 특정 결과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속계약을 용역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 화랑이나 미술관은 전속작가에 대한 관리만 할 뿐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전속계약을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 O 작가와 조수 사이에는 구두계약만을 체결한 경우가 많고 계약 체결시 인원 확정 어려움
  - 일반적으로 작가 조수는 오래 함께 작업을 해온 친분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만을 체결하며, 작가가 원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조수나 인원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함
  - 작가(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상시 출근함
- 독립기획자나 공간디자이너는 전시기관과 용역계약 체결 경우가 많음
  - 독립기획자의 경우 특정 전시의 기획에 한정하여 전시 기관과 개인 용역계약을 체결함
  - 공간디자이너는 전시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음
- 계약기간과 실제 노무 제공 기간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고용보험 납부 기간 확정이 어려움
  - 고용보험의 적용을 위해서는 계약기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계약기간과 실제 노무 제공 기간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 특히 전시계약의 경우 전시 기간만 명기되어 있거나, 신작 제작 계약의 경우 기간 없이 완성품의 인도일이나 설치일만 표기되어 있어 작가의 노무 제공시기 와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 이 경우 계약체결일을 계약시작일로 보고 계약체결일부터 전시 종료일 또는 작품 철거일이나 신작 인도일 또는 설치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기관의 예산 집행 규정상 신작 전시의 경우에도 전시 종료 후가 아닌 전시 시작전으로 명기하는 경우도 있음
  - 유명 작가나 기획자의 경우 전시 기획의 1~2년 전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실제 노무 제공기간과 계약 기간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

- 또한 출판계약이 아닌 한 전시 서문, 평론, 비평, 도록 영문 번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원고청탁서에 최종 원고 인도일만 명기되어 있음
- 따라서 고용보험 납부 기간을 계약서의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됨

#### O 작가의 어시스턴트 고용에 따른 불확실성 발생

- 작가가 어시스턴트나 조수를 고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작가가 사업 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미술 분야에서 작가가 어시스턴트를 고용하면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작가와 어시스턴트 간에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하며, 이런 경우 원사업주인 화랑, 미술 관, 업체, 공공기관 등이 작가의 어시스턴트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 책임을 지게할 수 있는지에 여부가 문제됨
- 특히 작가가 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조수나 인원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변경되는 경우 가 빈번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공미술처럼 원사업주가 직접 작가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체를 통해 신작 제작을 의뢰하거나 화랑이나 개인 딜러 등이 개인이나 기업 등 소장자를 대리하여 신작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보혐료 납부의 책임이 작가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에게 있는지 아니면 작가가 제공하는 용역의 최종 수요자에게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O '팀 단위 계약'에서 계약 체결 작가와 팀원과의 관계에 따라 신고주체 결정
  - '팀 단위 계약'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작가와 팀원과의 관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작가를 사업주로 보아 사업자로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
- 인건비와 제작비, 기타 경비 등의 구분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함
  - 신작 제작이나 전시의 경우에 순수한 용역대가인 인건비와 제작비, 기타 비용이 혼재되어 있음. 제작비에 작가비/사례비/초청비 등의 명목으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신작 제작의 경우 제작비와 함께 작가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며 작가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작비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작가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혼재함
  - 제작비가 기관의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작가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구작의 경우 작가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와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혼재함. 구작의 경우에도 해당 전시기관의 소장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가비가 지급되 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타 기관의 소장품에 대해서는 작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특히 전시를 위한 구작 대여의 경우 작가에게 별도로 작가 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O 고용보험 납부 기준이 되는 실제 노무 제공에 대한 인건비 확정이 어려움
  - 화랑과 전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시와 관련한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별도의 작가비나 사례비를 금원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전시 중 작품 판매 에 따른 수익 분배 형태로 대가를 지급받음
  - 특히 작가와 화랑 간의 경우 전시계약의 경우 인건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작가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하위 스태프의 인건비, 제작비, 각종 비용을 일 괄적으로 작가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 신작 제작이나 구작 개작을 위하여 작가가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도 판매계약의 형 태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작가는 판매대금 명목으로 노무 제공 대가를 수령함

## 2. 시각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방식

- 이 계약기간 동안 매월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함
  - 계약기간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에 따른 업무·과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획·분석, 자료수집 등 실질적인 업무·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정해야 함
  - 예술인인 계약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해 계약기간을 달리하여 작성해야 함
  - 다만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중 전시계약과 전시기획계약서의 경우 전시시관의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전시기간 이외에 별도로 계약기간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반면 건축물미술작품 제작계약서의 경우 건축주의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면서 제작·설치 기간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O 구작 대상의 소유권 양도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
  -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되, 소득·노무제공 개시일 등이 일정한 경우 적용 제외
  - 노무제공기간을 확정할 수 있는 신작 또는 개작의 완성을 위한 노무 제공은 포함되나, 예술인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완성해 놓은 구작의 경우 새로운 노무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 기간을 확정할 수 없기때문에 기완성된 구작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 양도에 대한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포함되지 않음
- O 사업자가 아닌 자연인 개인 사이의 문화예술용역 체결 시 원칙적으로 예술 인 고용보험 미적용되지만, 지속 반복적 관계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사업자가 아닌 자연인인 개인(예술인)과 개인(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은 자연인이 아닌 '사업'에 적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볼 수 없음
  - 그러나 개인 예술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연인인 개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계약을 지속적으로 반복 수행하여 실질적인 업(業)으로 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실질적으로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문화예술용 역 계약을 체결한 개인 예술인이 근로복지공단 등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격 확인청구'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진 작가 등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상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지게 됨
- O 개인사업자가 개인 자격으로 미술관 등과 문화예술용역 체결 시 미술관 등에 사업자로서 의무 부과
  - 미술관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작가, 기획자, 무대디자이너 등이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작가 등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자격으로 미술관 등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이 경우 개인사업자인 작가 등과 계약을 맺은 제작사나 미술관 등이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지게 됨
  - 해당 작가, 기획자 등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상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자영업자인 작가, 기획자 역시 예술 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다만 작가 등이 단기예술인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팀 단위 계약 경우, 계약당사자가 아닌 팀원이나 조수 등이 노무 제공시 예

술인 고용보험 적용되며, 계약당사자인 작가나 기획자도 노무 제공시 예술 인 고용보험 적용

- 팀 단위 일괄 수주 계약의 경우 형식적인 계약 당사자인 작가나 기획자가 아닌 팀원이나 조수 등이 소정의 노무를 제공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
- 계약의 당사자인 작가나 기획자 역시 단순히 팀의 대표로 계약만을 대표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작가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됨
- 그러나 만약 계약 당사자인 작가나 기획자가 해당 업무를 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이익을 위해 팀원이나 조수, 참여 작가 등 다른 사람을 사용한 경우에 는 계약 당사자인 작가나 기획자가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지게 됨
- 다만 해당 작가 등이 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하면서 조수 등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예술인 또는 예술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인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하며 일시적, 일회적으로 필요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음
- 화랑과 작가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음
  - 건축주, 전시업체 등이 화랑이나 매니지먼트 회사에 전속되어 있는 작가 및 화랑 등과 함께 3자 계약을 맺는 경우 화랑 등이 소속 작가와 체결한 전속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 화랑 등과 작가 간에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화랑 등과 작가 간에는 수익배분 계약만을 맺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건축주 등이 작가 및 화랑 등과 체결한 3자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는 건축주 등이 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상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지게 됨
- O 업체 간 계약 체결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의 실제 내용에 대한 개별 판단 필요
  - 미술관 등이 제작업체, 영상업체, 디자인업체, 음향업체, 설치업체, 도슨트 업체, 출판사 등과 업체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의 사업체이고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사업체에 소속된 직원 또는 사업체와 계약을 맺은 개인 예술인의 노무제공까지 포함된 경우에는 개별적 판단이 필요함

- 미술관 등이 도슨트 업체 등과 하청계약을 하는 경우 도슨트가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도슨트가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이 아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개인 예술인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사업주는 원청인 미술관 등이 아니라 미술관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가 됨
- 미술관, 건축주 등과 업체간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이 일부 업무를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의 2차 하청업체와 재하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경우(예시: 미술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디자인업체가 제작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공공미술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이때하위 단위에서 수행하는 이들의 경우 2차 하청업체와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형태로 수행하게 됨. 만약 2차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됨.이 경우 재하청계약을 맺은 2차 하청업체가 사업주가 됨.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일 경우, 재하청계약을 맺은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신고와 보험료 납부의무는 원수급인에 해당하는 1차 하청업체가 지게 됨
- 미술관, 건축주 등이 하나의 사업에 대해 다수의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하청계약을 맺은 사업체 등이 다시 다른 사업체와 재하청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재하청계약을 맺은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나 예술인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아닌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재하청계약을 맺은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예술인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됨. 이 경우 재하청계약을 맺은 사업체가 사업주가 됨.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하는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발주자)의 경우 재하청계약을 맺은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신고와 보험료 납부 의무는 발주자인 국가 등이 지게 됨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복수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시 해당 사업장에서 모두 피보험자격 획득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복수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고용보험료 역시 각 계약에서 산정한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원천공제로 지급하게 됨

- 다만 계약건별 월평균보수가 50만원 미만이지만 계약 중복기간 중 합산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예술인이 직접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을 신청해야 함
- O 예술인 고용보험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 산정은 노무제공 계약금을 기준으로 삼음
  - 고용보험법 상 예술인 고용보험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은 계약금액 중 예술인의 노무제공(인건비성 금액으로 노무 제공을 위해 수반되는 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료비 등 운영비를 포함하여 산정)에 대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 따라서, 사업주의 고용보험 신고 등 관리를 위해서는 일괄 용역계약금액 설정 이 아닌 노무제공 관련 비용과 노무제공과 관련없는 비용(기타비용 등)을 구분 하여 계약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상 미술창작대가 중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성 경비에 해당하는 창작사례비가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임

## 3.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현황

- O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소수의 시각예술인만이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시 예술인 고용보험을 가입함
  -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시각예술인은 15.8% 에 불과하였음

(n=700, 단위 : %)



출처:

#### [그림 2-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시각예술인은 남성일수록, 40대일수록, 사진분야일수록, 창작분야에 종사할수록 높았음

<표 2-7>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위 : %)

				<u>(단위 : %)</u>
	구분	사례수	가입하였다	가입하지 않았다
	전체	(700)	15.8	84.2
사내	남성	(233)	17.3	82.7
성별	여성	(467)	15.1	84.9
	20 <sup>C</sup> H	(113)	9.6	90.4
	30EH	(247)	18.4	81.6
Oded	40EH	(150)	22,3	77.7
연령	50CH	(96)	11.0	89.0
	60 <sup>C</sup> H	(72)	13.6	86.4
	70세 이상	(22)	3.9	96.1
	미술(일반미술)	(439)	18.9	81,1
예술분야	미술(디자인,공예)	(117)	8.2	91.8
에스군아	미술(전통미술)	(77)	5.7	94.3
	사진	(67)	20.9	79.1
예술활동 유형	창작	(677)	16.1	83.9
	실연	(6)	0.0	100.0
	기술지원 및 기획	(17)	11.8	88.2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예술인 복지재단의 등록 예술인의 매칭률은 약 32.5%수준으로(고용보험기입자 128,464명 중 41,706명),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지만 예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됨(근로복지공단, 2022)
- 시각예술인은 전체 예술인에 비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경험률이 낮음
  -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예술인 중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예술인은 7.7%인데 반해, 미술분야 4.6%, 공예분야 0.8%, 사진분야 5.5%로 낮은 비율을 보임. 특히 공예분야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았음

<표 2-8> 예술인 고용보험 기입 경험

(단위: %)

					<u>(근귀· /0)</u>
구 분		사례수	현재 가입 되어 있음	가입한 적 있으나 현재는 가입되어 있지 않음	가입하지 않음
	전체	(5109)	7.7	5.9	86.4
	1.문학	(479)	4.7	2.9	92.3
	2.미술	(820)	4.6	4.7	90.7
	3.공예	(213)	0.8	5,2	93.9
	4.사진	(201)	5.5	2.5	92
	5.건축	(186)	2.6	1.8	95.5
예술	6.음악	(475)	13.1	5.1	81.8
에는 활동	7.국악	(328)	9.8	5.6	84.6
	8.대중음악	(673)	3.8	3.1	93
분야	9.방송연예	(294)	16.8	8.9	74.3
	10.무용	(330)	14.4	10.4	75.2
	11.연극	(468)	12.6	13.8	73.7
	12.영화	(360)	8	11	81
	13.만화	(187)	13,1	6.2	80.7
	14.기타	(95)	9.7	1.7	88.6

출처: 2021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후 교육이나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이 납부된 공공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예술인의 경우 여전히 예술 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함
  -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예술인의 예술인 고용보험 인지도는 전체 예술인의 인지도보다 낮은 수준임.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있는 예술인은 7.1%인 반면, 시각예술인 중 미술분야는 3.9%, 공예분 야는 2.6%, 사진분야는 5%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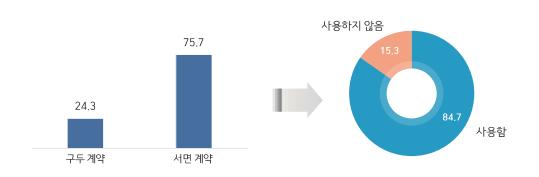
#### <표 2-9> 예술인 고용보험 인지도

(단위: %)

구 분		사례수	자세한 내 <del>용을</del> 알고 있음	제도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름	관심은 있지만 알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음	알고 있는 내용도 없고, 관심도 없음
7	전체	(5,109)	7.1	47.8	26	19.1
	1.문학	(479)	7.6	48.6	22	21.9
	2.미술	(820)	3.9	51.4	25.5	19.2
	3.공예	(213)	2.6	52.1	34.6	10.7
	4.사진	(201)	5	44.3	24.5	26.2
	5.건축	(186)	1	31.9	36.1	31
MI스	6.음악	(475)	6.8	47.6	25.7	19.9
예술 활동	7.국악	(328)	11.7	48.5	16.1	23.7
분야	8.대중음악	(673)	5.9	36.9	34.3	22.9
E-91	9.방송연예	(294)	9.5	54.3	20.1	16.1
	10.무용	(330)	11.7	44.2	27.2	16.9
	11.연극	(468)	11.7	54.8	21.3	12.1
	12.영화	(360)	8.9	55.4	24.7	10.9
	13.만화	(187)	11.2	48.6	30.3	10
	14.기타	(95)	12.7	44.2	27.8	15.3

출처: 2021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

- 예술인의 주된 계약 형태는 서면 계약이 75.7%였으며, 서면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은 84.7%였음(근로복지공단, 2022). 서면계약 및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제고되었으나 시각예술 분야의 계약 유형이 다양하여 고용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시각예술 분야 계약의 유형이 다양하고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예술인과 관련 기관들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여부인지를 파악하는데 모두 어려움 을 겪고 있음
  - 기관이나 업체별로 계약기간의 기준이 상이하여 예술인이 동일한 형태의 문화 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용보험 납부료 및 납부 기간이 상이하



출처: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근로복지공단, 2022)

[그림 2-2] 가장 주된 문화예술용역계약의 계약 형태 및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시각예술 분야는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이 전체 예술인에 비해 낮으며, 계약 체결 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시 각예술인이 월등히 많았음. 또한, 공공영역의 경우에도 지원기관의 직접 사 업이 아닌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2021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서면계약을 경험한 예술 인은 66%임. 미술 분야는 시각예술분야 중 가장 높은 비율로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한 반면, 공예분야는 가장 낮은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을 보임

<표 2-10> 예술활동 관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서면계약 경험자, 단위: %)

구 분		사례수	표준계약서 양식이다	표준계약서 양식이 아니다	모름
 전체		(2,044)	66	11.1	22.8
	1.문학	(121)	70.6	10.7	18.7
	2.미술	(243)	67.9	11.5	20.6
예술 활동 분야	3.공예	(53)	43.6	16.6	39.8
	4.사진	(45)	65.1	18.4	16.5
	5.건축	(81)	67.8	18.1	14.1

6.음악	(213)	64.7	5.4	29.9
7.국악	(137)	70.4	8	21.6
8.대중음악	(214)	56.8	12.1	31.1
9.방송연예	(164)	56.5	25.4	18.1
10.무용	(141)	67.5	4.4	28
11.연극	(269)	75	6.4	18.6
12.영화	(215)	70.5	11,2	18,3
13.만화	(111)	47.8	23	29.3
14.기타	(37)	81.5	4	14.6

출처: 2021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

- O 시각예술인이 지난 1년간 경험한 실업 급여 수혜 비율은 전체 예술인에 비해 저조함. 특히, 미술 분야는 시각예술인 중 실업 급여 수혜 경험이 가장 낮았음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예술인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시각예술인은 6.1%로 나타났으며,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3.9%였음

(n=700, 단위: %)



본 조사 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 [그림 2-3]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경험 유무

-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예술인의 실업급여 수혜 경험 비율은 공예(7.2%)에서 가장 높았고, 미술과(2.9%) 사진분야는(3.3%) 모두 전체 예술인(4.8%)보다 더 적은 실업급여 수혜를 경험하였음

<표 2-11> 실업급여 수혜 경험

(단위: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5,109)	4.8	95.2
	1.문학	(479)	4.7	95.3
	2.미술	(820)	2.9	97.1
	3.공예	(213)	7.2	92.8
	4.사진	(201)	3.3	96.7
	5.건축	(186)	2.8	97.2
예술 활동 분야	6.음악	(475)	6	94
	7.국악	(328)	4	96
	8.대중음악	(673)	4.9	95.1
	9.방송연예	(294)	6.5	93.5
	10.무용	(330)	1.2	98.8
	11.연극	(468)	5.4	94.6
	12.영화	(360)	8.9	91.1
	13.만화	(187)	0.7	99.3
	14.7 E	(95)	28	72

출처: 2021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

-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후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가 개정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됨. 개정 표준계약서 중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계약 유형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 규정이 포함되었으며, 표준계약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미술관 전시, 정부 전시보조사업에 적용되는 미술 창작대가 지급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됨. 2021년 7월 1일부터시행된「공예 분야 표준계약서」역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규정이 포함됨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하여 작가나 지원기관, 미술관, 갤러리 등이 충분 히 숙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입되었으나,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높은 국 공립미술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 및 가입이 비교적 높음. 또한 재정적·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수준이 낮아서 큰 반 발은 없었음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후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공공지원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다만, 화랑의 경우 실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아트페어의 경우에도 공적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기획전시에 참여하는 작가의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만, 아트페어 참여 화랑과 신작제작 계약을 체결한 작가들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파악되지 않음. 또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이 아닌 작가 개인이 실연자, 어시트턴트, 테크니션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기획자 개인이 개인인 작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처럼 개인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구두계약 포함)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비율은 파악되지 않음

### 3)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시사점

- O 예술인 고용보험 주체 경험의 시사점
  - 시각예술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고용보험 제도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공공기관 및 공공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도입되었음
  - 사회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시각분야 예술인들에게 사회보험에 대한 경험적 인식 제고 계기로 작용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의 어려운 점으로는 적용 대상 예술인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실임
  - 특히, 보상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산재보험의 경우 당연가입 형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용대상 예술인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방안의 필요성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이 단기간에 진행되면서 충분한 협의나 상세 절차 준비 없이 진행됨에 따라 원활한 도입에 어려움 초래되었음
  - 예술인 산재보험의 도입과 확장을 위해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예술인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에도 예술인
     고용보험과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 설명 바람직함

# 시각예술인의 작업 활동

1절 시각예술활동 일반 현황 2절 시각예술인의 작업 특성

## 제1절 시각예술활동 일반 현황

## 1. 활동 분야

- O 시각예술인이 현재 활동중이거나, 주로 활동하는 예술 분야는 '작가'임
  - 예술인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분야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작가'를 선택한 비율이 92.4%로 대부분이었으며, 이어서 '기획자'(20.6%), '공간 디자이 너'(6.0%) 등의 순이었음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3-1] 활동 중인 예술 분야(복수응답)

- 예술인이 주로 활동 중인 한 가지 예술분야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작가'를 선택한 비율이 88.6%로 가장 높았음

(n=700, 단위 : %)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3-2] 주 활동 예술 분야

- O 시각예술인은의 평균 활동 기간은 약 12년임(143.2개월)
  - 구간별로는 '10년~20년 미만'을 선택한 비율이 29.0%로 가장 높았음
  - 여성보다 남성의 활동 기간이 더 길었으며, 미술(전통미술)분야 및 실연유형의 시각예술인의 활동 기간이 월등히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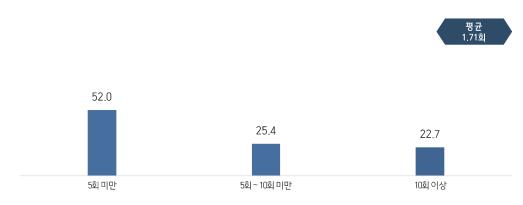
<표 3-1> 해당 분야 활동 기간

(단위 : %)

구분		사례수	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이상	〈평균 - 개월〉
	전체	(700)	23.1	27.6	29.0	20.3	143.20
人出	남성	(233)	13.1	24.7	27.4	34.8	192.32
성별	여성	(467)	28.0	29.0	29.9	13.1	118.76
	미술(일반미술)	(439)	24.0	29.7	29.4	16.8	130.67
예술	미술(디자인,공예)	(117)	28.7	29.5	28.7	13.1	117.94
분야	미술(전통미술)	(77)	5.8	23.9	30.5	39.7	227.30
	사진	(67)	26.9	14.9	25.4	32.8	172.70
예술	창작	(677)	23.0	27.5	29.1	20.4	143.93
활동	실연	(6)	16.7	16.7	0.0	66.7	235.00
유형 	기술지원 및 기획	(17)	29.4	35.3	35.3	0.0	81.41

본 좌열과를 표로 구성

O 시각예술인이 2022년에 예술작품 발표 및 참여한 횟수는 평균 1.71회로 나타남. 구간별로는 "5회 미만"의 비중이 52%로 가장 높았음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3-3] 지난 1년간 활동분이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

- O 「2022 미술시장조사」에 따르면 화랑, 미술관의 전시 개최 총 횟수는 각각 9.6회, 9.9회이며 연간 총 참여작가 수는 각각 33명, 107명임. 화랑, 미술관의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작가는 소수로 나타남
  - 국·공립 및 대학·사립 미술관의 경우, 전시 개최 횟수는 총 2,588회이며, 참가 작가 수는 27,931명(평균 107.0명)이었음
  - 전속작가 제도를 운영하는 215개 화랑에 소속된 작가 수는 총 950명(평균 4.4명)으로, 전속작가 제도 운영을 통해 전시회 개최를 지원받는 작가 수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추정됨

<표 3-2> 화랑, 미술관 전시 개최 현황

구분	사례수	연간 총개최횟수(회)		연간 총 참여작가 수(명)		연간 총 관람객 수(명)	
TE	기네구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화랑 전시 개최 현황	565	9.6	5,441	33.1	18,735	2,764.10	1,562,637
미술관 전시 개최 현황	261	9.9	2,588	107	27,931	39,202.50	10,231,848

출처: 2022 미술시장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2)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는 남성일수록, 고령층일수록, 전통미술 분야일수록, 창작 유형의 시각예술인일수록 많았음

#### <표 3-3> 지난 1년간 활동분이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

(단위:%)

	사례수	5회 미만	5호~10회 미만	10회 이상	〈평균 - 회〉	
	전체	(700)	52.0	25.4	22.7	1.71
성별	남성	(233)	47.4	26.9	25.6	1.78
~~~~~~~~~~~~~~~~~~~~~~~~~~~~~~~~~~~~~~	여성	(467)	54.3	24.6	21.2	1.67
	20대	(113)	56.0	23.3	20.7	1.65
	30FH	(247)	58.1	22.9	19.0	1.61
연령	40EH	(150)	51,4	25.8	22.8	1.71
긴당	50대	(96)	46.1	30.2	23.8	1.78
	60EH	(72)	39.2	26.2	34.6	1.95
	70세 이상	(22)	34.6	36.5	28.9	1.94
	미술(일반미술)	(439)	50.3	25.2	24.5	1.74
예술분야	미술(디자인,공예)	(117)	55.7	24.6	19.7	1.64
에돌군아	미술(전통미술)	(77)	41.2	32.8	26.0	1.85
	사진	(67)	68.7	19.4	11.9	1.43
 예술활동	창작	(677)	51.4	25.8	22.8	1.71
_	실연	(6)	50.0	33.3	16.7	1.67
유형 	기술지원 및 기획	(17)	76.5	5.9	17.6	1.41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2022 문예연감」에 따르면, 2021년 개최된 전시건수는 총 13,364건이며, 그중 시각예수 분야 전시는 13,233건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한편 평균 전시 기간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간 한정 전시가 다수 개 최된 결과로 보임(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표 3-4> 시각예술 전시 건수 및 평균 전시 기간(시각/융합)

(단위 : 건, %, 일)

구분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공연예술, 문학	소계	계
	전시건수	13,233	25	105	1	131	13,364
20241 4	비율	99%	0.2%	0.8%	0%	1%	100%
2021년	평균전시 기간(일)	29.7	21.7	47.8	76	43	29.8
	전시건수	6,277	21	80	1	102	6,379
2020	바울	98.4%	0.3%	1.3%	0%	1.60%	100%
년 	평균전시 기간(일)	47.3	28.5	36.2	89	35.2	47.1
004014	전시건수	14,995	102	150	9	261	15,256
2019년	비율	98.3%	0.70%	1.00%	0.10%	1.70%	100%

평균전시	26.4	9.6	42.7	38,8	29.6	26.4
기간(일)						

출처: 문예연감 2022(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 O 대부분의 시각예술인은 서울과 인천/경기에 거주하며, 예술활동 수행지역이 일정하지 않음
  - 예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울'을 선택한 비율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인천/경기'(30.4%)', '부산/울산/경남'(9.1%) 등의 순이었음
  - 주된 예술활동 지역의 경우 수행 지역이 '일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37.0%이었으며. '서울'을 선택한 응답이 30.1%로 가장 높았음

(n=70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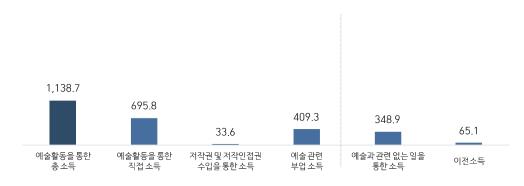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3-4] 현 거주지 및 주된 예술활동 지역

# 2. 소득 수준

- O 시각예술인의 2022년 연간 총소득 중 예술을 통한 직접 소득이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함
  - 시각예술인의 2022년 연간 총소득은 평균 1,138.74만 원이며, 그 중 '예술활동을 통한 직접 소득'이 695.8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이어서 '예술 관련 부업 소득'(409.32만 원), '예술과 관련 없는 일을 통한 소득'(348.94만 원) 등의 순이었음

(n=700, 단위 : 만원)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 [그림 3-5] 연간 소득

- 예술활동을 통한 총소득의 경우, 남성, 40대, 디자인·공예분야, 기술지원 및 기획 유형,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시각예술인이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 70세 이상, 전통미술, 실연, 예술인고용보험 미가입 시각예술인의 평균 소득은 가장 낮았음

<표 3-5> 연간 소득-예술활동을 통한 총 소득

(단위 : %)

	구분	사례수	500만 원 미만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	~	2,000만원 ~ 2,5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상	〈평균 - 만원〉
	전체		41.5	17.9	14.0	7.1	8.0	3.9	7.7	1,138.7
	남성	(233)	38.2	20.3	13.0	7.6	8.0	2.9	10.0	1,205.6
성별	여성	(467)	43.2	16.7	14.5	6.8	7.9	4.4	6.5	1,105.5
	20대	(113)	56.8	17.4	10.3	5.1	3.5	0.8	6.0	885.9
	30FH	(247)	39.5	14.2	15.8	6.7	10.3	4.8	8.7	1,279.3
연령	40EH	(150)	22.6	24.6	20.9	7.2	10.5	6.4	7.9	1,361.2
118	50대	(96)	44.6	15.1	11.1	6.0	8.0	2.1	13,1	1,201.2
	60EH	(72)	54.7	18.5	6.6	13.5	1,3	4.1	1.4	696.9
	70세 이상	(22)	57.4	26.0	3.9	3.9	8.8	0.0	0.0	525.1
	미술(일반미술)	(439)	39.3	18.0	13.7	8.1	9.7	3.8	7.4	1,102.3
예술	"얼다인광예	(117)	34.5	14.0	15.6	4.1	10.6	4.9	16.4	1,861.1
분야	미술(전통미술)	(77)	59.1	19.4	10.2	6.8	1.1	2.3	1.1	594.5
	사진	(67)	47.8	22.4	17.9	6.0	0.0	4.5	1.5	741.7
예술	창작	(677)	41.6	17.8	14.4	7.3	7.6	3.9	7.5	1,135.1

활동	실연	(6)	66.7	16.7	0.0	0.0	0.0	0.0	16,7	975
유형	기술지원 및 기획	(17)	29.4	23.5	5.9	0.0	23.5	5.9	11.8	1,339.7
예술인 고용보험	개입	(111)	27.3	19.3	20.5	10.7	10.6	4.4	7.1	1,212.1
기입이부	=  =   0	(589)	44.2	17.6	12.8	6.4	7.5	3,8	7.8	1,125

본 좌결과를 표로 구성

- 예술활동을 통한 직접소득의 경우, 남성, 30대, 디자인·공예, 기술지원 및 기획, 예술인고용보험 미가입 시각예술인의 직접소득이 가장 높고, 반면, 여성, 70세 이상, 실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시각예술인의 직접소득이 가장 낮음

# <표 3-6> 연간 소득-예술활동을 통한 직접 소득

(단위 : %)

-	구분	사례수	500만 원 미만	4 0000101	1,000만원 ~ 1,500만원 미만	1,500만원 ~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 2,500만원 미만	2,500만원 ~ 3,000만 원미만	3,000만원 이상	〈평균 - 만원〉
전체		(700)	61.8	14.3	8.1	4.0	5.0	1.5	5.1	695.8
	남성	(233)	58.5	15.0	9.7	4.2	6.3	0.8	5.4	731
성별	여성	(467)	63.5	14.0	7.3	3.9	4.4	1.9	5.0	678.3
	20대	(113)	72.5	9.5	7.7	1,6	2.6	0.8	5.2	651.2
	3054	(247)	56.4	15.0	10.7	3.5	5.6	2.0	6.7	804.7
연령	40FH	(150)	54.4	18.9	9.8	4.5	5.2	3.2	3.9	746.3
179	50대	(96)	62.7	11.2	4.0	7.0	7.1	0.0	8.0	742.1
	60EH	(72)	72.9	14.7	2.8	4.1	5.5	0.0	0.0	354.4
	70세 이상	(22)	78.6	12.6	4.4	4.4	0.0	0.0	0.0	276.7
	마술(일111일)	(439)	60.4	14.2	8.5	4.3	6.1	1.6	4.9	673.1
예술	単年に到	(117)	49.2	14.8	11.5	4.9	7.4	0.8	11.5	1,217.5
분야	마술(전통마술)	(77)	81.9	10.2	2.3	3.4	0.0	1.1	1,1	300.4
	사진	(67)	70.1	19.4	6.0	1.5	0.0	3.0	0.0	387.8
예술	창작	(677)	62.3	14.2	8.2	4.1	4.6	1.4	5.0	685.6
활동	실연	(6)	83,3	16.7	0.0	0.0	0.0	0.0	0.0	148.3
유형	기술지원 및 기획	(17)	35,3	17.6	5.9	0.0	23.5	5.9	11.8	1,294.4
예술인 고용보험	개입	(111)	52.1	23.0	12.5	3.5	3.5	0.9	4.4	653.5

가입여부	미기입	(589)	63.7	12.7	7.3	4.1	5.3	1.7	5.3	703.8

본 좌월를 표로 구성

O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예술인의 개인수입 중 예술활동 수입은 평균 694.6만원이었으며, 본 설문조사로 집계된 695.8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그러나 예술분야 중 미술(439.7만원)과 사진623.8만원)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남

<표 3-7> 개인수입 중 예술활동 수입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평균	중앙값	표 <del>준편</del> 차
	전체	5,059	694.6	30	2,777.4
	1.문학	(477)	449	36	1,372.80
	2.미술	(816)	439.7	0	1,598.50
	3.공예	(212)	623.8	150	1,131.20
	4.사진	(198)	328.4	0	721.9
	5.건축	(183)	4,441.80	1,000.00	11,281.30
	6.음악	(472)	365.8	20	737.1
예술	7.국악	(322)	359.7	1	670.6
분야	8.대중음악	(665)	445.4	10	2,003.80
	9.방송연예	(293)	2,690.10	700	6,497.00
	10.무용	(321)	634.6	50	1,827.00
	11.연극	(466)	491.6	100	980.2
	12.영화	(357)	966	100	2,029.20
	13.만화	(184)	1,868.20	700	3,948.90
	14.기타	(93)	603.3	0	1,582.80

# 3. 고용 및 계약 현황

O 시각예술인 중 전업으로 예술에 종사하는 비율은 미술분야가 가장 높고 (56.5%) 사진이 가장 낮았음(38.7%)

<표 3-8>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단위:%)

	구 분	사례수	예(전업)	아니오(겸업)
	전체	(5,109)	55.1	44.9
	1.문학	(479)	48.5	51.5
	2.미술	(820)	56.5	43.5
	3.공예	(213)	48.1	51.9
	4.사진	(201)	38.7	61.3
	5.건축	(186)	65	35
	6.음악	(475)	57.1	42.9
에스ㅂ아	7.국악	(328)	59.9	40.1
예술분야	8.대중음악	(673)	47.5	52.5
	9.방송연예	(294)	68	32
	10.무용	(330)	54	46
	11.연극	(468)	58.3	41.7
	12.영화	(360)	64.6	35.4
	13.만화	(187)	71.2	28.8
	14.기타	(95)	57.9	42.1

- 전업 예술인 고용형태에 대한 「2021 예술인 산재보험」 조사 결과, 시각예술분야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가장 지배적인 고용형태로 나타남. 이는 전체 예술인 평균(25.7%)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타 예술 분야에 비해 시각예술분야에서 1인 사업체의 고용 비율이 높았음
  - 이어서 미술 분야는 '기타'의 비율이 높았고(33.9%), 공예는 '기간제/계약직/임시직/촉 탁직'이 높았으며(13%), 사진분야는 '일용직/파트타임/시간제'가 높게 나타남(12.7%)

- 시각예술인은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자영업자'와 같은 형태 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보통 개인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 기획자를 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자기가 기획자이자 창작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제 주변에는 많거든요. 고용보다는 1인 사업자인거죠"(설치, 시각예술인 A)

<표 3-9> 전업 예술인 고용형태

(단위 : %)

	구 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인 사업체)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트타임 /시간제	정규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기타
건체		(2,787)	25.7	20.8	17	7.5	5.9	23.1
	1.문학	(224)	24.5	16.3	11.2	1.9	3.6	42.5
	2.미술	(421)	41.5	10	7.7	2	4.9	33.9
	3.공예	(113)	54.1	13	12.9	1.6	12.4	6
	4.사진	(75)	31.7	10.5	12.7	0	5,3	39.8
	5.건축	(121)	8,8	0.2	2.4	54.4	28.1	6.1
	6.음악	(269)	15.1	24.6	27.9	11	4.1	17.3
예술	7.국악	(189)	19.8	20.5	25.8	8.8	4.5	20.5
분야	8.대중음악	(299)	29	13.9	27.2	2.7	6.9	20.3
	9.방송연예	(196)	17.9	40,8	15.3	4.3	5	16.7
	10.무용	(174)	8.2	36.1	23.6	15.3	3,2	13.6
	11.연극	(271)	11,3	39.7	21.6	10	5	12.4
	12.영화	(231)	17.2	28.8	18.6	13.5	7.5	14.3
	13.만화	(143)	25.9	32.8	5.5	8,2	5.7	22
	14.7 E ·	(61)	32,2	20.6	7.1	26	6.4	7.6

- O 겸업의 경우, 미술, 공예, 사진 분야 모두 '기타'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예술인의 가장 지배적인 겸업 고용형태 또한 '기타'로 나타남
  - 미술(25.9%)과 공예(27.8%)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2순위로 높게 나타난 반면, 사진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사업체)' 비율이 높았음

<표 3-10> 시각예술인 겸업 고용형태

(단위:%)

	구 분	ᄱ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인 사업체)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트타임 /시간제	정규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기타
 전체		2,322	23.6	20.4	14.3	3.6	2.1	36
	1.문학	255	18.9	25.7	7.2	4.1	1.9	42.3
	2.미술	399	19	25.9	8.9	3,5	2.4	40.3
	3.공예	100	15.2	27.8	11.9	0.9	0.1	44.2
	4.사진	126	24.7	23.9	3.3	2.1	0.4	45.5
	5.건축	65	15.6	24	5.3	14.4	19.6	21
	6.음악	206	30.1	9.8	20.4	4.2	2.3	33.1
예술	7.국악	139	29.7	9.4	22.8	1.4	2.2	34.4
분야	8.대중음악	374	23	27.9	13.7	2.7	0.5	32.3
	9.방송연예	98	18	23.1	22.5	1.2	2.9	32.3
	10.무용	156	29.9	5.6	14.1	3.9	4.3	42.2
	11.연극	197	27.3	9.8	30.8	4.4	2.5	25.2
	12.영화	129	26.3	15.8	23.7	5.7	1.2	27.3
	13.만화	44	27.5	5.3	13.6	5.6	1.3	46.6
	14.기타	34	52.4	6.8	10	7.8	2.2	20.9

출처: 2021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

○ 지난 1년간 전업 예술인 중 자유계약자(프리랜서)는 78.2%, 겸업 예술인 중 자유계약자는 72.2%임(문화체육관광부, 2021). 그 중, 시각예술분야의 미술, 공예, 사진분야는 전업 예술인의 자유계약 비율이 전체 예술인과 같거나 이보다 높았고(미술: 78.2%, 공예: 73.3%, 사진: 80.9%), 겸업 예술인은 모두 전체 예술인 비율보다 낮은 수준이었음(미술: 66.7%, 공예: 72.4%, 사진: 69.5%)

#### <표 3-11> 분야별 자유계약자 종사 여부

(단위 : %)

							( - 11 )
분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전업예 <u>술</u> 인	73.5	78.2	73.3	80.9	18.4	77.8	74.4
겸업예술인	57.6	66.7	72.4	69.5	42.5	71.4	73.9
분야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전업예 <u>술</u> 인	89.3	91.5	72.7	80.2	82.3	87.7	47.2
겸업예술인	81	92.9	79.1	80,6	79.5	72	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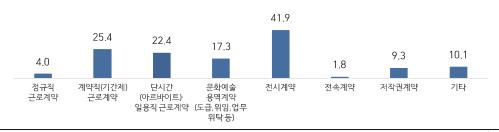
출처: 2021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

- O 시각예술인이 가장 많이 체결한 예술활동 계약 종류는 "전시계약"임
  - 예술인이 체결한 예술활동 계약의 종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시계약'을 선택한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음
  - 저작권 계약은 판매되거나 2차 저작물로 제작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미술 분야 에서 생소한 개념이었으나, 최근 일러스트를 활용한 2차 저작물이 판매가 늘어 남에 따라 저작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사실 그 저작권 개념이 NFT로 가면서 페인팅이나 시각 쪽 매체도 좀 생기는 거지, 원래는 기본적으로 그냥 회화작업에서 저작권 얘기가 많이 오고 가지는 않죠. 예를 들 면 실제로 그런 경우는 봤어요. 주변 지인 중에 작품이 어디 달력에 사용되거든요. 그 럴 경우는 이제 저작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회화. 기획. 시각예술인 C)

- 이어서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25.4%), '단시간(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계약'(22.4%), '문화예술 용역계약(도급, 위임, 업무 위탁 등)'(17.3%) 등의 순이었음
- '전속계약'을 선택한 비율은 1.8%에 그쳐 가장 낮게 나타남

(n=700, 단위 : %)



출처:

[그림 3-6] 예술활동 종류(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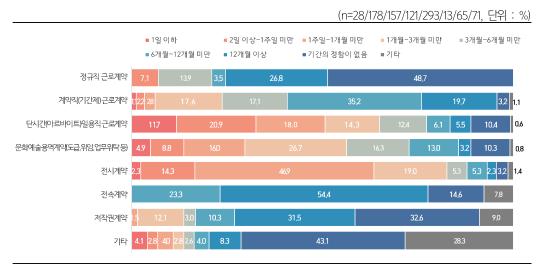
# <표 3-12> 예술활동 종류(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사례수	정규직 근로 계약	계약직 (기간제) 근로 계약	단시간 (아르바 이트)· 일용직 근로 계약	문화예술 용역계약 (도급, 위임, 업무 위탁 등)	전시 계약	건속 계약	저작권 계약	기타
:	전체	(700)	4.0	25.4	22.4	17.3	41.9	1.8	9.3	10.1
서벼	남성	(233)	5.0	22.6	18.8	16.8	47.1	1.2	5.4	8.6
성별	여성	(467)	3.5	26.7	24.2	17.6	39.3	2.1	11.3	10.9
	20대	(113)	4.3	20.0	42.1	12.1	43.5	3.5	8.7	6.8
	30EH	(247)	4.8	29.3	23.1	23.7	44.4	1.6	12.6	5.5
어크리	40EH	(150)	2.5	28.1	13.6	20.3	37.7	2.6	12.4	11.6
연령	50EH	(96)	4.8	17.3	16.2	10.3	42.8	0.0	2.9	19.8
	60EH	(72)	4.1	23.9	14.7	8.1	39.6	1.2	2.8	16.1
	70세 이상	(22)	0.0	29.4	25.1	12.3	37.1	0.0	3.9	7.8
	(얼머일)얼미	(439)	4.3	27.6	22.0	15.1	46.7	2.5	10.8	8.8
예술	미술(다인공예)	(117)	5.7	22.9	21.3	24.6	29.5	0.0	9.8	13.2
분야	미술(전통미술)	(77)	3.4	16.0	23.7	8.1	40.9	1,1	4.5	17.0
	사진	(67)	0.0	25.4	25.4	29.9	32.8	1.5	4.5	6.0
예술	창작	(677)	3.6	25.2	22.9	17.3	42.6	1.9	9.6	10.2
에르 활동	실연	(6)	0.0	16.7	0.0	16.7	50.0	0.0	0.0	16.7
유형 	기술지원 및 기획	(17)	23.5	35.3	11.8	17.6	11.8	0.0	0.0	5.9
예술인	기입	(111)	7.0	40.7	21.1	27.6	40.8	0.9	4.5	4.5
고용보험 기입 여부	미/입	(589)	3.5	22.5	22.6	15.4	42.1	2.0	10.2	11.2 표로 구성

본 좌월개를 표로 구성

- 예술인이 체결한 예술활동 계약 중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비중이 가장 큰 형태는 "전속계약" (54.4%)임. "전속계약"은 시각예술인의 예술활동 종 류 중 가장 드물게 이행되는 계약유형으로(1.8%), 시각예술인의 12개월 이 상 장기 계약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체결되고 있음을 드러냄
  - 예술인이 체결한 예술활동 계약의 계약기간 범위를 살펴본 결과, '전속계약'의 54.4%가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저작권계약'(31.5%), '정규직 근로계약'(26.8%) 등의 순이었음
  - 반면 '전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었던 비중이 63.5%로 가장 높았음



[그림 3-7] 예술활동 계약 기간

- 시각예술인의 평균 계약기간은 4개월로, 1-3개월 미만이 46%, 3-6개월 미만이 25% 순임
  - 미술, 공예, 사진의 평균 계약기간은 4.4개월, 4.7개월, 3.4개월임. 미술 (45.1%), 공예(38.2%), 사진(54.6%)은 계약기간이 1-3개월 미만이 경우가 모두 높게 나타남

<표 3-13> 지난 1년간 계약유형(최대3건) 계약기간

(단위 : %)

			1_2개위	2_6개위	6_127IPI	12개위		(년위: %) <b>ロス</b>
	구 분	사례수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마만	12개월 이상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620)	50.7	20.9	13.3	15.2	5	8
	1.문학	244	28.5	16.2	20.3	35	100	12.4
	2.미술	531	45.1	26.3	14.6	14	100	4.4
	3.공예	106	38.2	27.1	20	14.8	100	4.7
	4.사진	106	54.6	22.4	14.9	8.1	100	3.4
	5.건축	190	11,1	36.8	21,3	30.9	100	8.3
	6.음악	510	63.4	9.7	10.4	16.5	100	4.7
예술	7.국악	334	59.1	13	17.9	10	100	4.2
분야	8.대중음악	553	63,8	12.2	9.1	14.9	100	4.6
	9.방송연예	368	41.8	24.8	14.1	19.3	100	6.4
	10.무용	304	46.6	28.9	10.3	14.2	100	4.7
	11.연극	631	56.4	27.7	10.2	5.7	100	3.1
	12.영화	455	47.1	25.6	16.3	11	100	4
	13.만화	203	32.7	12	14.5	40.9	100	9.4
	14.기타	85	57.6	7.8	13.3	21.3	100	4.8

- O 지난 1년 계약 기준 시각예술인의 계약 금액은 미술, 공예가 180만원, 사진 이 100만원으로, 예술인 전체 평균보다(902만원)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 전체 예술분야에서 건축분야가 평균 금액이 가장 높았고(11,239.7만원), 다음으로 방송연예(1700.5만원) 순임
  - 평균금액이 낮은 분야는 국악(257.5만원), 사진(302.8만원)분야였음

# <표 3-14>지난 1년간 계약유형(최대 3건) 계약 금액

(단위 : %, 만원)

	구 분	사례 수	50 만원 미만	50-100 면원 마만	100-300 면원미만	300-500 면원미만	500만 원이상	평균	중앙 값	표 <del>준면</del> 차
	전체	(4,626)	27.1	13.1	28.5	9.2	22.1	901.9	100	4643.8
	문학	(246)	21.4	12.7	40.4	8.8	16.7	1174.4	100.0	6212.2
	미술	(527)	21.1	8.1	33.0	12.8	25.0	632.0	180.0	2527.1
	공예	(109)	16.2	8.6	41.9	7.4	25.9	485.2	180.0	856.3
	사진	(106)	26.5	14.6	26.1	16.0	16.8	302.8	100.0	456.8
	건축	(189)	1.4	0.0	3.3	3.0	92.4	11239.7	4000	19783.8
	음악	(510)	43.3	17.5	18.2	5.8	15.2	358	50	2134.8
예	국악	(334)	33.9	12.9	28.2	9.8	15.2	257.5	100	453.3
술 분	대중음 악	(556)	39.1	13.2	25.3	10.1	12.3	325.8	80	1361.8
O‡	방송연 예	(368)	16.4	18.9	24.2	10.2	30.3	1700.5	170	6304.6
	무용	(300)	25.9	12.6	39.0	7.7	14.8	355.4	100	837.8
	연극	(631)	26.7	16.1	30.6	8.8	17.7	518,3	100	2403.4
	영화	(455)	15.6	11.7	31.2	6.9	34.6	891.5	200	2018.8
	만화	(207)	28.2	7.0	24.2	9.1	31.5	1204.2	200	4676.8
	기타	(88)	22.0	10.7	31.8	5.8	29.7	651.1	120	1126.3

- 지난 1년간 예술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중, 서면계약을 한 예술 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을 한 비율은 낮았음(문 화체육관광부, 2021). 그러나 예술활동 계약 체결 경험이 없는 시각예술인 의 비율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각예술인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수행되는 예술 활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O 시각예술인의 예술 활동 관련 계약은 매우 다양함(근로복지 공단, 2022)
  - 작가가 미술품의 창작을 의뢰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나, 작가의 전속 화랑 및 매니지먼트사(에이전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도 함
  - 기획자와 작가 간 문화예술용역계약, 국가 또는 지자체와 작가 사이의 문화예술용역계약(예: 공공미술프로젝트), 작가와 미술관 또는 화랑 등과의 전시 계약, 건축주나 전문업체와의 계약(예: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 원청에서 메인작가와 보조작가에 대해 각각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나 작가가 직접 조수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함. 이때 서면계약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편임

<표 3-15> 지난 1년간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

(예술작품 발표 1회 이상인 자, 단위 : %)

				( \	[돌식품 일표 I외 VIC	32 A, 27 · /0
구 분		사례수	경험있음	서면계약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	경험 없음
 건	ᆀ	(4,208)	54.8	48.7	6.1	45.2
	문학	(379)	39.7	37.5	2.2	60.3
	미술	(651)	38.1	33.7	4.4	61.9
	공예	(173)	42.7	39	3.7	57.3
	사진	(161)	35.7	30.6	5	64.3
	건축	(145)	63.5	59.9	3.6	36.5
	음악	(410)	60.3	53.1	7.2	39.7
	국악	(281)	54.7	51.7	2.9	45.3
예술분야	대중음악	(527)	51.1	39.8	11.3	48.9
	방송연예	(253)	82.2	74.4	7.8	17.8
	무용	(278)	62.8	59.8	2.9	37.2
	연극	(401)	77.4	73	4.4	22.6
	영화	(312)	84.4	73.2	11,2	15.6
	만화	(157)	82.9	66.7	16.3	17.1
	기타	(80)	54.1	49.1	5	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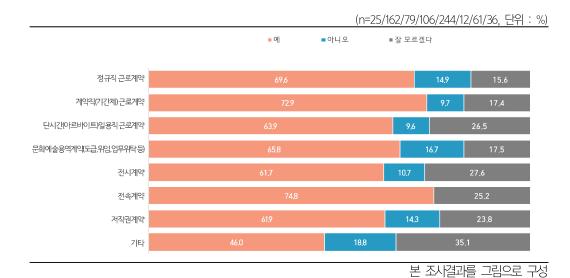
- O 시각예술인이 체결한 계약 중 서면계약의 비중이 가장 큰 유형은 "저작권계약" (94.1%)임
  - 예술인이 체결한 예술활동 계약의 계약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면계약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유형은 '저작권계약'(94.1%)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전속계약'(92.2%),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91.3%) 등의 순이었음
  - 반면 '단시간(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계약의 경우 서면계약의 비중이 50.7% 로 가장 낮았음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3-8] 예술활동 계약 체결 형태

- O 서면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유형은 "전속계약" (74.8%)임
  - 서면계약 시 정부에서 개발하여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계약서 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에 대한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유형은 '전속계약'(74.8%)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72.9%), '정규직 근로계약'(6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시계약'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61.7%로 가장 낮았음



[그림 3-9] 예술활동 서면계약시 표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계약서 사용 여부

# 제2절 시각예술 분야 작업 특성

# 1. 작업 방식의 비정형성

- 1) 작업 시간의 변동성
  - O 시각예술인의 일 평균 작업 시간은 6.11시간임
    - 구간별로는 '4시간~8시간 미만' 응답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8시간~12시간 미만'(25.5%), '4시간 미만'(22.7%) 등의 순으로 높았음

평균 6.11시간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n=700, 단위:%)

# [그림 3-10] 시각예술인의 일평균 작업 시간

- 예술 분야 중에선 '미술(디자인, 공예)'의 일 평균 작업시간이 6.28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미술(일반미술)'이 6.28시간으로 다음으로 길었음
- 예술 활동 유형별로는 '기술지원 및 기획'이 7.12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창작'(6.08시간), '실연'(5.78시간)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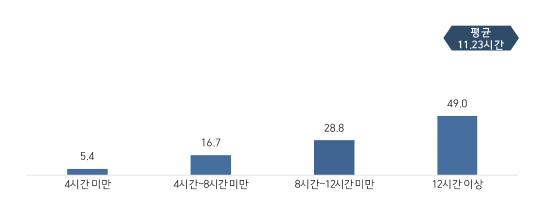
<표 3-16> 예술 분야 및 활동유형별 일평균 작업시간

(단위 : 시간)

구분		사례수	4시간 미만	4시간~ 8시간 미만	8시간~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평균
	전체	(700)	22.7	44.9	25.5	6.8	6.11
	미술(일반미술)	(439)	18.9	48.1	25.2	7.9	6.28
예술	미술(디자인,공예)	(117)	16.4	40.9	35.2	7.4	6.76
분야	미술(전통미술)	(77)	35.2	39.7	22.8	2.3	5.28
	사진	(67)	44.8	37.3	13.4	4.5	4.81
 예술	창작	(677)	22,6	45.7	24.9	6.8	6.08
활동	실연	(6)	33.3	33.3	33.3	0.0	5.78
유형	기술지원 및 기획	(17)	23.5	17.6	47.1	11.8	7.12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예술인은 작업시간에서 바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있음(근로복지공단, 2022). 가장 바쁠 때 일평균 작업 시간은 예술인 전체 평균 11.2시간으로, 통상의 일평균 작업시간에 비해 3.8시간이 더 많았음. 작업시간 구간 중 12시간 이상 작업을 하는 경우도 가장 바쁠 때에는 절반 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49%), 통상의 일평균 작업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13.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출처: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근로복지공단, 2022)

### [그림 3-11] 가장 바쁠 때 일평균 작업시간

- 가장 바쁠 때 일 평균 작업시간은 미술과 사진 분야 각각 56.6시간, 49.2시간 으로, 평균 예술인보다 더 많은 시각예술인이 바쁠 시기에 장시간 노동을 집약 적으로 수행함
- 시각예술분야의 활동은 마감 기한이 있는 프로젝트 단위로 수행되며 정해진 일 작업 시간이 없는 경우가 다수임. 따라서 가장 바쁠 때 일평균 작업시간과 그 렇지 않은 시기의 일평균 작업시간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큰 편임

<표 2-17> 가장 바쁠 때 일평균 작업시간

(단위 :명, %, 시간)

구분	사례수	4시간 미만	4시간~8 시간 미만	8시간~1 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평균 (시간)
전체	(1800)	5.4	16.7	28.8	49	11.23
- □   □	(207)	2.9	11.6	28,9	56,6	11,84
 사진	(89)	1.1	24.9	24.9	49.2	11.1

출처: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근로복지공단, 2021) 시각예술분이를 중심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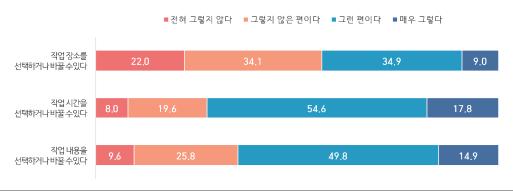
- O 상당수의 시각예술인이 야간 및 밤샘 작업을 경험함
  - 예술활동 수행 중 야간 혹은 밤샘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89.6%로, 대다수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이 야간 및 밤샘 작업을 경험함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3-12] 야간/밤샘 작업 빈도

- O 많은 시각예술인은 작업 활동 중 예정에 없던 과업이나 잡무를 경험함
  - 시각예술인의 60.2%가 '예정에 없던 과업이나 잡무가 추가'되었던 경험이 있었음
  - 20대와 30대일수록 '예정에 없던 과업이나 잡무가 추가'되는 비율이 높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미술(전통미술)을 제외한 미술(일반미술), 미술(디자인, 공예), 사진 분야에서 작업 계획에 없던 과업과 잡무가 추가되는 비율이 전체 응답 비율을 상회함
  - 특히 기획/창작 유형의 시각예술인은 "창작활동은 생활 전반에서 이루어지거나 상당히 긴 시간, 1년 혹은 그 이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상정하기 어려움.
- O 시각예술인은 작업시간은 작업 장소 및 작업 내용보다 유연한 특징을 보임
  - 작업 과정의 유연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작업 시간을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다'에 대한 긍정 응답이 72.4%로 가장 높았고, '작업 내용을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다'(64.6%)가 다음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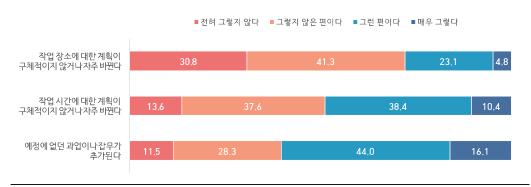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3-13] 작업 과정의 유연 정도

# 2) 작업 계획의 변동성

- O 많은 시각예술인은 예정에 없던 과업이나 잡무를 경험함
  - 기획의 경우, 참여 예술인과 활동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 자주 맞닥뜨리며, 진행 과정 중 현장 상황에 따라 기 존 계획이 변하는 경우가 많았음
  - 창작의 경우, 시각예술인은 전시, 시연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작업을 수행하거나, 갑작스럽게 전시에 참여해야하는 사례도 있었음
  - 설치/공공미술 등 장소 특정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시각예술인의 경우, 작업 현 장의 상황에 따라 작업 계획을 변경함
  - 숙련도가 낮은 예술가일수록 작업 계획의 변동이 클 수 있으며, 프로젝트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젊은 예술가일수록 개인이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실행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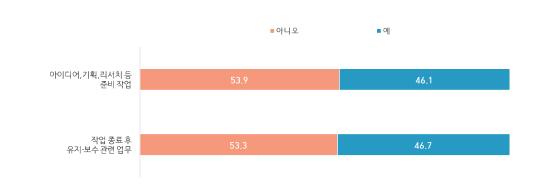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3-14] 작업 계획 관련 발생 정도

# O 시각예술인의 사전, 사후작업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경향을 보임

- 주된 예술활동 계약 시 계약 내용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이디어, 기획, 리서치 등 준비 작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었다는 응답은 46.1%였으며, '작업 종료 후 유지·보수 관련 업무'가 명시됐다는 응답은 46.7%로 나타남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 [그림 3-15] 계약상 명시 여부

-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전, 사후 작업을 경험한 예술인은 70세 이상일수록, 미술(전통미술)일수록,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 <표 3-18> 작업 전, 후 관련 업무 계약상 명시 여부

(단위:%)

구분		사례수	작업 전 업무가 계약에	작업 후 업무가 계약에
Т	TE		명시되지 않았음	명시되지 않았음
<u></u>	베	(700)	53.9	53.3
	20대	(113)	46.4	37.9
	30FH	(247)	48.9	46.5
연령	40EH	(150)	55.5	53.1
20	50EH	(96)	56.8	59.8
	60 <sup>E</sup> H	(72)	67.8	82.3
	70세 이상	(22)	80.0	88.3
	미술(일반미술)	(439)	49.9	48.8
예술 분야	미술(디자인,공예)	(117)	55.8	49.2
에스 군야	미술(전통미술)	(77)	71.6	76.3
	사진	(67)	56.7	64.2
예술인 고용보험	기입	(111)	36.2	40.5
가입 여부	미1입	(589)	57.2	55,8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평면/회화/설치 시각예술인의 경우,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전시계약을 진행할 때, "디스플레이나 전시 기간만 명시"하는 경향이 있었음. 작품 제작에 필요한 시간 과 작업, 제작 기간에 대한 내용은 관행적으로 "작가들이 알아서" 하였음
- 전시의 경우, 기획/창작에 대한 아이디어 및 준비 단계는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는는 경향이 높았음
- O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사전, 사후 작업에 관여하는 시각예술인의 비율은 상 대적으로 낮았음
  - 계약에 '연습, 기획, 훈련 등 준비 작업', 또는 '아이디어, 기획, 리서치 등 준비 작업'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었다고 응답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작업 또는 업무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이디어, 기획, 리서치 등 준비 작업'의 경우 해당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42.2%였으며, '작업 종료 후유지·보수 관련 업무'의 경우 이에 대한 긍정 응답이 33.3%로 나타남

(n=377/373, 단위: %)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3-16] 계약상 명시되지 않았으나 계약 수행시 작업 또는 업무 경험 여부

-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사전 준비 작업에 관여하는 비율은 여성일수록, 30대일 수록, 미술(일반미술)일수록,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일수록 높았음 <표 3-19> 계약상 명시되지 않았으나 계약 수행시 작업 또는 업무 경험 여부-아이디어, 기획, 리서치 등 준비 작업

(단위:%)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7	전체	(377)	42.2	57.8
성별	남성	(124)	36.6	63.4
~~~~~~~~~~~~~~~~~~~~~~~~~~~~~~~~~~~~~	여성	(253)	45.0	55.0
	20대	(52)	46.3	53.7
	30EH	(121)	56.7	43.3
연령	40EH	(83)	51.2	48.8
26	50EH	(54)	17.5	82.5
	60 <sup>E</sup> H	(49)	21.8	78.2
	70세 이상	(18)	20.8	79.2
	미술(일반미술)	(219)	47.3	52.7
에스ㅂ೧ŀ	미술(디자인,공예)	(65)	41.2	58.8
예술분야	미술(전통미술)	(55)	28.7	71.3
	사진	(38)	34.2	65.8
예술인 고용보험	개입	(40)	58.9	41.1
가입 여부	미1입	(337)	40.2	59.8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계약 이후의 작업에 관여하는 비율은 사전 준비 작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으며, 여성일수록, 40대일수록, 미술(디자인, 공예) 분야 에 종사하는 예술인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표 3-20> 계약상 명시되지 않았으나 계약 수행시 작업 또는 업무 경험 여부-작업 종료 후유지·보수 관련 업무

(단위:%)

				([] , , , ,
=	<del>간</del>	사례수	예	아니오
7	<u>덕</u> 체	(373)	33.3	66.7
성별	남성	(122)	26,2	73.8
ÖZ	여성	(251)	36.7	63.3
	2054	(43)	33.5	66.5
	30EH	(115)	45.1	54.9
Odad	40EH	(80)	37.9	62,1
연령	50CH	(57)	25.2	74.8
	60 <sup>C</sup> H	(59)	14.8	85.2
	70세 이상	(20)	23.9	76.1
	미술(일반미술)	(214)	36.0	64.0
예술분야	미술(디자인,공예)	(58)	40.0	60.0
에스군아	미술(전통미술)	(59)	22.5	77.5
	사진	(43)	25.6	74.4
예술인 고용보험	기입	(45)	32.6	67.4
가입 여부	미기입	(329)	33.3	66.7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전 준비기간에 필요한 기간은 '1주일~1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28.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1개월~3개월 미만'(27.1%), '2일 이상~1주일 미만'(16.2%) 등의 순이었음
- 사후 준비기간 또한 '1주일~1개월 미만'을 선택한 응답이 25.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2일 이상~1주일 미만'(21.1%), '1개월~3개월 미만'(1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터뷰에서 시각예술인들은 부업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교육은 주관하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가 수행되지만 사전 준비기간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제가 문화예술교육 수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해도 강의하는 순간만을 계약하고 교재를 만든다거나 기타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은 해당되지 않아요. 준비과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강의를 하는 딱 그 순간, 90분짜리 수업이면 90분에 대한 계약을 하는거죠. …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80%가 준비이고 20%가 강의인데, 계약을 20%만 하는 셈이죠."(공공미술, 조각, 기획, 시각예술인 E)

(n=159/124, 단위: %)



본 조시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3-17]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전 준비기간 및 사후 보수기간

- O 예술인의 주된 계약 업무 시작일은 '계약서에 명기된 시작일'에 따름
  - '계약서에 명기된 시작일에 시작'을 꼽은 응답이 45.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계약서에 명기된 시작일과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시작'(35.4%), '계약서에 시작일을 명기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시작'(15.4%)의 순으로 나타남

(n=700, 단위 : %)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 [그림 3-18] 주된 계약의 업무 시작일 결정 기준

- 30대 예술인은 '계약서에 명기된 시작일과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시작'하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주된 계약의 업무 시작일 결정 기준에 대한 2순위 응답의 경우, 미술(전통미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예술 분야에서는 '계약서에 명기된 시작일과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시작'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미술(전통미술)분야는 '계약서에 시작'을 명기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시작'하는 경향이 나타남

# <표 3-21> 주된 계약의 업무 시작일 결정 기준

(단위 : %)

구분 전체		사례수 (700)	계약서에 명기된 시작일에 시작 45.6	계약서에 명기된 시작일과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시작 35.4	계약서에 시작일을	기타 3.6
	2054	(113)	45.9	33,7	19.7	0.8
	30 <sup>C</sup> H	(247)	40.1	45.8	12.6	1.6
어컨	40EH	(150)	45.6	35,3	14.7	4.4
연령	50 <b>CH</b>	(96)	53,1	26,3	13.8	6.8
	60FH	(72)	47.9	20.1	22.8	9.1
	70세 이상	(22)	66.2	17.1	12.8	3.9
	미술(일반미술)	(439)	47.6	37.1	12,8	2.5
예술	미술(디자인,공예)	(117)	40.1	39.3	17.2	3,3
분야	미술(전통미술)	(77)	44.4	20.5	22.6	12.4
	사진	(67)	43.3	34.3	20.9	1.5
예술	창작	(677)	45.4	35.4	15.6	3.6
활동	실연	(6)	50.0	16.7	33.3	0.0
으 유형	기술지원 및 기획	(17)	52.9	41.2	0.0	5.9

본 좌열과를 표로 구성

- 미술(전통미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예술 분야에서는 서면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의례적으로" 할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를 작성하는 계약 관행이 있으며,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았음

"그런 거 있죠. 있는데 그거 자세히 안 드려도 그냥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서로 믿고 하는 거라 그거를 유심히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아서 기억이 없습니다."(기획, 비평, 시 각예술인 B)

"단 한 번도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었어요. … 사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뭔가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사진, 테크니션, 시각예술인 M)

# 2. 개별 및 팀별 작업 특성

- O 대다수의 시각예술인은 팀 단위 예술 활동 계약 경험이 없음
  - 지난 1년간 예술활동과 관련해 팀 단위 계약을 맺었던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술인의 18.1%가 그렇다고 응답함
  - 팀 단위로 활동하더라도 계약은 팀의 대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음
  - 팀 단위 또는 콜렉티브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창작활동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O 시각예술 분야는 개별 활동이 우세
  - 팀 단위 계약 체결 시 본인의 역할이 '팀의 구성원(보조, 지원 등)'이었다는 응답이 59.2%에 달했으며, '팀 대표(총괄, 감독 등)'를 맡았다는 비율은 40.8%였음

(n=126, 단위: %)

I 팀 단위 계약시 본인의 역할 수준 I

경험 여부 (n=700)
81.9
아니오

B 대표 (충괄,감독등)
B 의 구성원 (보조,지원 등)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 [그림 3-19] 팀 단위 예술활동 계약 관련

- 팀 단위 예술활동 계약을 경험한 시각예술인은 남성, 20대, 사진, 창작,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이었음

<표 3-22> 팀 단위 예술활동 계약 경험 여부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건체		(700)	18.1	81.9
1464	남성	(233)	19.3	80.7
성별	여성	(467)	17.5	82.5
연령	20대	(113)	23.4	76.6

	3054	(247)	18,2	81.8
	40EH	(150)	16.4	83.6
	50 <sup>C</sup> H	(96)	19.0	81.0
	60 <sup>C</sup> H	(72)	11.9	88.1
	70세 이상	(22)	16.7	83.3
	미술(일반미술)	(439)	17.1	82.9
MI스브OF	미술(디자인,공예)	(117)	15.6	84.4
예술분야	미술(전통미술)	(77)	14.7	85.3
	사진	(67)	32.8	67.2
~!\^\$!C	창작	(677)	18.2	81.8
예술활동 유형	실연	(6)	0.0	100.0
πδ	기술지원 및 기획	(17)	17.6	82.4
예술인 고용보험	기입	(111)	30.9	69.1
기입 여부	미/입	(589)	15.7	84.3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팀 단위로 계약 시 시각예술인의 역할 수준은 "팀의 구성원(보조, 지원 등)"인 경우가 더 많았음. 반대로 "팀의 대표(총괄, 감독 등)"을 맡는 비율은 남성일수록, 50대일수록, 미술(디자인, 공예)분야 종사자일수록, 기술지원 및 기획 유형일 수록,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된 예술인수록 높았음

<표 3-23> 팀 단위 계약시 본인의 역할 수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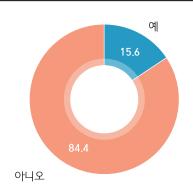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팀의 대표 (총괄, 감독 등)	팀의 구성원 (보조, 지원 등)
	전체	(126)	40.8	59.2
성별	남성	(45)	52.2	47.8
~~~~~~~~~~~~~~~~~~~~~~~~~~~~~~~~~~~~~~	여성	(82)	34.5	65.5
	20 <sup>E</sup> H	(26)	22.0	78.0
	30EH	(45)	41.4	58.6
연령	40EH	(25)	51.9	48.1
	50대	(18)	57.8	42.2

	60EH	(9)	21.9	78.1
	70세 이상	(4)	53.5	46.5
	미술(일반미술)	(75)	35.5	64.5
AIA HA L	미술(디자인,공예)	(18)	52.6	47.4
예술분야	미술(전통미술)	(11)	38.5	61.5
	사진	(22)	50.0	50.0
예술활동	창작	(123)	40.1	59.9
유형	기술지원 및 기획	(3)	66.7	33.3
예술인 고용보험 기입	기입	(34)	42.7	57.3
<u>여부</u>	미1입	(92)	40.0	60.0
				ㅂ 포티커피르 ㅠㅋ ㄱ셔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O 가장 주된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나 조수를 고용하는 시각예술 인은 드문 편임
  - 가장 주된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나 조수(어시스턴트 등)를 고용한 다는 응답은 15.6%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84.4%였음

(n=700, 단위 : %)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 [그림 3-20] 주된 계약 수행 목적으로 보조, 조수(어시스턴트 등) 고용 여부

- 주된 계약 수행을 위해 보조, 조수(어시스턴트 등)을 고용하는 비율은 남성, 50 대, 사진 분야, 기술지원 및 기획 유형,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시각예술인에게서 높게 나타남

<표 3-24> 주된 계약 수행 목적으로 보조, 조수(어시스턴트 등) 고용 여부

(단위:%)

				(ピオ・/0)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700)	15.6	84.4		
성별	남성	(233)	19.9	80.1		
	여성	(467)	13,5	86.5		
연령	20 <sup>C</sup> H	(113)	8.7	91.3		
	30FH	(247)	13.9	86.1		
	40FH	(150)	19.5	80.5		
	50FH	(96)	23.9	76.1		
	60FH	(72)	11.9	88.1		
	70세 이상	(22)	20.6	79.4		
예술분야	미술(일반미술)	(439)	15.3	84.7		
	미술(디자인,공예)	(117)	13.9	86.1		
	미술(전통미술)	(77)	17.0	83.0		
	사진	(67)	19.4	80.6		
예술활동 유형	창작	(677)	15.1	84.9		
	실연	(6)	16.7	83.3		
	기술지원 및 기획	(17)	35.3	64.7		
<u>예술인</u>	기입	(111)	29.1	70.9		
고용보험 <u>기입 여부</u>	미기입	(589)	13.1	86.9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O 기술지원 분야의 사고 위험성은 높으나, 고용과 책임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가 제 기됨
  - 기술지원은 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므로, 용역계약 당사자인 예술인이 조수(어시스턴 트 등)와 서면 및 구두계약을 체결함. 이때, 조수에 대한 사고 책임 소재에 대해 예술 인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 작품의 상하차와 운반, 설치 등의 업무의 경우, 무거운 작품이나 유리 등의 위험한 소재의 작품으로 인한 사고와 질병의 위험성이 높음. 그러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보상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대체로 예술인의 사비로 대처하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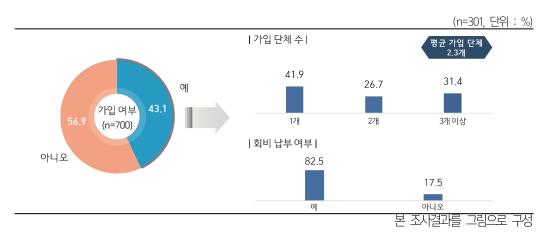
"용역을 하게 하면 법적 문제들은 고용주가 책임지는 게 있는데, 이제 계약일 경우에는 사실 주최 주관이 미술관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거라고 했을 때 애매한 거 같아요. … 만약에 진짜 안 좋은 시간이 일어나서 많이 다쳐서 팔을 못쓰게 됐을 때 막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로 이 공간에서 목공을 하다가 타카가 손에 박혀서 대표님이 다 사비로 지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기획, 시각예술인 L)

"인체 조각을 브론즈로 큰 작업을 하는 선배가 있는데, 작업하면서 아시바를 쳐서 이렇게 올라가서 작업을 하잖아요 … 그 선배 남편분이 미술 하시는 분은 아닌데, 작업을 도와준다고 아시바 위에 올라가서 있었나봐요. 근데 아시바가 무너져갖고 그 선배 머리로 떨어져가지고 … 그래도 내가 다쳐서 다행이다고 하시더라고요"(조각, 공예, 시각예술작가 I)

- 예술인이 조수(어시스턴트 등)와 단시간(아르바이트) 및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대개 지인의 소개를 통한 구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임. 이때 지인의 지인의 소 개로 계약을 맺는 등 하도급계약 형태로 업무가 추진될 경우, 본 사용주가 조수를 알 지 못하거나, 조수의 업무를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이게 대부분 그런 (설치) 회사들이 다 개인사업자, 영세 사업자들이거나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 상당히 이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많죠 … 고구마 줄 기의 앞쪽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뒤쪽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일하고, 일을 하러 와서도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와 있어요. 현장에서 '누구세요?'라고 물었더니, 페인트하는 사람이래요. '제가 일을 드린 건가요?' 그랬더니 맞대요."(사진, 테크니션, 시각예술인 M)

- O 절반 이상의 시각예술인은 예술인 단체, 협회, 조합에 가입하지 않음
  - 예술인 단체, 협회, 조합에 가입한 시각예술인(43.1%)은 평균 2.3개의 단체에서 활동 중이며. 82.5%가 회비를 납부함



[그림 3-21] 가입하여 활동중인 예술인 단체,협회,조합

 예술인 단체, 협회, 조합에 가입한 시각예술인은 남성일수록, 70세 이상일수록, 전통미술 분야일수록, 실연 유형일수록,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일수록 많았음 - 그 중, 고연령층 시각예술인이 청년층 시각예술인보다 압도적으로 단체, 협회, 조합 가입 비율이 높고, 전통미술 분야 및 실연 유형 예술인이 시각예술의 타 분야 및 유형 예술인보다 단체, 협회, 조합 가입 비율이 우세함

<표 4-25> 가입하여 활동중인 예술인 단체,협회,조합 여부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700)	43.1	56.9	
성별	남성	(233)	54.0	46.0	
	여성	(467)	37.6	62.4	
	20대	(113)	25.6	74.4	
	30EH	(247)	27.1	72.9	
어크	40 <sup>E</sup> H	(150)	37.7	62.3	
연령	50EH	(96)	64.4	35.6	
	60EH	(72)	90.5	9.5	
	70세 이상	(22)	100.0	0.0	
	미술(일반미술)	(439)	34.8	65.2	
MI스브OF	미술(디자인,공예)	(117)	47.6	52.4	
예술분야	미술(전통미술)	(77)	83.0	17.0	
	사진	(67)	43.3	56.7	
へ	창작	(677)	43.3	56.7	
예술활동 유형	실연	(6)	83.3	16.7	
	기술지원 및 기획	(17)	17.6	82.4	
예술인 고용보험	기입	(111)	37.6	62.4	
기입 여부 	미1입	(589)	44.1	55.9	

본 좌열과를 표로 구성

 ${
m IV}$ 

# 시각예술인의 작업환경

1절 시각예술인의 작업공간 유형 2절 시각예술인의 작업공간 안전도

# 제1절 시각예술인의 작업공간 유형

○ 시각예술인의 가장 지배적인 작업공간은 '개인 창작공간(집 안)'임. 시각예술분야는 1인 작업 방식이 우세하여, 개인창작공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음

(n=700, 단위:%)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 [그림 4-1] 활동 중인 공간 유형(복수응답)

- 전 연령에서 '개인 창작 공간(집 안)'을 작업공간으로 사용하였음. 그중, 20대와 70 대 이상의 예술인은 상대적으로 '공동 작업실'의 활용도가 높았고, 40대~60대 예술인은 '개인 창작 공간(집 밖 별도 공간)'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았음
- 남성 예술인의 경우, '개인 창작 공간(집 안)'과 '개인 창작 공간(집 밖 별도 공간)'을 활용하는 비율이 각각 53%, 50%로, 두 공간의 사용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여성 예술인의 경우 '개인 창작 공간(집 안)'이 70%로 월등히 우세하였음
- 예술 분야 중 미술(디자인, 공예) 분야 예술인일수록 '개인 창작공간(집 밖 별도 공간)'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고, 미술(전통미술) 예술인일수록 '공동 작업실'을 사용하였음
- 전체 예술인 중, '개인 창작 공간(집 안)'에 별도 공간을 보유한 응답자들은 미술 (46.2%), 문학(45.3%), 만화(43.6%)에서 높게 나타남(문화체육관광부, 2021)

- O 시각예술인의 활동 공간 야외, 복합미술공간, 비영리전시공간 등 다양화되는 추세임
  - 개인창작공간(집안, 집 밖 별도 공간) 및 공동 작업실이 시각예술분야의 가장 우세한 작업공간이나, 그 외 야외(7.0%), 복합미술공간, 비영리전시공간 (4.9%), 공공레지던시(4.3%), 기타(3.8%)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인도 존재함

<표 4-1> 활동 중인 공간 유형(복수응답)

(단위:%)

	구분	사례 수	개인 창작 공간 (집 안)	개인 창작 공간 (집 밖 별도 공간)	<del>공동</del> 작업 실	공공 레지 던시	민간 레지 던시	야외	국·공 립 미술 관	민간 미술 관	복합 미술 공간, 비영 리전 시공 간	컨벤 션 센터 (코스 벡 코 등)	기타
	전체	(700)	64.4	41.2	15.3	4.3	0.8	7.0	2.2	1.9	4.9	1.2	3.8
선별	남성	(233)	53.1	50.8	15.2	3.8	1.3	11.0	2.9	3.4	6.1	0.8	3.6
~ ⊘⊒	여성	(467)	70.0	36.5	15.4	4.6	0.6	5.0	1.9	1.2	4.3	1.4	3.9
	20대	(113)	72.4	34.6	21.4	4.3	0.0	5.9	1.8	0.0	3.4	0.0	3.5
연령	3054	(247)	65.6	37.1	14.1	5.1	1.2	2.8	2.8	1.2	4.8	2.0	3.9
	40EH	(150)	65.7	50.5	11.7	5.3	0.0	7.8	2.6	3.9	4.4	1.3	3.9
L'0	50대	(96)	58.2	44.7	10.8	5.2	2.1	12.3	1.0	1.9	6.8	1.0	3.1
	60FH	(72)	57.5	42.8	16.9	0.0	0.0	12.5	0.0	2.8	4.1	0.0	6.1
	70세 이상	(22)	49.5	38.3	36.7	0.0	4.5	12.8	7.8	3.9	11.7	3.9	0.0
	(쉽메일)쉽미	(439)	65.2	40.9	14.4	5.6	0.4	3.1	2.5	1.8	4.7	1.4	3.8
예술	미술(다자인, 공예)	(117)	59.8	45.9	9.0	4.1	0.8	9.0	0.8	0.0	2.5	1.6	2.5
분야	미술(전통미술)	(77)	59.1	42.0	30.7	0.0	0.0	4.5	2.3	3.4	10.2	1.1	7.9
	사진	(67)	73.1	34.3	14.9	1.5	4.5	31,3	3.0	4.5	4.5	0.0	1.5
예술	창작	(677)	64.9	41.4	15.7	4.5	0.9	6.9	1.7	1.8	4.9	1.1	3.7
활동	실연	(6)	83.3	33.3	0.0	0.0	0.0	16.7	0.0	0.0	0.0	0.0	0.0
- 유형	기술지원 및 기획	(17)	35.3	35.3	5.9	0.0	0.0	5.9	23.5	5.9	5.9	5.9	11.8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O 「2021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 활동을 위해 개인창작공간을 보유 비율은 미술(82.7%)과 공예(85.1%)가 전체 예술인(56.3%)보다 높았고, 사진(50.4%)은 상대적으로 보유비율이 낮게 나타남
  - 집 안(거주공간)에 별도 공간을 보유한 응답자들은 미술(46.2%)분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집 밖(거주공간과 분리된)에 별도 공간에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한

응답자들의 비율은 공예(54.6%)에서 높게 나타남

- 시각예술 분야 중 사진은 창작공간을 보유한 비율(50.4%)과 보유하지 않은 비율(49.6%)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창작공간 보유 형태에 있어서 집 안 공간 (26.3%)이 집 밖 공간(24.1%)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남

<표 4-2> 개인 창작공간 보유현황

(단위:%)

구 분		니네스	010				
		사례수	있음	집 안 공간	집 밖 공간	없음	
전	체	5,109	56.3	29.3	27	43.7	
	1.문학	479	57	45.3	11.6	43	
	2.미술	820	82.7	46.2	36.5	17.3	
	3.공예	213	85.1	30.5	54.6	14.9	
	4.사진	201	50.4	26,3	24.1	49.6	
	5.건축	186	58.2	13.4	44.8	41.8	
	6.음악	475	58.7	29.4	29.3	41.3	
예술분야	7.국악	328	37.1	8.3	28.7	62.9	
	8.대중음악	673	67.6	34.7	32.9	32.4	
	9.방송연예	294	29	12,2	16.8	71	
	10.무용	330	26.6	4	22.6	73.4	
	11.연극	468	18.7	6.7	11.9	81.3	
	12.영화	360	37.5	25.2	12.3	62.5	
	13.만화	187	61.1	43.6	17.5	38.9	
	14.기타	95	29.1	9.9	19.2	70.9	

출처: 2021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

- O 시각예술인은 작업에 따라 복수의 작업공간에서 활동함
  -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각예술인은 활동 특징에 적합한 복수의 공간에서 작업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 공간을 대여하여 작업함

"장난감 작업 같은 경우에는 … 집에서 이루어지는 게 90%. 그다음에 천장에 매단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배치를 한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장 작업이 들어가니까 그게한 10% 정도 될 거고. 낙서작업은 100% 현장에서 이루어지죠 집에서 할 수가 없죠." (공공미술, 설치, 기획, 시각예술인 D)

"작은 작업 같은 경우는 그냥 공간(개인 작업실) 가서 하거나. 서울 시내에서 사실 큰 공간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형작업 같은 경우는 보통 피주에 공장을 한 두 달 빌려요." (공공미술, 설치, 기획, 시각예술인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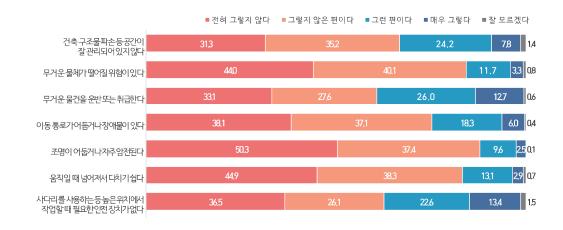
"제가 아는 예술가는 빈집에서 유리창 같은 거랑 창들을 떼 가지고 실제 작품으로 집을 만드는 작업을 하세요 … 재료를 가져오는 빈집도 창작공간인 셈이죠"(회화, 기획, 시각예술인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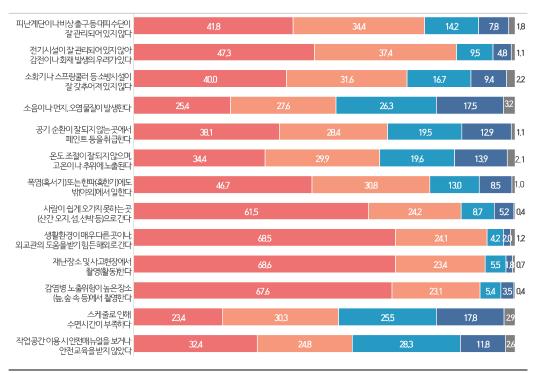
# 제2절 시각예술인의 작업공간 안전도

# 1. 작업공간 위험 요소

- O 시각예술인 작업공간의 주요 위험요인은 소음, 먼지, 오염물질 발생임
  - 작업 과정 및 주된 작업공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소음이나 먼지, 오염 물질이 발생한다'에 대한 긍정 의견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스케줄로 인해 수면시간이 부족하다' (43.3%), '작업공간 이용 시 안전매뉴얼 을 보거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40.2%) 등의 순이었음

(n=700, 단위:%)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4-2] 작업 과정 및 주된 작업공간에 대한 의견

- '소음이나 먼지,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공간에서 작업하는 시각예술인은 미술 (일반미술), 미술(디자인, 공예) 분야에 종사하였으며, 실연, 기술지원 보다 창작 유형에서 활동함
- '스케줄로 인해 수면시간이 부족'한 시각예술인은 사진분야, 실연 유형일수록 많았음
- '작업공간 이용시 안전매뉴얼을 보거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미술(일반 미술) 및 실연유형의 시각예술인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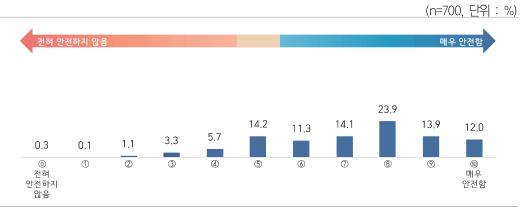
<표 4-3> 작업 과정 및 주된 작업공간에 대한 의견에 대한 상위 3개 응답

	구분	사례수		종합		
	전체	(700)	그렇지	그렇다	잘	
	건세	(700)	않다	_ 그동니	모르겠다	
	예술분야 예술활동	미술(일반미술)	(439)	51.2	45.6	3.1
		미술(디자인,공예)	(117)	47.6	46.7	5.7
소음이나 먼지,		미술(전통미술)	(77)	61.6	38.4	0.0
오염물질이		사진	(67)	64.2	32.8	3.0
발생한다		창작	(677)	52.6	44.1	3,3
		실연	(6)	66.7	33,3	0.0
	유형	기술지원 및 기획	(17)	64.7	35.3	0.0

	에스비아	미술(일반미술)	(439)	51.5	45.6	2.9
		미술(디자인,공예)	(117)	60.7	35.2	4.1
스케줄로 인해	예술분야	미술(전통미술)	(77)	62.5	36.3	1,1
수면시간이		사진	(67)	46.3	50.7	3.0
. — .— .	   예술활동	창작	(677)	53.8	43.3	2.9
부족하다		실연	(6)	33.3	50.0	16.7
	유형	기술지원 및 기획	(17)	58.8	41.2	0.0
		미술(일반미술)	(439)	54.4	42.9	2.7
작업공간 이용 시	   예술분야	미술(디자인,공예)	(117)	63.9	34.5	1,6
	에글군아 	미술(전통미술)	(77)	65.9	31.8	2.3
안전매뉴얼을		사진	(67)	53.7	41.8	4.5
보거나 안전교육을	예술활동	창작	(677)	56.9	40.4	2.7
받지 않았다		실연	(6)	50.0	50.0	0.0
	유형	기술지원 및 기획	(17)	70.6	29.4	0.0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O 예술활동을 수행하는 작업 과정 및 공간의 안전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한 결과는 다각적으로 해석됨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4-3] 작업과정과 공간의 안전 정도

- − 먼저, 안전 정도에 대한 인식이 ③부터 ⑩에 걸쳐 고르게 나타나서 안전 체감 수준에 상당한 다양성이 있음
- 안전한 편에 응답한 경우(⑥~⑩)의 합이 75.2%로 4분의 3 수준인 반면, 안전하지 못한 편에 응답한 경우(⑥~⑤)의 합은 24.7%에 머물러서 작업과정과 공간에서 크게 불안을 느끼는 경우는 상대적 소수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매우 안전함(⑩)"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2.0%에 불과하고 비교적 안전 수준을 높게 평가한 경우(®~⑩)를 넓게 잡아도 50% 수준임. 여전히 절반의 시각예술인들이 작업과정과 공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종합적으로 보면, 작업 과정과 공간에서 상당수 시각예술인들이 위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으며, 그 체감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음
- 연령대별 안전 인식 수준은 30대와 60대는 상대적으로 불안전하다고 응답했고, 70대 이상, 50대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응답함
- 분야별로는 사진 분야에서 안전 인식 정도가 낮았음

#### <표 4-4> 작업과정과 공간의 안전 정도

(단위 : %)

	구분	사례수	②         전혀         안전하         지 않음	1	2	3	4	(5)	6	7	8	9	(1) (1) (1) (1) (1) (1) (1) (1) (1) (1)
	전체	(700)	0.3	0.1	1.1	3.3	5.7	14.2	11.3	14.1	23.9	13.9	12.0
	남성	(233)	0.0	0.0	0.8	3.0	4.6	16.6	11.4	15.1	20.5	15.1	12.8
성별	여성	(467)	0.4	0.2	1.2	3.5	6.3	13.0	11.2	13.6	25.6	13,3	11.6
	20대	(113)	0.0	0.0	3.5	2.5	7.7	7.8	11.9	18.1	20.8	15.7	11.9
	30대	(247)	0.8	0.4	0.0	4.0	7.1	15.5	10.3	13,8	24.0	11,8	12.3
연령	40EH	(150)	0.0	0.0	0.0	2.7	5.9	12.2	12.5	14.2	23.3	14.8	14.3
116	50대	(96)	0.0	0.0	1.0	4.1	2.1	12.1	15.1	16.0	26.7	12.0	10.9
	60 <sup>E</sup> H	(72)	0.0	0.0	2.6	4.1	4.0	26.9	5.4	9.3	24.1	15.9	7.7
	70세 이상	(22)	0.0	0.0	3.9	0.0	0.0	12.8	13.4	3.9	28.7	25.0	12.3
	미술(일반미술)	(439)	0.4	0.2	0.7	3.6	6.5	15.7	10.8	13.0	23.8	13.9	11.2
예술	마술(다인공예)	(117)	0.0	0.0	0.8	4.1	3.3	8.2	9.0	19.7	27.8	12.3	14.7
분야	미술(전통미술)	(77)	0.0	0.0	2.3	1.1	4.5	11.3	9.2	12.4	27.3	18.1	13.7
	사진	(67)	0.0	0.0	3.0	3.0	6.0	17.9	20.9	13.4	13.4	11.9	10.4
예술	창작	(677)	0.3	0.1	1,1	3.5	5.5	14.5	10.9	14.0	24.0	14.1	12.0
"드 활동	실연	(6)	0.0	0.0	0.0	0.0	33.3	0.0	33,3	0.0	33,3	0.0	0.0
무형 	기술지원 및 기획	(17)	0.0	0.0	0.0	0.0	5.9	5.9	17.6	23.5	17.6	11.8	17.6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FGI와 현장조사 결과, 경미하지만 잦게 발생하는 '베임, 찔림, 화상' 사고에 대해 예술인 스스로 위험 요소로 인지하지 않았으며, 큰 위험 요소로 여기지 않는 작은 통증, 소음과 먼지 등의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화재 및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예: 산소용접)도 존재하였음. 시각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안전 인식과 실제 안전도의 격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O 시각예술분야의 활동 공간 및 매체의 다양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위험요 소가 증대하고 있음
  - 기존의 화이트큐브가 아닌 빈집 등 외부공간이 새로운 전시 공간으로서 부상하고 있으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공간에서 작품을 설치할 경우에 위험성이 높았음

"진짜 애매한 게 이제 빈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술 공간이 아닌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미술관은 장비가 잘 갖춰져 있어요. 안전 요원들도 있고. 좀 그 중간 공간들이 위험하죠. 화장실도 없는 데도 많고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 데도 많고 건기를 끌어와야 되는 데도 많고 그래서 더 실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안전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안 가져가죠." (공공미술, 설치, 기획, 시각예술인 E)

"본인들은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지만 사실은 **공연장**이라서. 전시 공연장이 이렇 게 계단 층으로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사다리를 놓는 게 쉽지가 않죠.** 사다리 각도가 안 나오니까. 또 이제 무대하고 플로우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보통 A자 사다리 놓잖아요. 그럼 A자 사다리를 펴서 놨을 때 이제 완전히 벽까지 손이 안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위험하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죠."(공공미술, 설치, 기 획, 시각예술인 D)

- 시각예술 분야의 실험적인 매체 사용은 위험 요소를 예측하기 어렵게 함 "저는 상상도 못할 작업을 가끔 하는데. 예를 들면 드릴질을 어디다 했냐면 소파가 하나 있거든요. 소리를 들어본다고. 그니까 버려지는 물건들에다가 다양한 소리를 실험해 본다고 방망이로 때리고 드릴질 하고 밀고 그랬단 말이예요. 근데 정말 생각도 못한 거죠. 소파가 천이니까 이게 말려 들어갈 거라는 걸. 그래가지고 말려 들어가가지고 진짜 손가락 겉이 말려 들어가서. 다행히 그냥 좀 심하게 쓸리고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창작, 설치, 시각예술인 A)

### 2. 작업공간 분석

#### 1) 조소 작업 공간

- O 조소 작업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기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보호 장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입체 작업을 주되게 하고 있으며, 작업실에는 기본적으로 칼, 조각도, 톱, 전동 드라이버, 글루건, 타카, 연삭기(그라인더), 직소기를 갖추고 있음
  - 작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고속절단기, 탁상용 드릴(도루방), 공기 압축기(콘 프레셔), 플라즈마 절단기, 용접기, 목재용 등급톱을 갖추고 있음
  - 작업 과정에서 계속해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 또는 취급'하거나 '소음이나 먼지,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 및 관절염', '근 육통이나 디스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4-3], [그림 5-6]참조)
  - 현장조시를 실시한 작업실을 사용 중인 시각예술인의 경우, 숙련자들로 현재 작업실에서 큰 사고의 경험은 없었으나, '찔림과 베임',. 가벼운 화상 등은 자주 겪으며, 오랜 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통증과 작업 중에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한 기관지 등의 위험에 노출
- 개인작업실 1과 공동작업실 1의 경우, 50대의 시각예술인들로 미술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하였으며, 현재까지 조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유형의 변화 가 있었음
  - 과거에 하던 작업에 비해 무게와 부피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
  - 개인작업실 1의 시각예술인은 현재도 산소용접으로 입체 작품을 만들고 있으며,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불꽃비산으로 인한 상해를 막기 위해 안전방비로 장갑과 두꺼운 작업복을 착용

<표 4-5> 작업공간 분석 - 개인 작업실1

구 분		내용
	주요작업	금속조각
	장비	산소용접기, 탁상용 드릴, 직소기, 그라인더, 원형톱 등
	안전시설	소화기, 환기(창문)
개인작업실1	공간사진	
	공간크기(평)	90
	임차비(만원)	(전세)5500
	지역	경기도 안성시

- 공동작업실 1은 2인의 조소 전공자로, 대학시절부터 입체(오브제) 중심의 작업을 진행하다가 10여년 전부터 회화와 디자인 작업을 병행하고 있음
- 안전장비로 앞치마와 장갑 착용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먼지, 오염물질이 발생'을 대비한 안전시설로 4개의 출입문과 창문, 환풍기를 갖추고 있었음.

<표 4-6> 작업공간 분석 - 공동 작업실1

구 분		내용
	주요작업	디자인, 호화, 조소
	정비	캔버스, 그라인더, 드릴, 글루건, 타카, 사다리 등
	안전시설	소화기, 화재경보기, 환기(창문, 환풍기), 화재보험
공동작업실1	공간사진	
	공간크기(평)	50
	임차비(만원)	(スアナ)0
	지역	경기도 광주시

- 공동작업실 2는 입체 작업을 주로하고 있으며, 30-40대 시각예술인으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작업이 많아서 이를 위해 작업실에 호이스트를 갖추고 있으나, 외부로 작품을 반출하는 경우 설치하는 장소에서 상하차의 어려움을 겪

음

- 목공본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장비로 라텍스 장갑 착용. 용접 작업시, 용접 장갑과 용접 마스크, 두꺼운 작업복 착용

자 보 내용

 주요작업 조소
 장비 호이스트, 사다리, 톱, 드릴, 절단기, 글루건, 타카 등
 안전시설 소화기, 환기(창문)

공동작업실2

공간되기(평) 40
임차비(만원) 50

<표 4-7> 작업공간 분석 - 공동 작업실2

#### 2) 회화 작업 공가

O 회화는 평면 작업이 주된 작업이며, 작업실에는 기본적으로 화학용품(안료, 테라핀 등), 타카, 글루건, 화학용품, 칼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작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프레스기, 조각도, 전동 드라이버를 갖추고 있음

경기도 가평군

지역

- 작업실이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이거나, '페인트 등을 취급'하는 등의 화학용품을 다루고 있으며, '피부에 문제',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남([그림 4-8], [그림 5-6]참조)
- O 화재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화재보험, 스프링클러 등의 화재를 대비할 수 있는 안절시설이 많았음
- O 장시간 작업시 앞치마와 장갑을 착용하나, 간단한 작업을 진행할 때는 장갑 미착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 O 현장조사를 실시한 개인작업실 2와 공동작업실 3은 판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화성 화학용품이 대부분이나 환기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O 작업 인원수에 따라 소재 및 재료와 도구의 차이가 발생함
  - 현장조사를 위해 작업실에 들어 갔을 때 화학품 냄새가 가득한 상황이었으나 환기를 위한 안전시설은 창문 또는 작은 환풍기에 의존함
  - 개인 작업실 2는 1인이 작업할 수 있는 실크스크린이 주된 작품활동임. 공동작업실 3은 작업실 운영은 1인이 하고 있으나, 사용에 있어서 10인 이상의 공동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도구(프레스기, 대형 합판 등)이 있었음
  - 안전장비로 앞치마와 라텍스 장갑 착용함

(표 4-8) 작업공간 분석 - 개인 작업실2

구 분		내용
	주요작업	판화(실크스크린)
	장비	감광기, 실크스크린 틀, 타카, 감광액, 유연제, 바인더 등
	안전시설	소화기, 환기(창문), 화재보험
개인작업실2	공간사진	
	공간크기(평)	7
	임차비(만원)	47
	지역	경기도 안산시

- 안전장비로 앞치마와 라텍스 장갑 착용, 공동작업자들이 조각도 및 프레스기 사용 시 안전교육 실시함

<표 4-9> 작업공간 분석 - 공동 작업실3

구 분		내용
	주요작업	판화(실크스크린, 공판, 목판)
	장비	감광기, 실크틀, 판화 프레스기, 타카, 감광액, 보조제 등
	안전시설	소화기, 환기(창문, 환풍기)
공동작업실3	공간사진	
	공간크기(평)	30
	임차비(만원)	60
	지역	인천광역시 중구

- 공동작업실 4는 공간 사용비 절감을 위해 디자인과 설치·운송을 하는 시각예 술인과 운영을 함께 있음
- 오일 칼라와 보조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방 한 칸은 목재 캔버스 위에 그린 유화 작품 수납고로 사용 중으로, 화재 발생 시 취약함

<표 4-10> 작업공간 분석 - 공동 작업실4

구 분		내용
	주요작업	회화, 디자인, 설치운송
	장비	유화물감, 캔버스, 타카, 사다리, 등
	안전시설	소화기, 스프링클러, 환기(창문)
공동작업실4	공간사진	
	공간크기(평)	25
	임차비(만원)	100
	지역	서울시 동작구

- 개인작업실 3은 아크릴 칼라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작업용 목재 이젤 과 캔버스가 많았으며, 화재 발생 시 취약함

<표 4-11> 작업공간 분석 - 개인 작업실3

구 분		내용
	주요작업	호화
	장비	이크릴물감, 캔버스, 보조제 등
	안전시설	소화기, 환기(창문, 환풍기), 회재보험
개인작업실3	공간사진	
	공간크기(평)	15
	임차비(만원)	25
	지역	인천광역시 중구

### 3) 디자인 작업 공간

- O 디자인의 경우, 별도의 작업실 외에 재택, 카페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음
- 위험도가 높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및 관절염'과 '전신피로', '눈의피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5-6] 참조)
  - 개인작업실 4는 재택근무를 하는 시각예술인으로 주거 공간에 장비(테이블, 컴 퓨터, 프린터기 등)를 두고 작업을 진행 함
  - 일상생활과 작업 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마감 기한에 따른 밤샘 작업이 잦았음

<표 4-12> 작업공간 분석 - 개인 작업실4

구 분		내용
	주요작업	디자인
	장비	노트북, 컴퓨터, 프린터기
	안전시설	소화기, 환기(창문, 환풍기), 화재보험
개인작업실4	공간사진	
	공간크기(평)	32
	임차비(만원)	65
	지역	경기도 안산시

#### 4) 복합 공간

- O 레지던시와 비영리전시공간과 같이 다수의 예술인 사용하는 공간의 경우, 새로 지은 건물일수록 안전시설이 갖추어짐
- O 레지던시의 경우, 공동작업장이 갖추어진 곳도 있으나, 대체로 제공되는 개 별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짐
- O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경우, 건물 자체의 노후와 안전의 문제가 있었음
  - 현장조사를 진행한 공공레지던시에 입주한 시각예술인의 경우, 레지던시 작업실 에서는 주로 아이디어 구상과 기획, 디자인이 이루어지며, 제작은 제작 업체에 맡겨서 진행, 전시장에서 설치작업이 이루어짐
  - 공용 공간에서는 담당자 혹은 예술인 간의 회의가 이루어지며, 개인 작업실은 채광과 환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3> 작업공간 분석 - 공공레지던시

구 분		내용
	주요작업	기획, 설치, 디자인
	장비	컴퓨터, 노트북, 드로잉 도구 등
	안전시설	소화기, 창문,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공공레지던시	공간사진	
	공간크기(평)	4
	임차비(만원)	-
	지역	서울시 종로구

- 현장조사를 진행한 비영리전시공간은 대표 1인과 실무자 1인이 상근하고 있으며, 1970년대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2000년대 중반 리모델링해서 사용 중
- 전시 설치를 위한 목재 가공용 둥근 톱과 전동 드라이버, 타카 등의 사용이 잦 았으며, 부족한 인력으로 대표와 실무자가 전시 설치를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음

<표 4-14> 작업공간 분석 - 비영리전시공간

구 분		내용
	주요작업	기획, 아카이브, 전시, 스터디
	정비	목재 가공용 둥근 톱, 전동 드라이버, 글루건, 타카 등
	안전시설	소화기, 창문, 환풍기
비영리전시공간	공간사진	
	공간크기(평)	160
	임차비(만원)	100
	지역	인천광역시 동구

- O 시각예술 작업실의 주요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음
  - 현장조사에 따르면, 기계적 요인에 따른 유해·위험 요소는 [1-1] 사다리와 [1-2] 고소 작업대의 경우, 전시 설치 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규모가 큰 작업을 진행하는 조소, 입체 등의 작업실에 사용 함
  - [1-3]에서 [1-6]의 타카, 글루건, 칼, 조각도, 톱, 전동 드라이버는 조소, 회화, 디자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작업실에서 갖추고 있으며, 회화의 경우는 [1-16] 화학약품을 대부분의 작업실에서 갖추고 있음
  - 작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조소의 경우는 [1-7]에서 [1-15]의 직소기, 고속절단기, 탁상용 드릴, 용접기, 플라즈마 절단기, 목재 가공용 둥근톱, 연삭기, 공기압축기, 3D 프린터를 갖추고 있으며, 회화의 경우는 프레스기를, 도예는 가마를 갖추고 있음
  - 작업환경 요인에 따른 유해·위험 요소는 공공미술의 경우 [2-1] 폭염과
     [2-2] 한파의 위험에 취약하며, 회화와 조소의 경우, [2-3] 실내공기, [2-5]
     소음, [2-6] 분진에 따른 위험에 취약 함.
  - [2-4] 수면 부족, [2-7] 직무 스트레스는 숙련도가 낮은 젊은 시각예술인이거 나 클라이언트가 있는 기술지원, 디자인에서 주로 나타남

<표 4-15> 시각예술분야 작업실의 주요 유해·위험요인

구분	연번	기인물	주요 유해·위험요인				
	1–1	시다리	사다리 자체 결함 및 단독작업에 따른 추락 위험 등				
	1–2	고소 작업대	과상승 및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협착 및 추락 위험 등				
	1-3 E計		타카핀에 의한 창상,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등				
	1–4	글루건	고온의 글루액으로 인한 회상 등				
	1-5 킬	칼, 조각도, 톱	칼날, 톱날접촉으로 인한 베임 위험 등				
	1-6	전동 드라이버	회전부 말림, 어깨부위 근골격계질환 위험 등				
기계적	1–7	직소기	직소날 취급에 따른 협착 위험 등				
요인	1–8	고속절단기	숫돌파괴, 불꽃비산으로 인한 상해 및 화재발생 위험 등				
	1–9	탁상용 드릴	드릴날 취급에 따른 협착 위험 등				
	1–10	용접기	아크에 의한 시력 손상, 용접흄, 노출된 피복 등으로 인한 건강질환 및 감전 위험 등				
	1–11	플라즈마 절단기	불꽃비산으로 인한 상해 및 화재발생 위험, 철판 등 중량물의 소재 취급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위험 등				
	1–12	목재 가공용 둥근톱	톱날접촉, 목재 비래 등의 협착 위험 등				

	1–13	연삭기(Grinder)	회전부 말림, 베임 및 절단 등
	1–14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벨트부위 협착, 소음, 압축공기 분사 위험 등
	1–15	3D 프린터	유해물질에 장시간 노출되어 폐호흡기·피부 질환 위험 등
	1–16	호悼약품	안료, 테라핀, 각종 용제 등의 유해물질에 장시간 노출되어 폐호흡가피부 질환 위험 및 인회성 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 위험 등
	1–17	프레스기	회전부 끼임으로 인한 상해 위험 등
	1–18	기마	가스 누출 시 폭발, 질식 및 고온의 화상과 화재 등
	2–1	폭염(혹서기)	공공미술 및 아외작업 시 폭염노출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위험 등
작업환	2-2	한파(혹한기)	공공미술 및 이외작업 시 장시간 저온상태로 노출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 위험 등
경	2-3	실내공기	오염된 실내공기에 의한 질병 노출 위험 등
요인	2-4	수면부족	이간작업과 대체인력 부재로 인함
_	2-5	소음	청력 <del>손</del> 상 위험
	2-6	분진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
	2-7	직무 스트레스	작업시간과 계획 변동으로 인한 불안전성 등

출처: 방송제작현장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20) 참고하여 연구원 수정

V

# 시각예술인의 산업 재해

1절 시각예술인의 산재 현황

2절 시각예술인의 신재 대처 현황

3절 시각예술인의 산재보험 인식

# 제1절 시각예술인의 산재 현황

# 1. 시각예술인의 사고 현황

그외 목격한사고

- O 시각예술인이 가장 많이 목격한 다른 사람의 사고 유형은 '부딪힘'임
  - 예술활동 시 목격한 다른 사람의 사고 유형으로는 '부딪힘'이 37.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넘어짐'(32.0%), '물체에 맞음'(27.9%) 등의 순이었음

(단위:%) ■ 없다 ■있다 떨어짐 넘어짐 깔림·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맞음 무너짐 88.88 끼임 절단·베임·찔림 화재·폭발·파열 교통사고 6.0 감전사고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3.8

[그림 5-1] 사고 목격 여부

부딫힘 사고를 직접 경험한 예술인은 60대일수록, 사진분야 종사자일수록, 창작활동에 임하는 예술인일수록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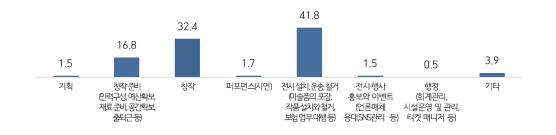
#### <표 5-1> 사고 직접 경험 여부-부딪힘

(단위 : %)

				(킨뮈 · <i>/</i>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700)	43.7	56.3
	20대	(113)	41.9	58.1
	30EH	(247)	38.2	61.8
연령	40EH	(150)	48.8	51,2
26	50 <b>C</b> H	(96)	48.8	51.2
	60EH	(72)	50.3	49.7
	70세 이상	(22)	37.6	62.4
	미술(일반미술)	(439)	42.2	57.8
예술분야	미술(디자인,공예)	(117)	46.7	53.3
에글군아	미술(전통미술)	(77)	43.0	57.0
	사진	(67)	49.3	50.7
 예술활동	창작	(677)	44.0	56.0
에돌될증 유형	실연	(6)	33.3	66.7
πὄ	기술지원 및 기획	(17)	35.3	64.7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O 시각예술인의 경험한 가장 심각한 업무상 사고는 주로 '전시 설치, 운송, 철거' 과정에서 발생함
  - 사고를 직접 경험한 예술인 중 가장 심각한 업무상 사고는 '전시 설치, 운송, 철거(미술품의 포장, 작품 설치와 철거, 보험 업무 대행 등)'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응답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창작'(32.4%), '창작 준비(인력구성, 예산확보, 재료 준비, 공간확보, 출퇴근 등)'(16.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5-2] 가장 크게(심각하게) 당한 업무상 사고 발생시 예술 활동 유형

- 시각예술 활동 유형별 사고 경험은 성별, 연령, 장르별 차이를 보임
  - 창작에 대한 업무상 사고는 남성일수록, 40대일수록, 미술(디자인, 공예)분야일 수록, 실연에 임하는 예술인 일수록 사고 경험 비율이 높았음
  - 창작 준비 중 경험한 업무상 사고 비율은 여성일수록, 70세 이상일수록, 미술 (전통미술)일수록, 기술지원 및 기획에 임하는 예술인 일수록 높았음
  - 전시 설치, 운송, 철거 중 업무상 사고를 경험한 예술인의 비율은 여성일수록, 20대일수록, 미술(일반미술)일수록, 실연 예술인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표 5-2> 가장 크게(심각하게 당한 업무상 사고 발생시 예술 활동 유형

(단위:%) 전시설시. 행정 창작준비 전시·행사 운송철거 (회계관리, (인력구성 홍보와 시설운영 (마술품의 퍼포먼스 이벤트 예산확보, 기타 구분 사례수 <del></del>팡器 창작 기획 및 관리, 재료준비, (시연) (언론매체 설차 티켓 강확보 S대.SNS 철거, 보험 업무 매니저 출타 등 관리 등 대행 등 등) 전체 (396)41.8 32.4 16.8 3.9 1.7 1.5 1.5 0.5 남성 (135)39.8 36.7 15.7 3.6 1.4 1.4 0.7 0.7 성별 여성 (261)42.8 30.1 17.4 4.0 1.9 1.5 1.8 0.3 25.2 20EH (57)56.0 12.1 1.7 5.0 0.0 0.0 0.0 30EH (125)40.8 30.4 21.8 2.3 0.8 2.4 1,6 0.0 연령 40EH (93)44.9 39.5 11.4 2.1 1.0 1.0 0.0 0.0 50EH (63)33.3 36.7 6.2 0.0 1.6 4.5 0.0 17.8 60EH (45)17.5 10.8 2.0 2.2 34.6 26.3 4.5 2.1

	70세 이상	(12)	32.0	31.1	22.8	7.0	0.0	0.0	0.0	7.0
	미술(일반미술)	(249)	48.4	27.4	16.3	4.0	1.2	1.6	0.8	0.4
예술	마술(다.인공예)	(67)	25.7	51.4	15.7	1.4	1.4	1.4	2.9	0.0
분야	미술(전통미술)	(39)	37.8	24.4	22.2	6.7	2.2	2.2	2.2	2.2
	사진	(41)	31.7	39.0	17.1	4.9	4.9	0.0	2.4	0.0
 예술	창작	(385)	41.7	32.8	17.1	4.0	1.5	1.2	1.2	0.5
활동	실연	(4)	50.0	50.0	0.0	0.0	0.0	0.0	0.0	0.0
유형	7술원및7획	(7)	42.9	0.0	14.3	0.0	14.3	14.3	14.3	0.0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업무상 사고 경험 비율이 높은 것은 미술 분야임. 미술은 찔림, 베임(64.1%)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미끄러짐(36.3%), 시설물 충돌 부상(33.4%), 화상(22.7%)의 비율 또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았음(근로복지공단, 2022)

<표 5-3> 업무상 사고 직접 경험 여부

(단위:%)

7	분	샤 샤	남아짐 미끄 러짐	추락	/ 돌 방	찔림, 베임	감전 사고	교통 사고	화상	폭행	그외 경한 사고
	체	(1800)	27.2	7.7	19.1	25.1	4.7	15.2	7.5	2.6	3.8
	문학	(135)	5.2	2.9	3.7	5.1	2.2	5.1	2.1	1.4	4.4
	울	(207)	36.3	14.5	33.4	64.1	13	9.2	22.7	2.4	6.7
	사진	(89)	35.6	11.9	18.7	26.6	3.4	19.2	5.6	3.4	1.1
	건축	(12)	3.3	3.3	6.5	19.9	3.3	3.3	13.4	0	0
	음악	(171)	12.1	5.3	11,1	9.4	1.7	20.3	1.2	1,3	3.5
예술	국악	(128)	18	4.7	14.1	13.3	0.8	21.8	2.3	1.6	1.6
분야	연예	(290)	27.6	8.2	18.9	20.1	2.2	17.1	6	2.8	3.2
	무용	(128)	54.4	8.5	23.5	19.2	1.6	21.2	8.1	1.5	2.4
	연극	(238)	32	6.6	22.5	25.1	5.6	12.6	5.1	3	3.8
	영화	(175)	32.6	7.2	20.4	26.2	6.2	20.9	4.9	4.3	3.6
	만화	(99)	5.2	1	8.3	8.3	0	3.1	3.1	3.1	4.1
	복수	(128)	27.9	5.6	15.2	20.3	7.6	15.5	7.2	4.7	6.3

출처: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근로복지공단, 2022)

O 작업 강도와 직업으로 인한 신체 및 정신 건강 악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작업강도에 대해 높다(47.5%)는 의견이 높지 않다(11.3%)보다 훨씬

#### 우세함(근로복지공단, 202)

(단위 : %)



출처: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근로복지공단, 2022)

#### [그림 5-3] 작업강도와 건강 손상

○ 예술인이 인식하는 작업 강도를 점수로 매겼을 때(10점 만점), 미술분야 예술인은 작업강도를 6.32점, 사진분야의 예술인은 6.12점으로 인식함. 특히 미술분야 예술인은 전체 예술인보다 작업강도가 높고 신체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우세함

<표 5-4> 작업강도와 건강 악화

(단위: 점)

구	분	사례수	작업강도	신체건강 악화	정신건강 악화
전	체	(1800)	6.14	5.3	5.04
	문학	(135)	5.61	5.49	5,2
	미술	(207)	6.32	5.98	4.84
	사진	(89)	6.12	4.45	4.22
MIV HOL	건축	(12)	7.59	5.92	6.26
예술분야	음	(171)	5.6	4.3	4.15
	갂	(128)	5,25	4.21	3.9
	연예	(290)	6.25	5.67	5.69
	무용	(128)	6.06	4.48	3.96

연극	(238)	5.89	4.84	5.02
영화	(175)	6.63	5.84	6
만화	(99)	7.37	7.72	7.02
복수	(128)	6.39	5.22	4.44

출처: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근로복지공단, 2022)

- O 시각예술분야는 다양한 공구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잦았음
  - 회화/설치/공공미술을 하는 시각예술인의 경우, 사다리 낙상과 스테이플러 찔림 이 많았으며, 가벽 설치 시 다양한 공구를 다루며 생기는 사고가 잦았음

"동판 작업을 하다가 산이 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실크스크린 할 때는 그냥 막수건에다가 신나 묻혀서 양쪽으로 막 닦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무장갑을 끼거나하지 않고 맨손으로 … 경미하지만 글루건 쓰다가 화상 입는 일은 자주 발생해요"(회화, 기획, 시각예술인 C)

"저는 스테이플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찔리고, 이제 가벽 설치하거나 하게 되면 공구 다워야 되고 하다보니까 당연히 공구가 직소도 다루고 타카도 다루고 드릴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의한 사고가 가능성도 있고, 사리은 사고로 치면 가장 위험할수 있는 거는 이제 사다리 타는 거죠. (공공미술, 설치, 기획, 시각예술작가 D)

- 조각의 경우, 사용하는 위험도가 높은 기계(드릴, 직소, 칼, 그라인더 등)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도도 매우 높았음

"목재 작업을 하던 선배는 둥근톱에 손가락이 절단된 적도 있고, 드릴 쓰다가 옷이 말 려들어가서 청바지랑 옷이 말려들어가고, 그라인더에 손 다치는 건 뭐, 굉장히 다양한 사고가 많죠." (설치. 디자인. 기획. 시각예술인 J)

"전해 들은 얘기로는 후배 중에 후드티를 입고 그라인더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 데 후드 티에서 여기 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라인더가 돌아갈 때 끈이 이 렇게 말려들어간거에요. 다행히 큰 사고 나기 전에 전원을 꺼가지고… 한 번은 대학교 때 제가 목격한건데, 용접실은 테이블이 나무가 아니라 다 이게 금속판이에요. 왜냐하 면 금속에다 불질을 하고 불을 켤 때는 라이터를 가지고 해요. 근데 그 라이터를 철판 에다 놓았다가 라이터가 달궈지면서 뻥하고 터진거에요. … 이렇게 불이 머릿카락에 지글지글 거리면서 다행히 큰 화상은 아니고…"(조각, 공예, 시각예술인 I)

- O 시각예술인이 경험한 가장 심각한 업무상 사고는 주로 '개인창작공간(집 밖 별도 공간)'에서 발생
  - 가장 심각한 업무상 사고는 '개인창작공간(집 밖 별도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응답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야외'(18.2%), '개인창작공간(집 안)'(14.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n=396, 단위 : %)



출처:

[그림 5-4] 가장 크게(심각하게) 당한 업무상 사고 발생 공간

O 많은 시각예술인은 주로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큰(심각한) 업무상 사고를 경험하였음

(n=396, 단위:%)



출처:

#### [그림 5-5] 가장 크게(심각하게) 당한 업무상 사고의 목격자 유무

- 7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목격자가 있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예술 분야 중 사진분야에서 사고 목격자가 높았으나,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예술인은 목격자 없이 사고를 경험함
- 시각예술인의 작업 특성상 개인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연예술 등 여러 명이 협업하는 타 장르와 달리 사고 발생 시 목격자가 많지 않았음

- 심층인터뷰에서 간접 경험한 사고의 경우, 동료 작가들을 통해서 사고에 대한 소식을 건네 들은 경우가 많았으며 직접 목격한 사고 사례를 이야기해준 경우는 드물었음

<표 5-5> 가장 크게(심각하게) 당한 업무상 사고의 목격자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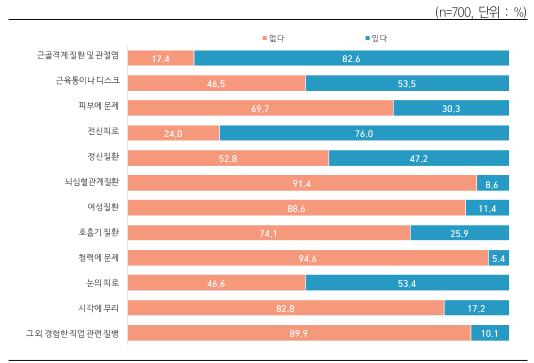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사고를 목격한 다른 사람이 있었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전체	(396)	40.0	60.0	
 성별	남성	(135)	46.7	53.3	
~~~~~~~~~~~~~~~~~~~~~~~~~~~~~~~~~~~~~~	여성	(261)	36.6	63.4	
	20 <sup>C</sup> H	(57)	39.1	60.9	
	30EH	(125)	39.8	60.2	
연령	40EH	(93)	32.0	68.0	
26	50대	(63)	48.1	51.9	
	60FH	(45)	41.2	58.8	
	70세 이상	(12)	61.2	38.8	
	미술(일반미술)	(249)	34.9	65.1	
예술	미술(디자인,공예)	(67)	42.8	57.2	
분야	미술(전통미술)	(39)	51,1	48.9	
	사진	(41)	56.1	43.9	
 예술활동	창작	(385)	41.2	58.8	
	실연	(4)	0.0	100.0	
유형 	기술지원 및 기획	(7)	0.0	100.0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2. 시각예술인의 질병현황

- O 시각예술인이 가장 많이 겪는 직업 관련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 및 관절염'임
  - 예술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직업 관련 질병 경험으로는 '근골격계질환 및 관절염'이 82.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전신피로'(76.0%), '근육통이나 디스크'(53.5%) 등의 순이었음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5-6] 직업 관련 질병 경험

- 근골결계 질환의 경험 정도는 여성일수록, 40대일수록, 미술(전통미술)일수록창작과 실연에 종사하는 예술인 일수록 높았음

#### <표 5-6> 근골격계 질환 및 관절염 경험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700)	82.6	17.4
서벼	남성	(233)	73.6	26.4
성별	여성	(467)	87.0	13,0
	20대	(113)	75.6	24.4
	30대	(247)	84.8	15,2
연령	40EH	(150)	85.0	15.0
긴당	50FH	(96)	84.8	15.2
	60FH	(72)	79.9	20.1
	50대 (96) 84.8 60대 (72) 79.9 70세 이상 (22) 74.9	74.9	25.1	
	미술(일반미술)	(439)	82.9	17.1
예술	미술(디자인,공예)	(117)	85.2	14,8
분야	미술(전통미술)	(77)	88.7	11.3
	사진	(67)	68.7	31.3
예술활동	창작	(677)	83.3	16.7
	실연	(6)	83.3	16.7
유형 	기술지원 및 기획	(17)	52.9	47.1

본 좌열과를 표로 구성

○ 전체 예술인 대비 시각예술인이 더 많이 경험한 직업 관련 질병은 '근육통', '두통, 눈의 피로', 전신피로임(근로복지공단, 2022). 질병 경험은 사고경험 과 같이 활동분야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음

<표 5-7> 직업 관련 질병 직접 경험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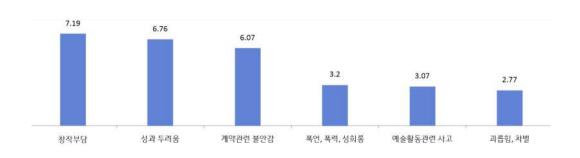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두통, 눈의 피로	근육 통	전신 피로	피부 문제	복통	수면 장애	보심 혈관 계질 환	정신 질환	여성 질환	un (n)
전	체	(1800)	78.3	80.6	82.8	39.1	51	58.9	11.2	38.5	23.2	64.3
	문학	(135)	92.6	85,8	85,8	31.9	60.8	69.6	20.7	43.7	35.5	77
	미술	(207)	87	90.3	85.4	53.6	52.1	60.9	13	36.7	23.6	75.3
	사진	(89)	84.2	85,3	84.2	44.1	40.7	47.5	9	24.9	21.1	59.9
	건축	(12)	80.1	53.3	80.1	33.3	50	19.9	0	33.3	0	36.6
예술	음악	(171)	71	70.3	69.9	20.1	31.8	47.8	8.4	25.4	19.6	53.9
분야	국악	(128)	65.4	79.7	75.7	25.8	32.6	38.9	7.7	21.7	12.3	68.8
	연예	(290)	79.4	76.4	86.1	47.1	58.7	68	12.1	46.4	26	60.6
	무용	(128)	58.9	82,1	82,1	35.7	47.3	47.5	3.8	31,1	17.3	65.5
	연극	(238)	75.4	80.9	82.3	31.1	49.5	59.1	9.2	42.8	18.7	57.3
	영화	(175)	79.8	80.3	83.5	42.5	59.4	68.2	16	43.6	26.1	66.3

만화	(99)	96.9	94.8	93.8	49.5	74.7	83	21.1	61.3	42.6	80.9
복수	(128)	78.4	90.4	88.3	41.6	53.6	61.3	10.2	39.8	20.3	74.3

출처: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근로복지공단, 2022)

O 예술활동 스트레스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창작 부담이 가장 높았고(7.19점), 성과 두려움(6.76점), 계약관련 불안감(60.7점)순이었음

(단위 : 점)



출처: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근로복지공단, 2022)

#### [그림 5-7] 예술활동 스트레스(10점 만점)

- "창작부담"과 "성과 두려움"은 시각예술인의 불안증, 우울증, 강박증 등을 일으키는 요인이었음

"공황장에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꽤 많이 약 먹고. 왜냐면 이게 회사처럼 진급하는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불안정한 삶의 틀에서 버텨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불안감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아파질 수밖에 없죠." (설치, 디자인, 기획, 시각예술인 K)

O 시각예술분야에는 업무에 따른 공통 질병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업무 기인성을 밝히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됨. 이는 시각예술인의 일상생활 및 직업 활동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

"예를 들면 그냥 일상의 내 생활의 시간하고 그게 확실하게 사실 분리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직장인들은 9시부터 8시 혹은 있던 어떤 공간에 또 가서 그 특정한 시간과 공 간에서 이게 지낸다라는 사실 그게 딱 조건이 맞는 건데 예술가들은 그렇지 않다 보 니까 사실 이런 산재나 이런 걸 했을 때 제일 약간 애매한 지점이 그거예요."(회화, 기획, 시각예술인 C)

O 또한, 시각예술인은 겸업 비율이 높아, 업무에 따른 질병과 창작과 무관한 아르바이트에 따른 질병을 명확히 분리하기 어려움 "이게 이제 번역 일 때문인지 제 작업 때문인지 이게 경계가 불분명해서 사실은 신청 은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나이 든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침을 맞으 러 가는 한의원을 다른 작가의 소개로 갔는데 거기에 다니는 작가들이 많아요... 이제 이걸 산재로 봐야 되느냐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해서 아마 받기도 쉽지는 않을 거에요. 그래서 신청은 안하고 제가 그냥 사비로 냈어요. ... 제가 워낙에 사다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다보니까 예술인 산재보험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공공미술, 설치, 기 획, 시각예술인 D)

다양한 매체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경우, 사후 질병 발생 시원인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3D 프린터에 되게 안 좋은 화학물질이 나오잖아요. … 진짜 안 좋은 상황이면 암 걸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왜 걸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게 모호하잖아요. 고용당한 것도 아니고 셀프 인플로어인데."(사진, 기획, 시각예술인 L)

○ 충분히 쉴 수 없는 프리랜서 시각예술인의 작업 환경이 질병을 야기함

"이게 프리렌서들이 다 그렇듯이 자기가 스스로 시간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죠. 프리랜서들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세번 거절하면 클라이언트가 일을 안 줍니다. … 주말도 없고 크리스마스, 설날, 가족이고 뭐고 항상 …"(공공미술, 설치, 기획, 시각예술인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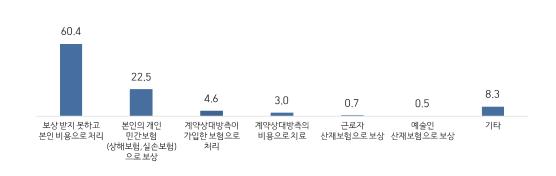
"일이 2009년 이때가 제일 많았어요. 미술에 좀 버블이었어요. 그때 일이 많아서 한 달에 하루도 못 쉬고 일했어요. 그때는 그런 엄청난 고용 형태가 아니고 너무 구두로 많이 할 때라 너무 힘들고 진짜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25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자다가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병원 갔는데 뭐 다 찍어봤는데 뭐 아픈 곳도 없다고 하는데. 근데 누워 있지는 못하죠. 누워 있으면 여기가 등이 닿는 순간 숨을 못 쉬니까." (디자인, 설치운송, 시각예술인 H)

# 제2절 시각예술인의 산재 대처 현황

### 1. 시각예술인의 산재 대처 유형

- O 대다수의 시각예술인은 사고 시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 비용으로 처리
  - 사고를 직접 경험한 예술인의 60.4%가 '보상 받지 못하고 본인 비용으로 처리' 하였음
  - 이어서 '본인의 개인 민간보험(상해보험, 실손보험)으로 보상'(22.5%), '계약상 대방측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4.6%)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예술인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았다는 응답이 0.5%로 가장 낮았음

(n=39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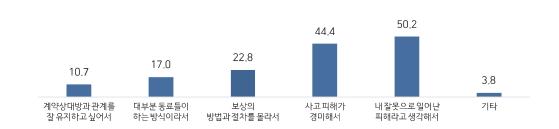
출처: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근로복지공단, 2022)

#### [그림 5-8] 업무상 사고 피해 보상 방법

- O 시각예술분야는 행사나 전시회 개최 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중 발생하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있으나 작가의 상해에 대한 보험 가입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남(근 로복지공단, 2022)
- O 본인 비용으로 처리한 주된 이유는 "내 잘못으로 일어난 피해라고 생각"했 기 때문임

- 본인의 개인 비용 또는 민간보험으로 처리한 이유는 '내 잘못으로 일어난 피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임. 이어서 '사고 피해가 경미해서'(44.4%), '보상의 방법과절차를 몰라서'(22.8%) 등의 순으로 응답함

(n=328. 단위: %)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5-10] 피해 보상 없이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 이유(복수응답)

- O "내 잘못으로 일어난 피해라고 생각"한 시각예술인의 비율은 전체 예술인의 인식(22.5%)보다 훨씬 상회함
  -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근로복지공단, 2022)에 따르면,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 비용으로 처리한 이유의 1순위 응답은 "사고 피해가 경미해 서"(36.5%)였으며, 2순위 응답은 "내 잘못으로 일어난 피해라고 생각해서", "보 상의 방법과 정차를 몰라서"(22.5%)였음

(n=593, 단위: %)



출처: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근로복지공단, 2022) [그림 5-11] 피해 보상 없이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 이유(복수응답)

O 많은 시각예술인이 "내 잘못으로 일어난 피해라고 생각"한 이유는 시각예술 분야의 개별작업 속성 때문이었음

"시각예술은 협업을 하는 작가라도 **개인 작업 90%를 안 하는 작가가 없을 거예요**. 근

데 그 10%를 위해서 산재를 들으라는 건데. 제가 인식하기에 **개인 작업실에서의 작업이 산재 처리가 거의 안 될 거라는 걸 거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 "(공공미술, 조각, 기획, 시각예술인 E)

"저는 공간에서 작업할 때, 저 혼자 작업할 때가 많고, 그러니까 '이게 내 책임이구나' 가 훨씬 큰 거예요. 제가 혼자 있기를 또 원했으니까"(설치, 시각예술인 A)

O "사고 피해가 경미해서" 본인 비용으로 처리한 배경에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행정 처리 등 복잡한 절차를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음

"예를 들어서 외상이 되게 심하게 나서 골절이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치료 비도 많이 들고 그때는 애를 써서라도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나 이거 침 맞는 데 7천 원이면 맞는데. 7천 원짜리도 계속 쌓이면 당연히 많아지긴 하겠죠. 근데 그 서류 만드는 데, 타이핑 하는게 더 팔에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공공미술, 설치, 기 획, 시각예술인 D)

○ 시각예술인은 산업재해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였음

"업무 스트레스라고 하면 누가 누군가 푸시를 줘서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기한이 있다든지. 이런 스트레스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예술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예민한 분들이 많아서 '그냥 나는 이렇게 타고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본인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이라는 게 풀리고 안 풀리고는 본인 기준인데. '내 작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거 업무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공공미술, 조각, 기획, 시각예술인 E)

"이게 어디에 속한다든지, 어디가 주체가 된다든지,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물론 보험 관계나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이쪽이 계약을 해서 돈을 주니까 얘가 주가 되고, 얘가 귀속해서 여기 일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관계가 이제 논리적으로는 말이되는데. 실제로 일할 때는 그렇게 하는 안 하는 거죠."(사진, 테크니션, 시각예술인 M)

- 피해보상없이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 2순위 응답의 경우, 고령층 시각예술인 과 그 외 시각예술인의 응답이 서로 상이하였음
  - 고령층 시각예술인은 '대부분 동료들이 하는 방식'이라서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였으나, 20~60대 시각예술인은 '사고가 경미해서' 본인이 부담하였음

#### <표 5-8> 피해 보상 없이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 이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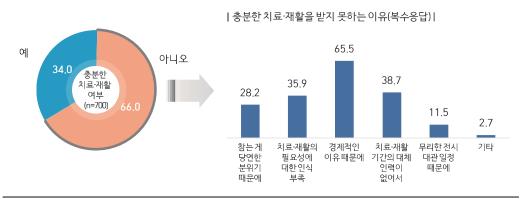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내 잘못으로 일어난 피해라고 생각해서	사고 피해가 경미해서	보상의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대부분 동료들이 하는 방식이라서	계약상대빙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어서	기타
	전체	(328)	50.2	44.4	22.8	17.0	10.7	3.8
	20대	(48)	46.2	64.0	30.1	25.8	23.8	0.0
	30 <sup>C</sup> H	(104)	51.3	44.5	26.3	18.0	12.2	1.0
연령	40EH	(79)	54.4	49.4	21,1	17.2	8.7	2.5
	50대	(52)	40.5	31.8	16.5	9.4	5.7	13.1
	60 <sup>E</sup> H (34)		54.0	31.9	22.4	8.7	2.9	8.3
	70세 이상	(11)	63.4	17.6	0.0	28.4	0.0	0.0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O 많은 시각예술인은 업무상 사고를 당한 이후 치료와 재활을 충분히 받지 못 하였음
  - 예술인 본인 또는 동료가 업무상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치료·재활을 충분히 받는다는 응답은 34.0%에 불과하였음

(n=462, 단위: %)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5-12] 본인 또는 동료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재활 여부 및 받지 못하는 이유

- O 사고 이후 치료와 재활을 충분히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으며, 이어 '치료·재활 기간의 대체 인력이 없어서'(38.7%)였음
  -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 또는 치료비의 경제적 부담으로 사고 예방 및 대처가 미 흡한 상황임

"20대 때 생각해보면, 통장의 잔고가 얼마 없어서 … 20대에게 보험료를 매달 지불하라고 하면, 엄청 부담되는 금액일 거에요"(공공미술, 조각, 기획, 시각예술인 E)

- 치료, 재활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이 없어 시각예술인들은 사고 후 충분히 쉬지 않고 활동을 재개함

"제가 상해로 골절이 됐으면 아마 작업을 안 했을 텐데. 이건 전시가 잡혀 있고. 나는 찢어져서 꼬맸고 그다음 날 그냥 설치는 했죠." (공공미술, 조각, 기획, 시각예술인 E)

"제가 계단 내려오다가 마지막 계단에서 날랐잖아요. 발을 그러니까 엉덩이로 깔고 앉은거에요. 그러니까 발목에 인대가 '우두둑' 했죠.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 일을 했죠.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한은. 예술가들은 왜 그럴까요? 그거를 배려받지 못하잖아요. 그거를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조각, 공예, 시각예술인 I)

"그 기간이 아니면 전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대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체 인력이 없어요. 저희는 제 작품을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설치, 시각예술인 A)

-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받지 못하는 2순위 이유는 예술 분야별로 상이하였음
  - 미술(디자인, 공예)와 미술(전통미술)의 경우 '치료·재활 기간의 대체 인력이 없어서'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받지 못한 반면, 미술(일반미술)은 '치료·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었고, 사진 분야는 '참는 게 당연한 분위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및 재활이 부재하였음

<표 5-9> 충분한 치료·재활을 받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치료·재활 기간의 대체 인력이 없어서	치료·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참는 게 당연한 분위기 때문에	무리한 전시 대관 일정 때문에	기타
	전체		65.5	38.7	35.9	28.2	11.5	2.7
예	미술(일반미술)	(301)	67.9	35.1	40.3	30.2	11.1	2.6
술	미술(다다인,공예)	(75)	60.2	52,6	26.9	19.2	10.2	1.3
분	미술(전통미술)	(41)	61.6	40.8	29.9	17.2	17.2	6.3
O‡	사진	(45)	62.2	37.8	26.7	40.0	11.1	2.2

본 좌열과를 표로 구성

- O 가장 심각한 업무상 사고를 당한 시각예술인의 상당수는 일을 쉬지 않았음
  - 사고를 경험한 예술인 중 본인이 가장 크게(심각하게) 당한 업무상 사고로 인해 일을 쉰 기간을 조사한 결과, '0일'을 선택한 응답이 24.1%로 가장 높았음

- 평균적으로는 60.10일로 나타남
- 가장 크게(심각하게) 당한 업무상 사고로 인해 일을 쉰 기간은 20대와 70대는 1~3일, 30대와 40대는 0일, 50대와 60대는 8~31일이 가장 많았음
- 예술 분야별 사고로 인해 일을 쉰 기간은 미술(일반미술 및 디자인, 공예)는 0일, 미술(전통미술)은 1~7일, 사진은 1~4일 및 8~31일이었음

<표 5-10> 가장 크게(심각하게) 당한 업무상 사고로 인해 일을 쉰 기간

(단위 : 일)

	사례수	0일	1~3일	4~7일	8~31 일	32~36 5일	366일 이상	모름, 무응답	평균	
	전체	(396)	24.1	18.1	13.6	19.2	13.7	3.2	8.2	60.10
성별	남성	(135)	15.2	14.4	17.7	23.0	18.1	3.7	8.0	63.52
`o' <b>≥</b>	여성	(261)	28.7	20.0	11.5	17.2	11.5	3.0	8.2	58.33
0124	20대	(57)	20.0	27.1	23.8	17.2	8.4	0.0	3.4	15.76
	30EH	(125)	29.0	17.7	10.2	21.1	15.6	0.0	6.3	24.22
	40 <sup>C</sup> H	(93)	32.6	17.7	14.2	15.6	11.5	0.0	8.4	21.68
연령	50 <b>C</b> H	(63)	16.6	10.7	13.4	21.0	12.0	12.4	14.0	211.07
	60 <sup>C</sup> H	(45)	12.8	13.1	8.6	24.1	19.9	10.9	10.7	110.52
	70세 이상	(12)	8.1	38.8	15.1	8.0	23.0	0.0	7.0	32.65
	미술(일반미술)	(249)	25.8	15.9	12.3	19.8	13.9	2.8	9.5	59.80
예술 분야	미술(디자인,공예)	(67)	27.1	21.5	12.8	15.8	14.3	2.9	5.7	64.12
	미술(전통미술)	(39)	17.8	22.2	22.2	17.8	13.3	2.2	4.4	34.37
	사진	(41)	14.6	22.0	14.6	22.0	12.2	7.3	7.3	80.55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시각예술인이 업무상 사고로 인해 쉰 기간은 본 연구 조사 결과보다 더 길었음.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시 각예술인의 업무상 사고로 인해 쉰 기간은 평균 2개월(60일)인 반면, 「예 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결과, 미술분야의 쉰 기간은 6.26개월, 사진 분야는 5.29개월로 나타남
  - 전체 예술인의 평균 쉰 기간은 4.7개월임
  - 전체 예술인이 업무상 사고로 인해 쉰 기간은 연령에 따라 점차 누적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50대와 60대에 쉰 기간이 가장 길었다가, 70세 이상부터 큰 폭으로 쉰 기간이 줄었음

<표 5-11> 업무상 사고로 인해 일을 쉰 기간

(단위 : 명, %,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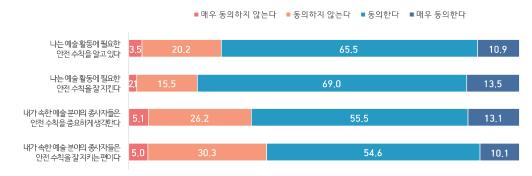
							(근기 ·	<del>경, /º, 기열/</del>
	걘	사례수	1개월 미만	1개월	2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2개월 미만	1년 이상	평균 (개월)
	전체	(793)	9	57.2	13.4	6.6	13.9	4.74
	문학	(128)	1.6	40.6	18	11.7	28.2	8.1
	미술	(196)	7.2	48.5	16.3	8.6	19.4	6.26
	사진	(82)	2.5	55.8	18.4	4.9	18.4	5.29
	건축	(9)	33.5	41.6	4.1	0	20.8	13,35
	음악	(142)	5	50.2	13.3	10	21.5	5.74
예술	국악	(116)	3.5	50.9	22.5	8.5	14.6	6,91
분야	연예	(269)	3.8	47	15.4	11,1	22.7	6.68
	무용	(115)	5	42.8	20	7.1	25.1	6.88
	연극	(213)	6.1	46.6	17.1	8.9	21.3	6.08
	영화	(164)	5.8	46.1	17.9	7.3	22.9	5,81
	만화	(98)	1	38	27.6	9.9	23.4	7.42
	복수	(121)	2.4	48	17.9	10	21.7	8.85
	20대 이하	(137)	10.2	67.7	12.5	2.5	7.1	3.68
	30대	(319)	9.4	56.9	14.4	7.2	12.1	3,86
연령	40EH	(198)	9.1	59	9.9	7.7	14.2	4.1
	50대	(114)	7.2	48.4	14.2	7.2	23	6.41
	60대 이상	(25)	2.6	27.3	28.1	10.1	31.9	21.02

출처: 예술인 신재보험 적용방안 연구(근로복지공단, 2022)

## 2. 사고와 질병에 대한 인식 및 교육

- O 시각예술인의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한 자신의 인식수준은 높은 편으로 평가 되엇으나 동료의 인식수준은 이보다 낮게 평가되어 괴리를 보임
  - '나는 예술 활동에 필요한 안전 수칙을 알고 있다'는 76.4%였으나, '내가 속한 예술 분야의 종사자들은 안전 수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68.6%에 머무름
  - '나는 예술 활동에 필요한 안전 수칙을 잘 지킨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82.4%로 높았으나, '내가 속한 예술 분야의 종사자들은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편이다'는 64.7%로 차이를 보임

(n=700, 단위 : %)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5-13] 예술 활동시 안전 수칙 인식

- 예술 활동 시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예술인은 남성, 50대, 미술(전통미술) 종 사자인 반면,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은 여성일수록, 20대일수록, 미술(일반미술)일수록 높았음

<표 5-12> 예술 활동시 안전 수칙 인식-나는 예술 활동에 필요한 안전 수칙을 잘 지킨다

¬н		니게스	종	합
	구분	사례수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전체	(700)	17.6	82.4
사	남성	(233)	12.5	87.5
성별	여성	(467)	20.1	79.9
	20 <sup>C</sup> H	(113)	24.9	75.1
연령	30EH	(247)	20.2	79.8
	40EH	(150)	17.7	82.3

	50대	(96)	9.1	90.9
	60EH	(72)	9.3	90.7
	70세 이상	(22)	12.3	87.7
	미술(일반미술)	(439)	19.3	80.7
에스브OF	미술(디자인,공예)	(117)	15.6	84.4
예술분야	미술(전통미술)	(77)	11.5	88.5
	사진	(67)	16.4	83.6

본 좌열과를 표로 구성

- 안전 수칙 준수에 대한 동료 예술인의 인식 수준은 남성 예술인, 60대 이상 예술인, 미술(전통미술)분야일수록 높았음

<표 5-13> 예술 활동시 안전 수칙 인식 -내가 속한 예술 분야의 종사자들은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편이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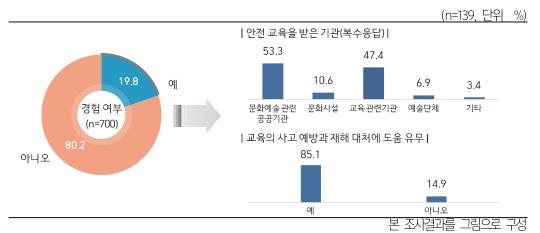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종	합
		시네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전체	(700)	35.3	64.7
	남성	(233)	24.2	75.8
성별	여성	(467)	34.9	65.1
	20대	(113)	37.9	62.1
	30-1	(247)	41.5	58.5
연령	40 <sup>E</sup> H	(150)	35.8	64.2
26	50대	(96)	25.2	74.8
	60 <sup>E</sup> H	(72)	24.4	75.6
	70세 0상	(22)	28.4	71.6
	미술(일반미술)	(439)	34.8	65.2
예술	미술(디자인,공예)	(117)	35.3	64.7
분야	미술(전통미술)	(77)	27.1	72.9
	사진	(67)	47.8	52.2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O 예방 교육이 사고 및 예방 및 재해 대처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시각예술인 대부분은 예술 활동에 대한 안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음
  - 예술 활동에 대한 안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80.2%로 매우 높았음

- 예방 교육이 사고 예방 및 재해 대처에 도움 되었다는 인식은 85.1%에 달했음



[그림 5-14] 예술 활동에 대한 안전 교육 경험

- 안전 교육은 주로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에서 수행되었고, 이어서 '교육 관련 기관'에서 수행됨
- 20대일수록, 미술(디자인, 공예)분야일수록,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시각예술인 일수록 안전 교육을 경험하였음

<표 5-14> 예술 활동에 대한 안전 교육 경험 여부

(단위 : %)

				(E11.70)
<u>-</u>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7	전체	(700)	19.8	80.2
	20대	(113)	28.7	71.3
	3054	(247)	19.2	80.8
연령	40 <sup>C</sup> H	(150)	18.2	81.8
16	50대	(96)	19.7	80.3
	60대	(72)	13.6	86.4
	70세 이상	(22)	12.8	87.2
	미술(일반미술)	(439)	19.1	80.9
예술 분야	미술(디자인,공예)	(117)	24.6	75.4
에걸 판약	미술(전통미술)	(77)	15.8	84.2
	사진	(67)	20.9	79.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111)	32.7	67.3
기입 여부	마입	(589)	17.4	82.6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20대 예술인의 경우, 예술 활동에 대한 안전교육을 '교육기관(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수강하였고, 그 외 연령층은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문

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에서 수강하였음

- 미술(디자인, 공예)분야 종사 예술인은 '교육기관'을 통해 예술 활동 관련 안전 교육을 받았으며, 그 외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교육받음

## <표 5-15> 안전 교육을 받은 기관(복수응답)

(단위:%)

	구분	사례수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교육 관련기만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문화사설 (미술관, 갤러리, 아트페어 등)	예술단체	기타
	전체	(139)	53.3	47.4	10.6	6.9	3.4
성별	남성	(46)	59.5	40.4	15,1	6.5	1.9
· 02	여성	(93)	50.2	50.8	8.3	7.1	4.2
	20대	(32)	42.5	57.5	15.2	12.1	0.0
	30대	(48)	57.4	50.8	6.2	0.0	3.9
연령	40FH	(27)	46.6	46.3	3.6	0.0	7.1
270	50대	(19)	60.1	44.6	5.2	10.3	0.0
	60EH	(10)	70.8	10.1	30.2	29.2	10.1
	70세 0상	(3)	65,2	30.3	65.2	30,3	0.0
	미술(일반미술)	(84)	54.1	48.2	10.6	5.9	3.5
예술	마술(다.인공예)	(29)	33,3	63,3	6.7	6.7	3.3
분야	미술(전통미술)	(12)	57.1	50.0	7.1	14.3	7.1
	사진	(14)	85,7	7.1	21.4	7.1	0.0
	개입	(36)	65.0	29.5	16.4	8.2	5.4
기입이부	미기입	(103)	49.1	53.7	8.5	6.4	2.7

본 좌열과를 표로 구성

- 예방 교육이 사고 예방과 재해 대처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지배적이었음. 그 중 50대~70대 이상 예술인 및 미술(전통미술)분야 예술인일수록, 예술인 고용보험 종사 예술인일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함

#### <표 5-16> 예방 교육의 사고 예방과 재해 대처에 도움 유무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139)	85.1	14.9
	20대	(32)	78.7	21.3
	3054	(48)	85.5	14.5
연령	40 <sup>C</sup> H	(27)	74.8	25.2
70	50 <sup>C</sup> H	(19)	100.0	0.0
	60 <sup>C</sup> H	(10)	100.0	0.0
	70세 0상	(3)	100.0	0.0
	미술(일반미술)	(84)	83.5	16.5
예술 분야	미술(디자인,공예)	(29)	86.7	13,3
에갈 판약	미술(전통미술)	(12)	100.0	0.0
	사진	(14)	78.6	21.4
예술인 고용보험	기입	(36)	91.8	8.2
가입 여부	미기입	(103)	82.8	17.2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O 안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질적 고양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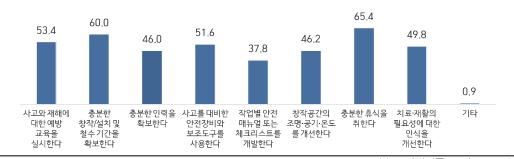
- 안전 교육을 받은 시각예술인은 "미술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 내에서 재료를 다루는 방법이나 복장에 대한 간략한 안전교육은 이루어지"나, "귀찮아서 안전 장비를 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응급시 대처나 사고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함

"안전교육 이런 게 되게 낯설어서 진짜 돼지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학교 때 내가 진짜 받았었나? 물론 이제 저희도 이제 예를 들면은 목공 재료를 다루 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 목공 안에 선생님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서 브 선생님은 테크니션 보다는 관리자죠.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돼'라기 보다 는 기계 관리자로 기계 손질하고 잘 돌아가게 체크하는 그냥 그 공간 지킴이죠."(회 화, 기획, 시각예술인 C)

- 해외 교육 기관에서 안전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시각예술인은 한국의 안전 교육의 질적 고양의 필요성을 지적함
  - · 영국의 경우, "테크니션이 기계 작동법을 다 알려주고, 위험한 작업은 학생들이 못하게"하는 등 작업 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대학에서부터 인지하도록 하는데 반해, 한국의 대학에서는 관리자가 있어도 "시설관리"를 할 뿐, 별도의 안전을 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음을 지적함

- · 캐나다의 경우, 대학 안에 "티칭과 스튜디오 테크니션이 공식적으로 분업이 되어 있고, 안전 트레이닝 매뉴얼이 명문화되어"있는데 반해, 한국은 '테크니션'이 어시스트 혹은 겸업을 하고 있는 지위이며, 안전에 대한 시각예술분야 매뉴얼이 별도로 없는 실정임
- O 시각예술 분야의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은 '충분한 휴식'이었음
  - 예술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를 꼽은 응답이 65.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충분한 창작/설치및 철수 기간을 확보한다'(60.0%), '사고와 재해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53.4%) 등의 순이었음

(n=700, 단위:%)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5-15]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조건(복수응답)

- O 전시의 경우 설치기간 보다 철수 기간이 훨씬 짧은 경우가 많으며, 급하게 철수하면서 생기는 사고가 잦았음
  - 사고를 대비한 충분한 안전장비와 보조도구가 부족한 경우, 시각예술인들은 위험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촉박한 시간 내 철수를 마치기 위하여 사고 위험을 감수함

"미술관이는 전시장이는 사다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쓰려고 하면 쓰는 시간이 다 같은 거에요. 평소에 전시를 할 때는 사다리를 안 쓰겠죠, 설치나 철수할 때 모든 작가들이 사다리 그거 하나를 가지고 나눠 써야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런데 장비가 다좋지 않겠다. 그거 레버가 고장난 사다리가 반 이상이에요."(공공미술, 조각, 기획, 시각예술인 E)

- 아트페어의 경우, 전시장 임대료를 낮추기 위하여 철수 기간을 매우 촉박하게 산정하여 철수 관련 사고가 잦게 발생함 "많이 개선됐어요. 진짜 3~4년 전만 해도 야간 철거. 아트페어가 보통 일요일 5시에 클로즈가 되면 8시까지 3시간 정도가 갤러리 작품 철수 시간이에요. 작품을 3시간 동안 정말 다 빼고 나서 이제 9시부터 그다음 날 새벽 6시까지 한 12시간 이제 철거팀들이 철거를 하는데. 이틀 동안 세웠던 거를 12시간에 철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거 아는데. 주최 측에서 봤을 때 나쁜 마음으로 철거 가격 업체를 푸시했던 거는 전시장 임대료가 몇 천 씩 나가니까. 이제 주최측 입장에서 그거라도 아껴보겠다고 설치팀을 압박을 했어요." (전문가 자문회의 중, 아트페어 관련 전문가)

"인사동 같이 작은 갤러리도 보통 6시 안에 다 끝나니까. 늦으면 7시인데. 왜냐하면 (철수를) 더 늦게 못 하는 게 직원들이 퇴근해요. 자기들 퇴근해야 하니 언제까지 하라고. … 아트페어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9월 초에 키아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트페어는 철수 시간이 3시간밖에 없어요. 전시 끝날 때도 5시에 문을 열어줘요. 열어서 들어가는 순간 막 줄이 저 끝까지 서 있고 우르르르 이렇게 4시 반부터 줄 서 있어요 들어가려고 … 무조건 그때 끝내야 돼요."(디자인, 설치운송, 시각예술인 H)

- O 시각예술인의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조건의 2순위 응답은 연령별, 분야별, 유형별 상이하였음
  - 20대~40대 예술인은 '충분한 창작/설치 및 철수 기간을 확보한다'고 응답한 반면, 50대~70세 이상 예술인은 '사고와 재해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응답함
  - 예술 분야별 2순위 응답은 미술(일반미술)과 그 외 분야로 구분됨. 미술(일반미술)분야 예술인은 '충분한 창작/설치 및 철수 기간을 확보한다'고 응답한 반면, 그 외 예술 분야 예술인은 '사고와 재해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응답함
  - 창작 및 실연에 임하는 예술인은 '충분한 휴식'이 가장 중요한 안전의 조건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기술지원 및 기획에 임하는 예술인은 '사고와 재해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음

<표 5-17>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조건(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충한 정에 설계 및 살수 기간을 확한다	사고와 재해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사고를 대한 안전 장바와 보조 도구를 사용한다	치료: 새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창 경의 경 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충분한 인력을 확보한다		기타
	전체	(700)	65.4	60.0	53.4	51.6	49.8	46.2	46.0	37.8	0.9
	20대	(113)	75.7	57.0	49.1	51.9	51.9	43.3	49.2	44.2	0.0
	30FH	(247)	65.5	66.1	51.5	51.1	51.1	46.3	50.3	38.0	1.2
연령	40EH	(150)	59.8	65.5	51.6	58.2	43.8	46.8	50.2	32.1	0.0
∟'ö	50CH	(96)	67.1	54.2	60.1	53.5	59.2	49.0	42.8	42.3	2.0
	60 <sup>C</sup> H	(72)	59.5	47.2	61.1	41.8	45.5	47.8	26.5	37.4	1.2
	70세 이상	(22)	62.6	37.8	54.5	33.2	37.2	37.3	28.9	23.9	3.9
	미술(일반미술)	(439)	63.8	64.5	50.1	56.4	55.0	49.2	49.9	39.5	0.7
예술	미술(디자인,공예)	(117)	68.0	54.9	56.6	45.9	41.0	40.2	39.3	34.5	1.6
분야	미술(전통미술)	(77)	71.7	47.8	59.3	32.0	39.9	44.3	38.6	30.9	2.3
	사진	(67)	64.2	53.7	62.7	52.2	41.8	38.8	40.3	40.3	0.0
예술	창작	(677)	66.0	60.6	53.6	51.8	50.3	46.4	45.8	37.9	1.0
활동	실연	(6)	66.7	50.0	50.0	50.0	66.7	33,3	50.0	33,3	0.0
유형 	기술자원 및 기획	(17)	41.2	41.2	47.1	41.2	23.5	41.2	52.9	35.3	0.0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안전수칙에 대한 인식과 준수에 대한 자기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안전교육의 낮은 이수 경험율과 인터뷰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시각예술활동 에서 야기되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규정 준수 상황을 긍정적 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제3절 시각예술인의 산재보험 인식

- O 대다수의 시각예술인은 산재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함
  - 산재보험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예술인의 8.7%만이 '민간 상해보 험과의 차이'를 안다(잘 아는 편+매우)고 응답했으며, '산재보험 급여 종류'는 7.8%, '산재 발생 시 신청 절차'는 5.5%의 인지도를 보임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 중 29.8%가 예술인 산재보험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0.2%로 예술인 산재보험을 알지 못한 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전혀 모른다 ■잘 모르는 편이다 ■잘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안다 민간상해보험과의차이 37.0 54.3 7.5 1.3 산재보험 급여 종류 40.1 52.1 6.4 1.4 산재 발생시 신청절차 46.8 47.6 4.1 1.4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n=700, 단위:%)

[그림 5-16] 시각예술인의 산재보험 인지 정도

-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조사 결과 또한 예술인은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음. 민간 상해보험과의 차이, 산재보험 급여 종류, 산재 발생 시 신청절차를 "안다"는 응답 비율이 모두 3%를 넘지 못함(근로복지공단, 2022)

변경 모른다 ●장모르는 편이다 ●보통 이다 ●장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안다 평균 점수 된다 상해보험과의 차이 48.7 37.4 11.4 2.2 0.3 1.70점 산재보험 급여종류 47.8 37.3 12.1 2.5 0.3 1.76점 산재발생시신청절차 52.9 33.0 11.4 2.3 0.4 1.61점

출처: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근로복지공단, 2022) [그림 5-17] 산재보험 제도 이해도

- O 시각예술인의 약 80%는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예술인의 79.6%가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4%임

(n=700, 단위: %)
필요하지 않다
20.4

19.4

0.9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 [그림 5-18] 산재보험 필요 정도

- 30대일수록, 사진 분야 예술인일수록,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일 수록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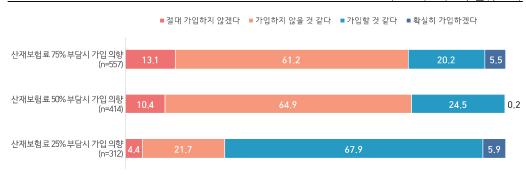
#### <표 5-18> 산재보험 필요 정도

(단위 : %)

				(ピエロ・ /0)
	ᄀᆸ	니게스	종	합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전체	(700)	20.4	79.6
	20 <sup>E</sup> H	(113)	21.8	78.2
	30EH	(247)	17.0	83.0
연령	40CH	(150)	20.7	79.3
28	50 <b>C</b> H	(96)	19.7	80.3
	60EH	(72)	26.0	74.0
	70세 이상	(22)	33.4	66.6
	미술(일반미술)	(439)	19.8	80.2
예술	미술(디자인,공예)	(117)	18.9	81.1
분야	미술(전통미술)	(77)	28.3	71.7
	사진	(67)	17.9	82.1
예술인 고용보험	기입	(111)	12.4	87.6
기입 여부	미/입	(589)	21.9	78.1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분야를 겸하는 한 예술인은 공연예술 단기 상해보험을 가입한 경험을 빗대어 시각예술에도 산재보험이 도입될 필요성을 제기함
- 시각예술인의 작업 형태가 장기적으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프로젝트 참여 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작가들 작업 형태가 다르고, 어떤 경우는 뭐랄까 장기적으로 이게 누적되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흔히 말하는 직업병 이런 걸 유발시키는 형태의 작업 스타일을 둔 분들도 계시고 … 또 프로젝트를 위해서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기간동안 이런저런 것들을 염 두에 두고 별도의 어떤 보험을 들어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기획, 비평, 시각예술 인 B)
-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또한, 산재보험이 필요하다는 예술인의 의견이 72.8%로 필요하지 않다(5.7%)는 의견보다 우세하였음. 또한, 30대~50대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로 높고, 20대와 60대이상에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60%로 낮았음(근로복지공단, 2022)
- 산재보험료 부담 비중별 가입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산재보험료 75% 부담 시에는 25.7%, 산재보험료 50% 부담 시에는 24.7%, 산재보험료 25% 부담 시에는 73.8%로 나타남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5-19] 산재보험료 부담 비중별 가입 의향

-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79.6%의 시각예술인(n=557)을 대상으로 '본인이 산재보험료 75%를 부담 시 산재보험 가입 의향'을 질문한 결과, 이 중 25.7%는 가입하겠다는 의견을 보임. 시각예술인 중 산재보험료 75%를 부담할 경우 가입 의향은 20.4%로 추정됨
  - 연령대별로 40대(18.1%), 30대(23.7%)가 가입 의향이 25.7%보다 낮았으며, 대 이하는 25.7%보다 낮은 가입 의향을 보였으며, 20대(26.5%), 50대 (27.7%), 60대(40.3%), 70세 이상(45.2%) 순으로 가입 의향이 점차 높게 나타났음
  - 예술 분야별로는 사진분야에서 가입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남(32.7%). 이어 미술(일반미술), 미술(전통미술) 분야 순서였음
  - 활동유형별 산재보험료 75%를 부담 시 산재보험 가입 의향은 기술지원 및 기획(76.9%)이 창작(24.4%), 실연(33.3%)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음

#### <표 5-19> 산재보험료 75% 부담시 가입 의향

(단위 : %)

	78	LL게 스	종	<u> </u>
	구분	사례수	가입하지 않겠다	가입하겠다
	전체	(557)	74.3	25.7
 성별	성이	(183)	70.0	30.0
02	여성	(374)	76.4	23.6
	20EH	(88)	73.5	26.5
	30FH	(205)	76.3	23.7
연령	40EH	(119)	81.9	18.1
긴당	50대	(77)	72.3	27.7
	60 <sup>E</sup> H	(53)	59.7	40.3
	70세 이상	(15)	54.8	45.2
	미술(일반미술)	(352)	74.2	25.8
예술	미술(디자인,공예)	(95)	77.8	22.2
분야	미술(전통미술)	(55)	76.1	23.9
	사진	(55)	67.3	32.7
 예술활동	창작	(538)	75.6	24.4
	실연	(6)	66.7	33,3
유형 	기술지원 및 기획	(13)	23.1	76.9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산재보험료 50%를 부담 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74.3%의 시각예술인(n=414)에게 '본인이 산재보험료 50%를 부담해야 한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24.7%가 가입하겠다는 의견을 보임. 시각예술인 중 산재보험료 50%를 부담할 경우 가입 의향은 35.0%로 추정됨
  - 산재보험료 50% 부담 시 가입 의향은 성별, 연령별로 차이가 크지 않았음
  - 예술분야별로 사진분야 예술인의 가입 의향이 가장 높았으며(29.7%), 미술(전통미술)분야 예술인의 가입 의향이 가장 낮게 나타남(14.5%)
  - 예술활동유형별 가입 의향은 기술지원 및 기획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66.7%), 사례수가 매우 적어 응답의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함

#### <표 5-20> 산재보험료 50% 부담시 기입 의향

(단위:%)

	구분	내네스	종	합
TE		사례수	가입하지 않겠다	가입하겠다
	전체	(414)	75.3	24.7
성별	남성	(128)	79.4	20.6
~~~~~~~~~~~~~~~~~~~~~~~~~~~~~~~~~~~~~	여성	(286)	73.5	26.5
	20대	(65)	75.9	24.1
	30FH	(157)	71.9	28.1
연령	40CH	(97)	78.9	21.1
110	50대	(56)	75.4	24.6
	60 <sup>E</sup> H	(32)	78.6	21.4
	70세 이상	(8)	78.7	21.3
	미술(일반미술)	(261)	74.3	25.7
예술분야	미술(디자인,공예)	(74)	75.3	24.7
에슬正아	미술(전통미술)	(42)	85.5	14.5
	사진	(37)	70.3	29.7
M스하도	창작	(407)	75.6	24.4
예술활동 유형	실연	(4)	75.0	25.0
πὄ	기술지원 및 기획	(3)	33,3	66.7

본 좌열개를 표로 구성

- 산재보험료 25%를 부담 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74.3%의 시각예술인(n= 312)에게 '본인이 산재보험료 25%를 부담해야 한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73.8%가 가입하겠다는 의견을 보임. 시각예술인 중 산재보험료 25%를 부담할 경우 가입 의향은 79.6%로 추정됨
  - 연령대별로 30대(81.7%)가 가입 의향이 가장 높았으며, 70세 이상 시각예술인의 가입 의향이 가장 낮았음(55.5%)
  - 예술분야별로 미술(디자인, 공예)분야의 가입 의향이 높았으며, 그 외 분야에서 도 모두 70%이상의 높은 가입 의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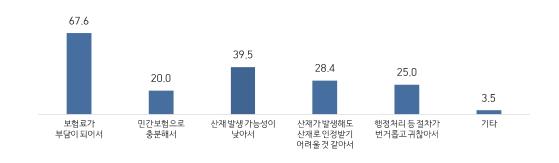
## <표 5-21> 산재보험료 25% 부담시 가입 의향

(단위 : %)

_	구분	나네스	종	<u> </u>
TE		사례수	가입하지 않겠다	가입하겠다
7	전체	(312)	26.2	73.8
사리터리	남성	(102)	32.4	67.6
성별	여성	(210)	23.1	76.9
	20 <sup>C</sup> H	(49)	25.5	74.5
	30FH	(113)	18.3	81.7
연령	40EH	(77)	39.1	60.9
Ľ0	50EH	다 (77) 39.1 다 (42) 20.5 다 (25) 27.7	79.5	
	60 <sup>C</sup> H	(25)	27.7	72.3
	70세 이상	(6)	44.5	55.5
	미술(일반미술)	(194)	30.0	70.0
예술분야	미술(디자인,공예)	(56)	19.0	81.0
에르스이	미술(전통미술)	(36)	21.8	78.2
	사진	(26)	19.2	80.8
 예술활동	창작	(308)	26.2	73.8
	실연	(3)	0.0	100.0
유형	기술지원 및 기획	(1)	100.0	0.0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O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할 의향은 79.6%로 추정되어, 보험료 부담 여부와 부담 수준에 따라 가입 의향은 20% 내외에서 80% 내 외까지 달라질 수 있음
- O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의향이 없는 주요 이유는 보험료 부담임
  - 예술인산재보험 가입 의향이 없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서'라는 응답이 67.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산재 발생 가능성이 낮아서'(39.5%),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28.4%) 등의 순이었음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5-20] 예술인산재보험 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 O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연령별, 예술분야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별로 상이하였음. 70세 이상 예술인을 제외한 전 연령층 은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서'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70세 이상 예술인은 '산재 발생 가능성이 낮아서'라고 응답함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의 경우,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 보다 '행정처리 등절차가 번거롭고 귀찮아서'의 응답의 격차가 가장 높았음

#### <표 5-22> 예술인산재보험 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 %)

								(단위 : %)
구분		사례수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서	산재 발생 가능성이 낮아서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행정처리 등 절차가 번거롭고 귀찮아서	민간보험 으로 충분해서	기타
	전체	(253)	67.6	39.5	28.4	25.0	20.0	3.5
	20대	(38)	61,3	41.1	20.3	20.4	28.2	2.6
	30FH	(81)	71.0	40.9	31.4	25.3	21.6	3.6
연령	40EH	(68)	67.0	35.9	37.2	30.1	17.3	5.8
긴당	50대	(32)	73.5	41.4	26.3	23.6	14.5	0.0
	60FH	(22)	73.3	34.8	13.5	18.3	17.6	0.0
	70세 이상	(11)	41.2	50.3	15.6	24.2	16.8	7.8
	미술(일반미술)	(162)	63.4	41.5	28.7	23.8	19.5	4.9
예술	미술(디자인,공예)	(45)	76.6	38.3	25.5	29.8	29.8	0.0
분야	미술(전통미술)	(26)	76.7	33.3	26.7	16.7	13.3	3.3
	사진	(20)	70.0	35.0	35.0	35.0	10.0	0.0
	가입	(28)	62.0	48.5	34.2	44.6	24.3	0.0
기입여부	마입	(224)	68.4	38.4	27.7	22.5	19.4	3.9

본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

- O 시각예술인은 일반 산재보험의 수급의 어려움을 고려하며, 예술인 산재보험 또한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을 우려함
  - 시각예술작가, 문학작가, 방송작가 등 창작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았으나 산재 신청 시 불승인 우려로 인해 예술인 산재보험이 도입되다라도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함(근로복지공단, 2022)
  - 따라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시각예술인 중에서도 예술 활동 중 경험한 사고 및 질병이 산재 인정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 지 않을 것을 우려함

"계속 지금 토론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게 예술인만의 특정한 상황인가라고 왜냐하면 산재보험에서 돈을 받아낼 때는 기업들이 중간에 껴 있으니까 그 하청 노동자들은 그거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조각, 공예, 시각예술인 I)

"처음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홍보 할 때는 '예술인들이 보다 쉽게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 … 제가 이제 다른 일 할 때는 근로복지공단하고 관련된 일도 좀 해가지고 좀 상황을 좀 알긴 아는데, 진짜 산 재는 인정받기 쉽지 않거든요."(공공미술, 설치, 기획, 시각예술인 D)

"판례가 많아야지 그걸 가지고서 계속 산재가 승인이 되는 데. 사실은 예술가들이 판례가 많이 쌓일 정도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기존의 판례를 노무사들이 살펴보시고 산재가 될지 안 될지를 사실 가늠하시는데. 예술인 같은 경우는 그 판례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설치. 디자인. 기획. 시각예술인 K)

- O 시각예술인의 작업 기간이 길수록, 작업 방식이 비정형적일수록 작업을 업무로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창작, 기획 유형에서 업무기인성에 대한 증명이 어려웠으며, 작업 공간,시간, 계획이 유연하므로 정규 근로자에 준하는 증빙 서류를 만들기 어려운 조 건이었음

"내 생활 전반의 기간이 1년이면 그 프로젝트가 … 조각은 또 길면 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갑자기 하루 아침에 뚝닥뚝닥 일주일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한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 사실 작업실에서 내가 작업하는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맹점인 거에요."(조각, 공예, 시각예술인 I)

"내가 예술가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작업하는 게 사실 그냥 일상 속에서 있는 일이니까. 일과 작업이 나뉘지 않으니까. 이런 것까지 다 만약에 보장을 받고 다하는 게 사실 일반인들이 보면 '예술가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일상적인 그런 것까지 다'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회화, 기획, 시각예술인 C)

"결국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는 건 '근로'에 대한 거였거든요. 몇 시간 동안 그리고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 연금 같은 게 나오는 것도 노동력으로 보는 거예요. 건강보험에서 장애 연금 나오는 거는 내 몸에 신체적 장애 일상 장애가 남는 걸 보는데 근로복지공단 기준은 노동률 상실로 보거든요. 그게 되게 다른 케이스라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예술가들한테도 노동적인 거에 되게 많이 집중해서 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근로시간이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설치, 디자인, 기획, 시각예술인 K)

- O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과 수급을 경험한 예술인이 많아질수록 인지도가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됨
  - 예술인 산재보험 당연가입 및 예술인 산재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더 많
     은 예술인이 제도를 경험할수록 자연스럽게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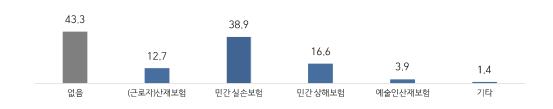
이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경험에 대한 인터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 었음

"예술인 산재보험 이게 예술인 고용보험처럼 의무 계약이 되면 산재 보험을 통한 수 해가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복지 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지금 무조건 의무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 수혜를 딱 받게 되면 '예전에 보험 들길 잘했네.' 혹은 이'런 수혜를 받았네.'라고 하겠죠. 그런데 산재보험은 가입하는 말든 선택이잖아요."(회화, 기획, 시각예술인 C)

- O 시각예술분야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산재보험을 요 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도 존재함
  - 산재보험을 요구하는 일이 "잘잘못을 따지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어 미술계 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꺼려지는 행위로 여겨지기도 하였음

"산재, 귀찮아서 안 할걸요. 아니 그리고 이게 산재의 범위에 속하는지 안에 속하는지 를 따지기도 뭐하고 이게 보통 보면은 갤러리나 미술관이나 작가나 관계된 사람들의 관계가 한 번 두 번 이제 뭔가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 관계가 되게 뭐랄까 사적 관계가 되게 커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 구조 자체가 계속 만났던 사람이 계속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미술계 자체가 되게 좁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다 연결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어떤 부분에서 잘잘못을 따지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거예요."(사진, 테크니션, 시각예술인 M)

- O 시각예술인의 상당수는 산업재해에 대비한 보험이 없음
  - 산업재해 대비 가입한 보험 종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예술인이 가입한 보험이 없었음(43.3%). 이어서 '민간 실손보험'(38.9%), '민간 상해보험'(16.6%) 등의 순이었음



본 좌년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5-21] 산업재해 대비 가입한 보험 종류(복수응답)

O 근로자(산재보험) 및 예술인 산재보험이 없는 시각예술인 중 절반 이상은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57.2%)

(n=590, 단위 : %)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 [그림 5-22] 예술인산재보험 가입 의향

-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여성, 60대, 미술(전통 미술)분야, 실연 유형,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임

<표 5-23> 예술인 산재보험 기입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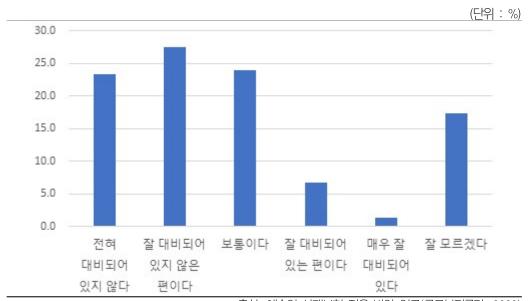
(단위 : %)

				(긴게 : 70)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590)	57.2	42.8
	남성	(181)	53.4	46.6
성별	여성	(409)	58.8	41.2
	20 <sup>C</sup> H	(94)	59.3	40.7
	30EH	(205)	60,3	39.7
연령	40EH	(127)	46.5	53.5
28	50CH	(86)	62.3	37.7
	60EH	(60)	63.7	36.3
	70세 이상	(18)	39.6	60.4
	미술(일반미술)	(365)	55.7	44.3
예술분야	미술(디자인,공예)	(103)	56.1	43.9
에스군아	미술(전통미술)	(71)	63,2	36.8
	사진	(52)	61.5	38.5
에수화도	창작	(575)	56.4	43.6
예술활동 유형	실연	(4)	100.0	0.0
	기술지원 및 기획	(11)	81.8	18.2
예술인 고용보험	기입	(78)	63.7	36.3
개입 여부	미기입	(512)	56.2	43.8

본 좌열과를 표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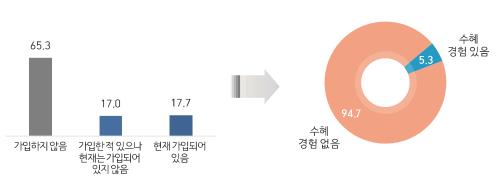
## O

O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결과, 업무상 재해나 질병의 위험에 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 50.7%인 반면, 대비되어 있다는 응답은 8%에 불과함. 시각예술분야를 포함한 전체 예술분야에서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한대비책이 부족한 실정임



출처: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 연구(근로복지공단, 2022) [그림 5-23] 예술활동 재해나 질병 위험에 대한 대비 정도

- 산재보험 가입 경험률은 34.7%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5.3%나 되어, 대다수 예술인이 산재보험의 시각지대에 놓여 있음. 또한, 개인 상해보험 가입률은 59.7%였으며, 전체 예술인 중 개인 상해보험 수혜 경험 비율은 27.8%임. 단체 상해보험의 경우 수혜 경험(11%)이 낮고 이를 통한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인식 비율 또한 매우 낮아(1.7)%, 단체 상해보험이 예술인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경감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근로복지공단, 2022)
  -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예술인의 산재보험 기입률은 17.7%였고, "가입한 적 있으나 현재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17%로, 전체 산재보험 가입 경험률은 34.7%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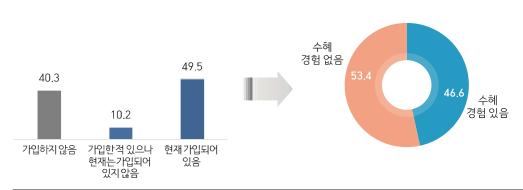


(단위:%)

출처: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 연구(근로복지공단, 2022) [그림 5-24] 산재보험 기입 경험 및 수혜 경험

- 개인 상해보험의 경우, 현재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49.5%였고, "가입한 적 있으나 현재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10.2%로 개인 상해 보험 가입 경험률은 59.7%였음. 전체 예술인 중 개인 상해보험 수혜 경험 비율은 27.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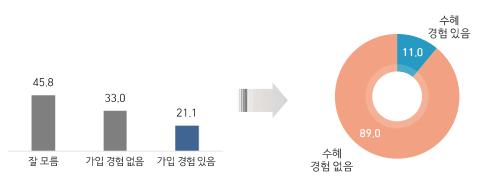
(단위:%)



출처: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 연구(근로복지공단, 2022) [그림 5-25] 개인 상해보험 가입 경험 및 수혜 경험

- 단체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 경험 비율은 21.1%로 나타남. 전체 예술인 중 단체 상해보험 수혜 경험 비율은 2.3%로 추정됨. 단체 상해보험을 통해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대비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17.7%에 불과하였음

(단위 : %)



출처: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 연구(근로복지공단, 2022) [그림 5-26] 단체 상해보험 가입 경험 및 수혜 경험

- O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주된 이유는 '필요에 의해' 가입하였으며 (39.5%), 이어 '공공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가입'함(32.1%)
  - 코로나 팬더믹 당시 추경으로 진행한 <공공미술프로젝트\_우리동네미술> 사업에 참여한 시각예술인은 "의무적으로"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었음

"예전에 산재보험을 약간 알아보려고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술인 파견 사업할 때 보면,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드는 거를 이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참여예술가들한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산재보험 들라고 섹션이 이렇게, 텐트 처놓고 거기 있어요."(조각, 공예, 시각예술인 I)

- 사업 종료 후에도 예술인 산재보험을 유지하는 경우는 "필요성이 있어서 연장" 했다는 의견과, 해지한 경우는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n=2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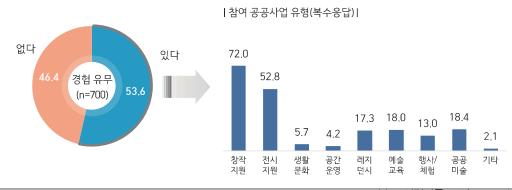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5-27] 예술인산재보험 기입 경로

- '공공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예술인 산재보험 가입한 예술인 비율이 높은 이 유는 시각예술분야에 공공사업이 비중 있는 창작지원 유형이기 때문
  - 공공 예산 및 기금으로 운영하는 시각예술분야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3.6%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6.4%였음
  - 참여 경험이 있는 예술인의 72.0%가 참여한 공공사업의 유형으로 '창작지원'을 선택했으며, 이어서 '전시지원'(52.8%), '공공미술'(18.4%) 순이었음

(n=375. 단위: %)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5-28] 공공 예산 및 기금으로 운영하는 시각예술분야 사업 참여 경험

- 미술 및 사진분야의 가장 주된 문화예술활동계약의 계약당사자는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으로, 미술 및 사진분야 예술인이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는 비율이(미술: 33.4%, 사진: 35.6%) 전체 예술인 비율(19.0%)보다 월 등히 높음

<표 5-24> 가장 주된 문화예술활동계약의 계약당사자

(단위 : %)

ā	냔	사례 수	기획 사/ 제작 사	문화 예술 관련 공공 기관	예술 단체	방송 사	예술 인	문화 시설	출판 사	국가· 지자 체	취 0년 사국	플 랫 폼	기타
건	선체	(1800)	26.2	19.0	17.3	9.0	8.1	5.9	5.1	4.4	1.6	1.5	2.0
- 예 술	미술	(207)	5.3	33.4	7.3	0.5	12.6	22,6	3,8	8.3	2.9	0.5	2.9
분 야	사진	(89)	9.0	35.6	2.3	1.1	9.0	19.2	7.9	10.2	2.3	0.0	3.4

출처: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근로복지공단, 2022), 시각예술분야를 중심으로 표 재구성

- O 시각예술인의 상당수는 예술인 산재보험을 알지 못함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 중 산재보험을 알지 못하는 예술인은 70.2% 이며, 아는 예술인은 29.8%임
  - 개인 작업이 우세한 시각예술분야의 특성상 정보의 교환이 개인 간에 "알음알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경향이 있었음

(n=590, 단위:%)



본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5-29] 예술인산재보험 내용 인지 여부

- 고령층(50대~70세 이상) 예술인일수록, 미술(전통미술) 및 사진 분야 예술인 일수록 예술인 산재보험의 내용을 인지함

<표 5-25> 예술인 산재보험 내용 인지 여부

(단위 : %)

걘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590)	29.8	70.2
	20 <sup>C</sup> H	(94)	27.0	73.0
	30EH	(205)	23.3	76.7
연령	40EH	(127)	29.1	70.9
20	50CH	(86)	36.7	63,3
	60EH	(60)	43.0	57.0
	70세 이상	(18)	45.1	54.9
예술분야	미술(일반미술)	(365)	27.8	72.2
	미술(디자인,공예)	(103)	27.1	72.9
	미술(전통미술)	(71)	35.8	64.2
	사진	(52)	40.4	59.6

본 좌월과를 표로 구성

## 제4절 시각예술인의 산재승인 및 보상현황

## 1. 분석 대상

- O 여기서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시작된 2012년 이후부터 2022.2.15.까지 산재보상을 신청하여 승인된 '시각예술분야 예술인인 재해 자'(이하 재해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음
  - 동 기간 동안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수 대비 미술 및 사진 분야 가입자 수는 약 17%에 불과. 미술 분야는 약 16%이나 사진 분야는 0.51%로 매우 적음. 가입자수가 적으므로 재해자수 역시 매우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 때문에 여기서 언급한 재해자 현황은 실제 업무상 사유로 다친 미술 및 사진분야 예술인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드러낼 뿐이므로 일반화해서는 안됨
  - 자료의 해석 역시 현재 예술인의 가입방식이 임의가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낮지 않고 산재보험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아는 사람일 것. 아니면 공공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일시적으로 가입된 경우도 있음
- O 재해자의 활동영역을 보면, 일반미술 18명, 디자인·공예 10명, 전통미술 4명, 사진 1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반미술에는 회화, 조각 등이 포함되어 있고, 디자인·공예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도예, 공예가 포함되어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디자인은 없고, 도예, 공예만 있음. 전통미술에는 서예뿐만 아니라 공예 중에서 전통공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미술에 포함함
  - 다만 사진 분야 재해자수가 1명에 불과하여 여기서는 일반미술에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 재해자의 성별의 경우 남성이 72.73%, 여성이 27.27%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인 재해자의 성별 비율과 비교하면, 시각예술분야는 그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남성의 비율은 일반미술(78.95%), 전통미술(75%), 디자인공예(60%)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디자인공예에서 여성의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음
- O 재해자의 평균 연령은 47.9세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전통미술에서의 평균 연령이 높은 탓으로 보임
  - 전통미술의 평균 연령은 76.5세로 매우 높았으나, 일반미술은 43.8세, 디자인공 예는 44.2세로 나타나, 영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연령별 분포를 보면, 일반미술은 40대 미만 비율이 63.16%, 디자인공예는 50%로 나타나, 일반미술과 디자인·공예에서 다수의 재해자는 40대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음
- O 재해자의 거의 대부분은 창작자에 속함
  - 시각예술분야는 분야의 특성상 창작자가 거의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술인활동증명 예술인 현황을 보면, 미술 분야에서 창작자의 비율은 약 93%, 사진 분야는 약 95%로 나타나고 있어(오종은외, 2022) 실제로도 이들 분야에 서는 거의 대부분이 창작자로 활동하는 예술인임을 알 수 있음

<표 5-26> 시각예술분야 재해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일반미술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계	빈도	33	19	10	4
711	(비율)	(100.00)	(57.58)	(30.30)	(12.12)
人付は	남성	72.73	78.95	60.00	75.00
성별	여성	27,27	21.05	40.00	25.00
	평균(세)	47.9	43.8	44.2	76.5
연령	40세 미만	51,52	63,16	50.00	-
<u>7</u> 70	40-59세	24.24	21.05	40.00	_
	60세 이상	24.24	15.79	10.00	100.00
	창작	96.97	100.00	90.00	100,00
세부업무	기술지원	3.03	_	10.00	_

\*주 1) 활동영역의 경우 재해경위를 기준으로 분류하되, 재해경위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행정자료상의 분류를 따름

## 2. 재해 특성 및 보상 현황

- 1) 분석대상의 재해 특성
  - O 시각예술분야 재해자의 경우 사고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임(96.97%)
    - 일반미술을 제외하면 질병 건수가 없음. 질병은 주로 조각, 도예에서 활동하는 예술 인에 의해 신청되었음
    - 승인된 질병은 단기간에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반복 사용하여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임
  - 재해 당시의 업무수행형태를 보면, 재해건수의 72.73%가 작업중에 발생하고 있음
    - 시각예술분야의 경우 조각, 도예, 공예 등 작업여건 및 작업형태 상 작업중에 다칠 가능성이 높음. 때문에 작업중에 다치는 비율이 72.73%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재해경위만을 기준으로 수동으로 분류하여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경위 상으로 작업중 다친 장소를 보면, 작업중에 다치는 경우의 70%는 본인의 작업장(화실, 작업실, 서실 등)에서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는 전시장 등 외부에서 작업하다가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본인의 작업장에는 자택 내에 화실이 있는 등 일부 자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준비중이나 정리중에 다치는 경우도 18.18%로 나타났음. 일반적으로 시각예술작품의 경우 작업실에서 작업한 후 전시장으로 이동시키거나, 전시장에 전시작업을 하거나, 전시한 후 정리하거나, 전시장에서 전시한 이후에 다시 작품 보관장소로 이동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임. 이동중인 재해는 주로 작업을 위한 재료를 구매하러 이동중에 다치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음
  - 재해자가 신고한 재해시간을 보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근로자의 통상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전후 2시간 더한 시간) 동안 재해가 발생한 비율은 90.63%로 나타남
    - 재해발생시간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할 경우에도 약 69%로 나타남. 이러한 사실로부터 시각예술분야의 상당수 근무시간대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대와 유사하고 재해는 일반적인 근무시간대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다만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이러한지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재해 이후 1개월 이내 요양신청하는 비율이 72.73%이며, 1개월이 지나서 신청

## 하는 비율은 27.27%로 나타남

- 1개월 이내 신청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적어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재해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은 편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표 5-27> 시각예술분야 재해자의 재해 특성

(단위: 명, %)

	구분		일반미술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계	빈도	33	19	10	4
711	(비율)	(100.00)	(57.58)	(30.30)	(12.12)
재해형태	사고	96.97	94.74	100.00	100.00
시에영네	질병	3.03	5.26	_	_
	작업중(휴게중 포함)	72.73	73.68	80.00	50.00
시래해자	준비중/정리중	18.18	15.79	20.00	25.00
업무형태	이동중	6.06	5.26	-	25.00
	질병	3.03	5.26	_	-
	일반적인 근무시간	00.63	00.00	00.00	100.00
<b>5기사해자</b>	(07:00-20:00)	90.63	88.89	90.00	100.00
	그 외 근무시간	9.38	11,11	10.00	-
	한달 이내 신청	72.73	68.42	70.00	100.00
신청기간	한달 초과 신청	27.27	31,58	30.00	

<sup>\*</sup>주 1) 활동영역의 경우 재해경위를 기준으로 분류하되, 재해경위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행정자료상의 분류를 따름

## 2) 분석대상의 요양 및 보상 특성

- O 일반적으로 재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해자의 장해등급이나 요양기간, 입원여부를 분석함. 특히 입원여부의 경우 재해자의 초기 중증도를 파악하는 방법이 되기도 함
- 재해자 4명 중 3명(75%)은 3개월 이내 치료하고 종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5.63%는 3-6개월 이내, 그리고 9.38%는 요양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재해자의 거의 대부분이 다친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의미. 재해자 중에서 디자인 공예는 3개월 이내 종결하는 경우가 90%로, 이들은 다치더라도 오랜 치료를 필요로 하 지 않을 정도로 다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O 초기 중증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원 비율의 경우 37.5%로 나타나고 있음
  - 재해초기 입원을 요할 정도로 많이 다치지 않음. 다만 전통미술의 경우에는 입원 비율이 75%로 높게 나타남. 건수가 너무 작아 일반화하기 힘드나, 이 재해들의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높은 것이 입원 여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됨

- O 시각예술분야 재해자 중에서 잔존하는 장해가 남는 경우는 없었음
  - 앞서 요양기간, 입원여부와 더불어 잔존하는 장해가 없는 것들은 모두 재해의 심각성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재해자 중에서 분석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화하여 시각예술분이의 재해는 심각성이 낮다고 말할 수는 없음
- O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상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요양급여를 수급하고(96.88%), 휴업급여도 상당수가 수급하고 있음(90.63%)
  - 시각예술분야 재해자의 거의 대부분이 휴업급여를 수급함(90.63%). 이들은 재해가 곧 노동능력상실, 소득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전통미술은 모두 휴업급 여를 수급하였으나 일반미술, 디자인공예도 거의 대부분 휴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한 장해를 대비한다는 산재보험으로서의 의미도 중요하겠으나 다친 동안 소득을 보완하는 의미가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음

#### <표 5-28> 대중문화예술인 요양승인자의 보상 특성

(단위: 명. %)

					<u>(단취·명,%)</u>
- T	분	전체	일반미술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M	빈도	33	19	10	4
계	(비율)	(100.00)	(57.58)	(30.30)	(12.12)
	3개월 이내	75.00	72.22	90.00	50.00
요양기간	3-6개월 이내	15.63	16.67	-	50.00
	6개월 초과	9.38	11,11	10.00	_
입원여부	입원	37.50	38.89	20.00	75.00
급전어구	입원인함	62.50	61.11	80.00	25.00
장해등급	해당함	_	-	-	_
부야야부	해당되지 않음	100.00	100.00	100.00	100.00
요양급여	수급	96.88	100.00	90.00	100.00
	수급하지 않음	3.13	_	10,00	_
휴업급여	수급	90.63	88.89	90.00	100.00
	수급하지 않음	9.38	11,11	10,00	_
	수급	_	_	_	-
장해급여	수급하지 않음	100.00	100.00	100.00	100.00

<sup>\*</sup>주 1) 활동영역의 경우 재해경위를 기준으로 분류하되, 재해경위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행정자료상의 분류를 따름

2) 요양종결한 재해자만 분석에 포함. 이때 요양종결은 2022.2.15.로부터 이전 한 달 이내 승인된 지료계획이 없는 경우로 판단

# VI

# 시각예술 분야 산재 대응 정책 방향

1절 시각예술 분야 산재 대응 기본 방향

2절 산재보험 기입 확대

3절 시각예술 분야 안전 관리 시스템

## 제1절 시각예술 분야 산재 대응 기본 방향

## 1. 시각예술 분야 산재 보호 필요성

- 1) 높은 수준의 사고와 질병 위험
  - O 작업 중 사고와 직업 질병이 비교적 높은 비율로 발생하나 직업 속성으로 당연시하는 경우가 많음
    - 예술인 분야별 비교에서 시각예술은 사고와 질병의 발생 빈도 차원에서 모두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음
  - O 특히, 시각예술 작업의 누적 결과에 따른 질병 증세가 빈번히 나타남
    - 반복 작접에 따라서 관절염과 같은 특정 부위 근골격계 질환이 만연해 있고,
       작업 환경이 쾌적하지 않고 화학 요소 사용이 많은 현장작업으로 호흡기관 질병이나 여성 질병 발생이 많지만, 작업기인성에 대한 증빙이 어려운 상황임
- 2) 안전 교육 미흡과 안전 불감증 만연
  - O 시각예술 분야의 보호 대상은 작품 대상에 집중되어 있고 예술인은 보호 대 상에 포함되지 않음
    - 시각예술 분야는 생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사후에 천재 예술가로 추앙되는 과정에서 생전 어려움이 극적 요소로 활용되는 '반 고흐 효과'에서 나타나듯이 예술인의 어려움을 당연하게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음
    - 그 결과, 사고 발생 시 작품 파손은 보험 가입으로 보상이 되지만, 작가는 보호 가 안 되어 있어 사비 치료를 받는 상황에 대해 자조적으로 당연시하는 분위기 가 많음
  - 실제 산재 발생으로 인해 4일 이상 일을 쉰 기간의 비율도 57.8%나 되

어 산재로 인한 작업 발생 피해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본인의 안전 수칙에 대한 인식이나 준수 여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지만, 안전 교육 이수 경험 비율이 매우 낮고, 위험에 대한 불 감증 속에서 작업하는 작가들이 많은 것으로 인터뷰 결과에 나타남.
  - 대학 등에서 작업실의 위험 수업을 제대로 받은 경우가 드물고 보호 장비가 필요해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로 인식하지 못함

## 3) 예술인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재해 관리 방안 필요

- O 전시 설치 및 철거 작업 위험
  - 전시관 임대료가 높아서 촉박한 일정 속에 작품 설치와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고 위험 높음
  - 설치 업체가 작업하는 경우 외에도 갤러리 인력이나 작가가 직접 설치와 철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예술인의 재해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 존재
- O 시각 예술인 작업의 성격상 작업장의 문제는 다양한 인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시각 예술인의 작업에 시각예술인 외에 어시스턴트나 조수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 물질 등으로 인해 작업장에서 관리 필요가 크고, 이 러한 작업장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영국의 예술 스튜디오 작업장 관리 실태 참고 필요

## 2.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 산재 보호 방향

- O 시각예술인의 작업 특성 및 인식 수준에 부합하는 산재 대응 체계 구축 필요
  - 그동안 예술계에서 산재가 논의되었던 영역인 공연, 영화, 방송 분야와는 다르면서도 사고 및 질병 위험 수준이 높은 시각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
  - 특히, 작업 과정의 분업구조가 공연, 영화, 방송 분야와 달리, 개인 작업의 비중

이 큰 상황을 고려하고 산재의 위험도에 대한 다양한 인식 수준을 반영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한 상황

- O 시각예술인 산재 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 필요
  -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시각예술인의 사고 및 질병 경험에 비해 시각예술인의 산재 현황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매우 저조한 상황임
  - 실제 시각예술인의 특성에 맞는 보장 체계 설계를 위해서는 응답자의 기억 및 진술에 의존하는 서베이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고비용이 수반되는 보험 설계가 불가피한 상황임
  - 시각예술인의 산재 및 보상 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가능한 적은 보 험료 부담을 통해 보장성이 좋은 보험 상품 설계가 필요함
- O 점진적 보장 강화 및 보장 대상 확대 방안 추진
  - 시각예술인의 산재 보호는 우리나라 사회보험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의 확장 과정 속에서 다루어져야 함
  - 우리나라 산재보험 확대의 역사를 보면 초기 사업관리가 용이한 작업장에서부터 보장을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어 왔음
  - 예술인산재보험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의 형태로 도입된 것도 2000년에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임의가입이 도입되어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시 작된 결과로 가능해진 것임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2023년 산재보험이 노무제공자에게 당연 적용된 사례는 노무제공의 성격을 갖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로 볼 수 있음
- O 당연가입 산재보험을 궁극적인 이상 목표로 추진하되 현실적으로는 상해보 험 가입 확산과 보장 확대를 병행 추진함
  - 사업주 / 근로자의 관계 특정화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업주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예술계 현실 반영 필요
  - 사업장 단위 적용을 기본으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경우 우선 대상으로 단계적 확산 필요
  - 영세한 예술단체가 다수임을 고려하여 공공문화예술기관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는 사업장을 사업 가입 단위로 우선 추진
  - 대형 예술단체, 기업 등을 사용자로 추가한 후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사업자 확대 방안 추가 고민

# 제2절 산재보험 가입 확대

# 1. 산재보험 확대 과정의 의의

- 1) 사업주 책임 사회보험화를 넘어서 완전한 사회보험화로
  - O 1964년 우리나라 산재보험 도입시 시기상조라는 반대에 대해서 사업주 책임 보험화 성격을 강조하여 산재보험 도입 가능해짐
    - 1953년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근로자의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책임 도입
    - 사업주의 폐업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산업재해 보험 도입
  - O 현재 사업주 책임 보험화를 넘어서 1964년 우리나라 산재보험 도입시 시기 상조라는 반대에 대해서 사업주 책임 보험화 성격을 강조하여 산재보험 도 입 가능해짐
  - O 사업주 책임 보험화 성격에서 보면, 예술인 산재보험의 정당성 확보 어려움
    - 현재 예술계에서는 사업주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상해보험 처리시 사업주 책임에 대한 부담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사용자 동의 확보 전망 어려움
    - 2022년 근로복지공단의 연구에서 사업주 책임 보험화를 환영하는 경우도 인터 뷰 도중 있었으나 소수로 보임
  - O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장은 완전한 사회보험화로 가는 단계
    - 현재의 추세는 사업주 책임 보험화의 성격을 넘어서 완전한 사회보험화를 지향하는 담론이 다수 제기되는 상황
    -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제대로 치료 도 받고 보상을 받는 사회적 보호 제공 필요성 인식 확산
    - 완전한 사회보험화 입장에서 보면 상기 예술계 재해 상황을 고려할 때 예술인

산재보험 확대 정당성 확보 가능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볼 때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은 시자점이 큰 변화임

## 2)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의 의의

- O 2023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로 재정의하여 18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이 시행됨
  -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 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 요건에 해당하는 18개 직종 종사자는 전속성 폐지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시 점부터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됨

<표 6-1> 노무제공자의 적용범위

구분	직종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H스사기니	나.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등에 따른 우체국 보험 또는 공
보험설계사	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 『우체국 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
	업으로 하는 사람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
방문강사	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
골프장 캐디	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
	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택배기사	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
	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 $\cdot$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
	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시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시업주로
리사니스기사F	
	' ' ' ' ' ' ' ' ' ' ' ' ' ' ' '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단서에
대출모집인	따른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
	차를 운전하는 사람
	가. 대리운전업자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
	   지까지 운전하는 시업의 시업주를 말한다.)
대리운전기사	나. 탁송업자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 목적자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방문판매원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u> </u>	기.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
	나. 방문강사 또는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
· — · · —	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시운
배송설치기사	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화물자동차 운수시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및 건설현장 화물치주에 해당하는
화물차주	사람은 제외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
	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해 높은
_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건설현장	『화물자동차 운수시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화물차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람
시글시 <u>구</u> 	가.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에 따른 살수차 또는 고소작업차

	나.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에 따른 직진식 또는 굴절식 카고크레인
소트프웨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기술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
	정을 담당하는 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
	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고단투여 어ഥ!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
관광통역 안내사	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어린이통학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u>버스기사</u>	고도파증ㅂ. 시K고자K3호에 띠는 이번이용역마드를 군산이는 사람

출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이러한 제도 개선에 따라 산재보험 당연가입이 적용되는 직종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이 전속성을 전제하지 않고 당연 적용된 사례는 동시에 복수계약이 빈번한 예술 분야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의 가능성을 높여주 는 계기로 이해될 수 있음.
  -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노력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예술인 산재보험 확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
  - 하지만, 시각예술분야에서는 직종 특정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어려움이 있으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개념의 혼란이 우려됨.
  - 현재 추급권 논의와 같이 작품에 대한 시각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추세에서 시각예술인의 작품 제작 활동을 노무제공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할지 불확실함
  -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은 예술인의 보험료 자부담을 피할 수 없음. 또한 사업자 전액 부담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3)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사례의 시사점

- O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도입 (2007년)
  - 2007년 연구실 안전사고가 빈발해짐에 따라 실험, 시험 중 사고에 대비한 예방 안전과 사고보상 등을 규정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 법)' 제정
  - 대상: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연구원,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공 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보상 받는 교수 제외)
  - 해당 연구기관은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함. 정부의 보험료 지원은 없으며 보험 미가입시 연구주체의 장에게 과태료 1500만원 부과함
  - 보험료 기준으로 연간 18억 원 가량 시장이 형성됨
  - 2017년 연구실 안전법 개정으로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의 보상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보장 확대
    - · 사망보험금이 1억에서 2억 원으로, 의료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 입원일 당 1일 5만 원, 장의비 1,000만 원 신설(연간 보험료 30억 원 에서 증가 추정)
- O 학생 연구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2022년 적용 개시)
  - 대학의 연구실 사고가 연간 100~200건 정도 발생,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중대 사고 지속 발생
  - 「연구실안전법」상 연구실 안전 공제보험만으로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감당하기 부족하고, 보험 보상이 부족하여 대학 측의 시혜적 지원에 의존하였던 한계가 있었음
  -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명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2021년)

#### O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내용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연구 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를 대상으로 함
- 대학 등의 기존 산재보험관계와 분리하여 학생연구자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 도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함
- 학생 연구자 명단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신고하며, 매 학기가 시작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함(연 2회, 1학기 4월 15일까지, 2학기 10월 15일까지)
- 매 학기 신고된 학생 연구자 명단이 변경될 경우(학생 연구자 추가 해당 또는 비해당),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학생연구자 해당·비해당일 등을 신고함

-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출퇴근재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산재보상 인정하며, 일반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

<표 6-2>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구분	내용			
	· 1인당 월 보험료 = 기준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기준보수액)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			
	박사·석박사통합과정 125만 원, 석사·전문기술석사·학석사통합과정 1			
산재보험료 산정	백만 원, 학사·전문학사과정 30만 원			
	· (산재보험료율) 학생연구자가 소속한 대학·연구기관 등의 요율 적용			
	대학 및 연구기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전문·보건·교육·여기관련			
	서비스압'으로서 7/1000(출퇴근재해요율 포함, '22년 기준)을 적용			
산재보험료 부담 및	·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전액 부담			
납부	· 대학·연구기관 등은 학생연구자의 월 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			
	·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더라도 고용부고시			
보험급여 지급 기준	평등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직업재활급여 중 직장복귀지원금 등은 부지급			
	•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자급			

출처: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안내(근로복지공단, 2022)

#### O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의 시사점

- 학생연구자의 사고 위험에 대해 민간 상해보험을 적용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해 왔으나 상당한 규모 피해 보상에 한계를 보이는 사례 발생을 계기로 산재보험을 적용하게 되었음
-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 사례는 예술 분야에도 상당한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민간 상해보험이 궁극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 는 사례임
- 학생연구자와 구별되는 예술 분야의 명백한 차이는 학생연구자의 경우 명단이 대학에 의해 정기적으로 신고되어 관리되는데 비해 예술분야에서는 정기적인 명단 관리가 이루어지는 분야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현재로는 학생연구자 산재 보험 모델을 적용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현황을 고려할 때 명단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체나 기구로부터 산 재보험 적용을 시작하여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2.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확대

- 1) 시각예술 분야 산재보험 확대 적용 가능성
  - 현재의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 형태 외의 방식으로 예술인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는 직종을 특정하여 당연 적용하는 방안과 특정 조건하에서 임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음
  - 원칙적으로는 아티스트피를 주고 작품을 의뢰한 경우에는, 보험 신고와 관리/ 납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산재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것이 도입가능 할 것이라 전망
  - 실제 산재보험 적용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 신고창구를 일원화해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을 동일 기관에서 진행하고, 갤러리/미술 관이 대행해서 신고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어느 정도는 강제할 수 있으나, 갤러리/ 미술관이 작가를 대신하여 신고 권한을 갖지 않는다면 제도 운용이 어려울 것임
    - 임의가입 의무화 방식으로 작가에게 적용시 갤러리 어려움 예상됨. 가입 주체이며 대상인 작가들이 협조하지 않고 연락이 안 되면 갤러리가 패널티를 받는 구조 예 상
    - 갤러리/화랑/단체 측에서는 애초에 지원기관에서 산재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선호하나, 지원기관에서는 원천징수 불가 입장. 기관은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계약은 화랑-예술가 간 계약이므로 대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 O 시각예술 분야의 관행과 예술인의 인식도 산재보험 확대 적용의 장애물임
    - 구두계약 관행으로 인한 산재보험 적용의 어려움. 영세한 곳은 거의 구두계약이고 제도나 시스템이 아직 성숙하지 않고 지방은 특히 더 그러하기 때문에 산재적용의 기준 확보가 어려움
    - 산재 위험을 작업에 따른 당연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작가들이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호응할지 불확실
  - 보호 필요성과 보호 대상 적용 사이의 불일치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아트페어의 경우 갤러리 화랑 인력이 전시 및 설치 위험을 부담하는데 작가만 보호한다고 하면 반발 예상
    - 갤러리 화랑 인력이 기획 분야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실제는 예술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예술인에만 집중된 보호 방식으로는 실제 보

호 필요성이 있는 인력이 보호에서 제외되는 상황 발생 가능

- O 예술인 실제 작업 활동 기간과 산재보험 계약기간 불일치 문제
  - 단속적으로 에술 활동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경우 실제 사업 미참여 기간 동안 산 재보험료 납부 상황 발생 (혹은 미납부 예술인 증가 상황 발생)
  -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의무화 사례 확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민원 확대 예상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보험가입자)
    - · 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 · ⑦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개정 2019. 1. 15.>
    -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 · 2.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 · 3. 제5조제7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 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 O 시각예술 분야 산재 보상 가능성에도 시각예술 분야 작업 특성에 따른 불확실 성 존재
  -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일상공간과 작업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작업 공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한 상황에서 사고의 업무 기인성 입증이 어렵고 도덕적 해이를 배제하기 어려움
  - 화랑/갤러리가 사고 입증에 관여할 수 있으나 화랑/갤러리와 작가 사이의 관계가 다양하여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움
  - 활동 분야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큼

# 2) 시각예술 분야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

O 시각예술 분야 현황과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징수 및 보상에서 제기되는 쟁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 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 O 현실적으로는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 가입의 의무적용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 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O 공공 사업 및 공공시설 이용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추진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지원 소관기관과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다양한 미술관련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음
  - 미술 관련 사업들 중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술인 산재보험 힘의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6-3〉미술 관련 사업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지원 소관기관)

기관명	사업명	세부사업 및 내용		
	2021년도 문예진흥	우수전시지원, 전시사전 연구지원, 비평지원		
	기금 창작산실	공간지원(비영리전시공간/ 사립미술관)		
		예술가 해외레지던스지원(시각예술-독일		
	문예진흥 기금	베타니엔스튜디오)		
	국제교류 지원사업	남북문화예술 교류지원		
	다이 미스카 포네 미	청년예술가 해외진출지원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신규조성지원, 지속운영지원, 전시활성화지원		
한국문화예술	아르코 청년 예술가 자원	전시 사전연구지원, 기획전시지원, 비평발간지원		
위원회	20년도 시각예술			
	창작산실 전시공간	민간전시공간 사립미술관 화랑(갤러리)		
	 긴급지원 (1/2차)			
	온라인 미디어	01E +1101T104 (A.4 Characta LID) LID4		
	예술활동 지원	이트 체인지업 (Art Change UP) 시업		
	   아르코 공공예술 시업	공공예술 시업지원(자율형/ 관리형/기획형) 공공예술		
		연구지원		
	현장 예술 인력지원 시업	한국예술 창작이카데미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3백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			
한국예술인복 지재단	(국민연금)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의 40~80% 환급		
		산재보험 가입 등 보험 사무 대행 및 납부보험료의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50~90%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에게 의료비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확산 및 다양한 예술직무?			

-예숙근	개발, 예술과 사회의 상호협력을 통한 창의적 사회				
~   <u> </u>	토때면				
에스이 여러하는 기의	온라인 교육을 통한 예술 역량 강화, 실습을 통한				
에걸한 극당3와 시면 	직업 역량 강화				
미술품해외 시장 개척	2021 온라인 홍보·전시 지원				
지원	2020 해외 아트 페어 참가 지원				
미술품 감정및 유통	2021 이고 자기 시대시되어 되기 기대로 되어 가입니다.				
기반 구축 사업	2021 원로 작가 디지털 0月0빙 자료 수집·연구 지원 				
한국 미술 해외 출판	나가 에스 드로 되고 배여 되어				
지원 사업	시각 예술 도록·자료 번역 지원				
시간 에수 비펴가	매체 - 시각예술 비평문 2회 연재 비평가 매칭				
_	비평가 - 시각예술 비평문 2회 연재 기획, 매체 매칭,				
	원고료 지원				
미술 주간 연계 프로	미술 주간 연계 기획 자율형				
그램 운영	미술 주간 장르 특화 기획형				
예비 전속 작가제 지원	참여 단체 공모				
미술품 과학적 분석	미술품 과학적 분석 및 감정 연계 연구 지원을 통한				
및감정 연계 연구 지원	체계적 미술품 감정 체계 미련				
미술품 감정및유통	미그 7년기 청합 (^^^) 청권 교그리				
인력 양성 지원	미국 감정가 협회 (AAA) 협력 프로그램				
전시광활화제시업	전시공간과 전시프로그램 매칭 및 경비 지원				
전시 해설 인력 지원 시업	전시해설사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지원 미술품 감정및 유통 기반 구축 시업 한국 미술 해외 출판 지원 시업 시각 예술 비평가 -매체 매칭 지원 미술 주간 연계 프로 그램 운영 예비 전속 작가제 지원 미술품 과학적 분석 및감정 연계 연구 지원 미술품 감정및유통 인력 양성 지원 전시 광간활화자원시업				

출처: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기초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21)

- O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및 적용 기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시
  - 예술인 산재보험 현행 운영에서 나타나는 기간 및 적용기간의 불일치 문제나 보험료 환급 방식의 행점 부담 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필요
- O 보험 가입 업무 대행 방안
  - 당연 적용으로 사업 수행 주체가 일괄 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수행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달리 개별 예술인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입을 수행 해야 하는 경우 공공 사업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예술인 산재 보험을 일괄 가입할 수 있는 제도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을 모집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지원하는 것처럼 현재 광역 단위에서 설치된 지역의 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업무 지원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수정 필요

# 제3절 시각예술 분야 안전 관리 시스템

# 1. 전시 및 작업공간 안전 관리 감독 체계

- O 시각예술 분야 작업 중 사고나 질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시 스템 구축 필요
- O 작업공간 안전실태조사 수행
  - 개인 및 공동, 장르별 작업공간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수행하여 위험 요인 파악하고 위험 대비 방안 도출
  - 공연, 방송, 영화에서는 작업공간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경험 축적되어 있으나 시각예술 분야는 체계적인 안전실태조사 경험 없음
- 주요 재해를 야기하는 특수장비의 올바른 사용법과 사고 시 대처 방법을 포 괄하는 <시각예술분야 안전가이드라인> 제시
  - 대중문화예술분야 경우, <방송 제작현장 안전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부, 2020)에 지미집, 슈팅카, 중계차, 비계 등의 특수장비 사용에 따른 재해 사례, 재해 발생 구조, 그리고 예방 방법이 수록됨
  - 그러나, 시각예술분야의 경우 고속절단기, 프레스기, 용접기 등 기계적 위험과 작업 환경 요인에 따른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인 안전 가이드라인 및 사고 사례집이 매우 드문 실정임
  - 전문기업과 연계하여 장비 사용 및 관리, 안전수칙 등에 관한 상세한 전문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시각예술인의 사고 대처 및 기계 사용에 대한 전반 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함
- 전시 공간 및 레지던시 안전 관리 감독 체계 수립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두는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예술분야는 대부분 소규모로 활동하고 있어, 소규모 작업장에 대한 안전간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또한, 시각예술 분야에는 위험한 작업기구의 안전한 사용을 지도하는 '테크니션' 이 있으나, 예술인의 안전을 강조하는 영국, 캐나다 등과 달리, 한국의 '테크니션' 지위는 시설관리 수준임. 시각예술에 특화된 안전 인력 배치가 필요한 상황임

"목공 재료를 다루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 목공 안에 선생님이 또 있어요. 서브 선생님은 테크니션 보다는 관리자죠.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돼'라기 보다는 기계 관리자로 기계 손질하고 잘 돌아가게 체크하는. 그냥 그 공간 지킴이죠."(회화, 기획, 시각예술인 C)

"옛날에 영국에서 학교 다닐 때 전시를 하는데. 이제 거기 오래된 건물도 많지만, 일 단은 애들은 Health and Safety가 먼저에요. 작품을 걸어도 '그게 누군가 다치게 할 수 있느냐 불안하냐' 그걸 체크를 먼저 해요. 근데 그런 거 한국은 없잖아요. 만약에 전시하더라도, 물론 미술관에서는 하긴 하겠지만, 보통 공간에서는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쓰잖아요. 이제 우리야 '이거는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사진, 기획, 시각예술인 L)

- 영국의 예술 스튜디오 관리 의무화 사례 참조

# 2. 안전 교육 강화

- O 전문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예술인의 주요 산업재해 예방 및 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각예술인은 안전 교육이 사고 예방과 재해 대처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으나('교육의 사고 예방과 재해 대처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85.1%), 80.2%의 시각예술인이 안전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나타남
  - 예술 활동에 대한 안전 교육 경험은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53.3%)과 '교육 관련 기관'(47.4%)에서 가장 잦았으나, 안전 교육에 대한 질적 고양이 요청되는 상황임
- O 예술인의 경력 및 주요 활동 공간을 고려하여, 사고 예방 및 재해 대처에 대한 맞춤형 안전 개발이 필요
  - 미술분야의 경우, 연령, 데뷔 연차, 경력에 따라 작가의 커리어를 '신진작가', '유망작가', '중견작가'로 구분할 수 있음(김혜인, 2015)

- 신진작가와 유망작가의 경우 '단체전'의 전시 경험이 가장 많았고, 중견작가의 경우 '기획전' 경험에 가장 많음
- 경력별 주요 활동 공간을 고려하여 예비 예술인 혹은 경력 초기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도모

<표 6-4> 작가 구분별 전시 경험 수준

구분		신진작가	유망작가	중견작가
전시경험 - (회) -	개인전	1.6회	5.6회	13.1회
	기획전	6.3회	21.8회	66.3회
	단체전	7.3회	34.5회	60.0회
	비엔날레	0.2호	1.1회	6.2회
	움마농	0.5회	2.4회	5.5회

출처: 미술 작가 커리어형성 및 관리 지원방안 연구(김혜인, 2015)

- 또한, 미술 작가의 커리어 형성은 주로 '비영리 미술공간(대안공간, 미술관, 공 공프로젝트 등)'과 '미술시장/영리미술공간(갤러리, 아트페어, 옥션 등)'을 배경 으로 하며, 두 공간을 중심으로 작가의 커리어가 형성됨(김혜인, 2015). 두 영 역에 따른 고려한 안전 교육 개발이 가능

<표 6-5> 작가 커리어 형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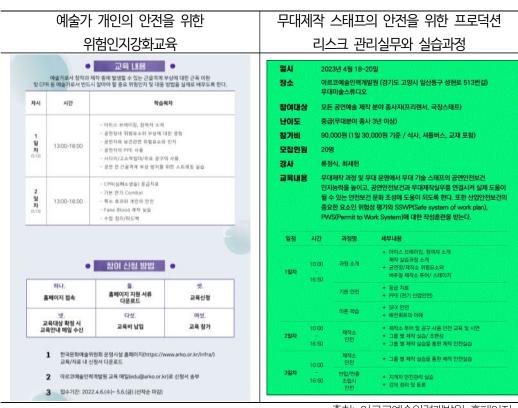
구분		내용		
비영리미술공간 중심의	1	커리어시작부터 지금까지 대안공간/미술관/공공프로젝트		
커리어 형성		등의 비영리미술공간 위주의 활동을 한 경우		
미술시장/영리미술공간	· ·	커리어시작부터 지금까지 갤러리/아트페어/옥션 등의		
중심의 커리어 형성		미술시장/영리미술공간 위주의 활동을 한 경우		
C 0404011 74+1 717101	3	비영리미술공간 → 미술시장/영리미술공간으로 주요 활동이		
		변화한 경우		
두 영역에 걸친 커리어 형성	4	미술시장/영리미술공간 → 비영리미술공간으로 변경		
00		비영리미술공간과 미술시장/영리미술공간 구분없이 활동이		
	5	병행되는 경우		

출처: 미술 작가 커리아형성 및 관리 지원방안 연구(김혜인, 2015), 표로 구성

- O 현재 공공사업 수행 시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는 것처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함
- O 참고할 수 있는 안전 교육 사례로는 아르코무대예술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 이 있음

- "예술가 개인의 안전을 위한 위험인지강화교육 과정"(2022년)의 경우, 공연예술을 포함한 모든 예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창작 및 제작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부상에 대한 주요 위험인지 및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
- "무대제작 스태프의 안전을 위한 프로덕션 리스크 관리실무와 실습 과정"(2023년)의 경우,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공연예술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임.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공연예술 제작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연장 안전 관리에 대한 기초 이론과 그룹별 무대 제작 실습을 통한 안전 교육을 제공함
-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비숙련 예술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음



출처: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홈페이지

[그림 6-1] 아르코무대예술이카데미 교육프로그램

# 3. 시각예술인 직업질병 대응 체계 구축

- O 시각예술인이 조사 결과 작업 활동에 기인한 질병을 갖고 있고 직업 질병에 대한 인식이 만연해 있으나 의학적인 실증이 이루어진 바가 없음
- O 시각예술인 고유 직업질병 상담 및 의료 네트워크 구축
  - 직업 환경 의학과의 연계 협조로 예방 및 진료를 수행하고 질병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의학적으로 직업질병의 인정을 위해 필요한 학술 기반 확보
- O 직업 질병 상담 채널 구축 시, 시각예술인의 사고 및 질병에 대한 다양한 사례 축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절차만 만들어놨는데도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난당한 사례, 법률적으로 자기네들 침해당한 사례, 이런 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000한테 전화해라.' 그러면 다 전화해요.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막 받아 적고. … 지금 산재 이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말 안 하고 그냥 자기 돈으로 때우고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 전문가 자문 중. 공립미술관 운영부장

- 예술인의 경우 장시간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장르마다 다양한 형태의 직업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의료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구축이 필요함. 나아가 예술인질병지원센터 설 립을 추진하여 예술인의 직업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확립할 필요 가 있음
  - 유해물질과 유해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 미술가들의 작업환경은 공장노동 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한 직업병에 노출됨 가능성이 높음(McCann & Babin, 2008, 재인용: 강고운, 조명계, 2015)
  - 큰 소리에 자주 노출되는 록 음악 뮤지션의 경우 자주 연주를 할수록 청력이 손질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남(Størmer & Laukli & Høydal & Stenklev, 2015)
  - 반복적인 자세로 장기간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와 공연예술가의 경우 신경 및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 직업 경력이 중단될 수 있음(John Chong 외, 1989)
  - 직업 관련 통증을 호소하는 485명의 환자 중 70%가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28%는 음악가, 2%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기타

종사자로 나타남(Pascarelli & Hsu, 2001)

- 이처럼 예술인의 직업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다양한 직업병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공연예술의학 등 예술 관련 의학에 대한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직업병이 무엇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 이에 직업환경의학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예술가의 직업병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예술인 질병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구축과 이를 전담하는 예술인질병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통해 예술인 직업병 인정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 예술인의 직업병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예술가의 건강한 직업 생활 및 경력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O 표준계약서의 업무상 재해보호 의무조항 개정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상 산업재해 관련 신설 조항에 업무상 재해 보호와 재해 발생 시 보상 책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미술 분야 예술인의 보호 수준을 갖추도록 함

<표 6-6>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2022년 기준)

계약서	관련 조항	설명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제19조(산업재해보상보험) 회상은 작가를 피보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산재보험은 2012. 11.부터 예술인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예술인 복지법」 제7조 제1항),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2020. 1. 7.자 개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입 허용 범위를 12개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되어,
전속계약서 (매니지먼 트 계약서)	제21조(산업자해보상보험) 화랑은 작가를 피보함자로 하는 산업자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다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산업자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9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하여 산업자해 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시기획 계약서	제7조(산업재해보상보험) 전시기관은 전시기획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관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등 자격관 업무를 수행하다 하고,	작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서
시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	가입하거나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서
하는 한다.	가입하는 경우에 화랑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알기 쉬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2)

O 공예분야 표준계약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보호 수준을 증대할 수 있음

<표 6-7>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2021년 기준)

계약서	관련 조항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제21조(고용보험) 이 계약이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정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을 적용받는 전시관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제15조(고용보험) 이 계약이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정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를 적용받는 발주자는 공급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장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			

출처: 공예표준계약서(2021년 기준)

# 4. 지역 기반 예술인 안전관리시스템과 종합상해보험 도입

- O 지자체의 예술인 복지 활동 다각화
  - 전라북도의 예술인 특례보증지원,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술인 복지기금 조성, 성남시의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 광역·기초 지자체 의 예술인 복지 활동이 다각적으로 수행
  - 특히, 비수도권의 예술인 복지 정책은 전문 예술인의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응학기 위한 균형발전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음
- O 지역의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립으로 예술인복지정책의 분권화 진행
  - 예술인복지지원 사업이 지역의 예술인복지지원센터로 이관되면서 예술인활동증명 사무 외에도 예술인 파견지원, 의료비 지원 등 지역의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 확장 추세
- 지역의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예술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지역의 예술 활동 작업공간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수행
  - 지역의 현황에 맞는 안전가이드라인 작성
  - 지역의 전문예술인 대상 종합상해보험 제공
- 예술인 산재보험 확대 적용에서 발생하는 시각예술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시각예술의 특성상 산재보험 적용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서 종합상해보험 추진
  -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작업장이 명확한 공연, 영화, 방송과 달리 개인 작업의 비중이 커서 작업과 일상생활의 경계 구분이 모호하고, 재해 발생 시 목격자 없는 상황이 빈번하여 산재 인정의 어려움 가능
  - 시각예술 분야 산재 경험을 분석해 보면, 비교적 가벼운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여
     여 상해보험 수준의 보장으로 상당 비율의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전시 철거 작업에서 갤러리 화랑 인력들에 대한 위험을 예술인 산재보험의 틀 안에서 보호하기 어려움
- O 직업적 활동의 수준이 높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종합상해보험 형태의 보호를 시범사업으로 제공함
  - 직업적 활동 수준이 높은 예술인은 문예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

체 소속 및 활동 예술인과 미술진흥법에 따른 미술 법인 및 단체나 미술서비스 업 종사 업체에 소속된 예술인에게 보호 제공

-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에게 최소 수준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종합상해보험 형태의 보호 제공
-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지정 후 혜택으로 기부금 공개 모집이 가능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으나, 실제 세 제 혜택을 받는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많지 않음. 하지만,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이 법인단체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수는 매년 증가 추세
- 비수도권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상해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
- 전문예술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예술생태계 강화에 기여함

#### O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원 육성 관련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 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지자체 사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5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육성 제23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보조 및 공연·전시시설의 사용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O 미술진흥법에 따른 지원 육성 대상인 기관 및 단체

- 미술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미술진흥법 제13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관련 활동
   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미술진흥법 제14조(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미술 서비스업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O 지역 예술인의 종합상해보험 시범사업 수행 자료를 바탕으로 예술인 대상 산재보호의 효과적 설계 추진
  - 지역 예술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활동분야별 특성에 따른 재해 데이터 축적
  - 데이터 기반 효과적인 상해 보험 설계 추진
  - 상해 규모에 따른 예술인 산재보험 확대 적용 필요성 판단

# 참고문헌

강고운, 조명계 (2015). 미술대학 실기실의 창작환경 실태분석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미술정책논총, 29.2, pp. 1-24 근로복지공단 (2022).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실태조사 보고서, 울산: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2022).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안내 김달진미술연구소 (2007).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및 분석」 김혜인 (2015). 미술 작가 커리어형성 및 관리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2018). 미술로 행복한 삶 -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2018~2022) -\_\_\_\_\_ (2018). 2021 예술인 실태조사 \_\_\_\_\_ (2020). 방송제작현장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보고서 \_\_\_\_\_\_ (2021).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개정판 \_\_\_\_\_ (2021).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기초연구 \_\_\_\_\_ (2022). 2022 미술시장조사 \_\_\_\_\_ (2022). 2022 미술시장조사 \_\_(2022). 알기 쉬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3.1.4). 보도자료 우리나라 미술시장 매출액 1조 원 돌파 서울대학교 & Paradise Cultural Foundation (2022). Korea Art Market 2022 양현미 (2014). 미술 분야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토론집, pp.25-38 오종은, 박은주, 서우석, 양혜원 (2022).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서울: 근로복지공단 근로 복지연구원. 차민경, 이정희, 한석진 (2022).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2).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C. Størmer, E. Laukli, E. Høydal, C. Stenklev. (2015). Hearing loss and tinnitus in rock musicians: A Norwegian survey. NOISE AND HEALTH Vol.17(79), pp. 411–4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문예연감2022

한국에술인복지재단 (2023). 예술인 활동 증명 운영지침

- F. Pascarelli, Y. Hsu (2001). Understanding Work-Related Upper Extremity Disorders: Clinical Findings in 485 Computer Users, Musicians, and Others.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Vol 11(1). pp. 1–22.
- J. Chong, M. Lyden, D.Harvey (1989). Occupational Health Problems of Musicians. Can

Fam Physiciam, Nevember(35) pp. 2341-2348. Noël Carroll (1992). "The Nature of Mass Art", Philosophical Exchange 23, p. 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kawf.kr/예술인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kawf.kr/allMenu/artMain.do 예술인산재보험 홈페이지, https://wci.kawf.kr/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 예술인 산재보험 안내책자.
http://www.kawf.kr/notice/sub07View.do?selldx=18189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comwel/main.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arko.or.kr/infra/board/list/685jsp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부록

# 참고 사례

# 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O 기관 연혁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1년 정보 건복지부의 설립 지원 10억 원으로 2012년 출범
-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저축상품 및 종사자 상해보험,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 제공
- 2021년 자산 1,000억 원 돌파, 장기저축급여 회원 10,000명 돌파
- 2022년 한국사회복지공제회관 매입 (서초구 강남대로 위치, 지상 12층, 지하 2층 규모)하여 3개층 사용 외 임대사업 수익 확보

## O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 <표 7-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구분	내용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자	시설에 종사하는 자			
	• 사회복자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설치·신고된 기관에 종사하는			
	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띠	라 사회복자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입대상	기관에 종/하는 자				
	* '종사자' 기준				
	1) 소속 법인/시설/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4대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하여 경				
	력(재직)증명서 발급을 통해 직원임을 인정받는 자, 2) 만15세 이상인 자, 3				
	직종 및 담당 직무 무관, 겨	약직이나 시회서비스바우처 인력 포함			
	상해 사망 3	3,000만원 (정액)			
보장수준	상해 후유장해 3	,000만원*장해 <del>율</del>			
<u>-016</u>	상해 입원일당비 입원 일	일당 2만원 (첫날부터, 정액, 180일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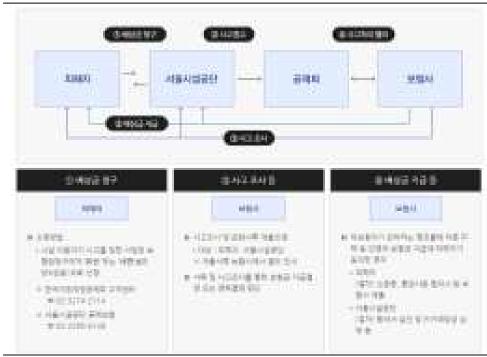
	상해 골절진단비 사고	건당 15만원 (정액, 건수 제한 없음)
	상해 화상진단비 사고	건당 20만원 (정액, 건수 제한 없음)
	상해 의료지원비	50만원~500만원
	l 바 함보 하 상 보 사유	최대 80% 내외 저렴한 공제료(보험료 지부담 연간 1만
	원)	
	· 연령, 성별, 직종과 상관	없이 공제료 동일
특징	· 1년 365일 24시간 보장(	(업무 외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도 보장)
	· 1년 단위 갱신(소멸)형 성	농품으로 장기 납입에 대한 부담이 없음
	· 4대보험 중 하나 이상 1	납부하는 직원이면 정규직, 계약직 차별 없이 모두 가입
	) 가능	
	· 2014년 12월 기준 누적	가입 인원이 15만 명 초과
상상	・ 다수 지자체의 공제시업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 삭감
현황	· 2015년 기준 총 1169건	보상에 지원 금액 5억 2800만 원으로, 근무시간 보다
	업무 외 일상생활 사고기	ł 70% 비중을 차자하고 있음

지이따혹 (회사공(지본) 보기 사출

- O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례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과 비슷한 시시에 설립되어 단기간에 자산을 확충하여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게 상해보험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로 시사점이 큼
  - 단체상해보험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개인 부담이 거의 없는 방식으로 상해보험의 혜택을 제공
  - 보장수준이 크게 놎지는 않아도 산재보험에 가입된 종사자 대상으로 보장 서비 스를 보완
- O 가입 대상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유관기 관 및 비영리 기관 종사자까지 포괄하고 있어서 소속 단체 및 시설의 수준 이 다양한 예술분야에 유용한 참고사례로 보임
- O 예술분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명단 작성이 해당 기관 에 의해 4대 보험을 근거로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는데 비해 예술 분야 기 관에 있어서 명단 작성이 어려운 점을 꼽을 수 있음

## 2. 한국지방행정공제회

- O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건물 및 시설물 복구 지원을 위해 1964년 설립
- O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2003년 제정)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 전국 지자체 및 지자체 소속 공사 등 377개 단체 회원
- 전국의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 단·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법인을 회원으로 하여 운영 - 대부분의 지자체 운영 문화시설도 회원 가입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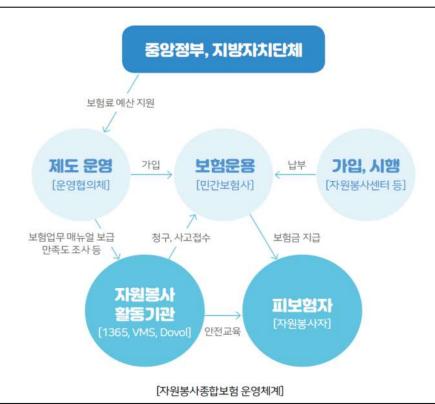
[그림 7-1] 한국 지방 행정공제회

- 지자체 소유 건물과 시설물, 관공선(선박) 재해 보상, 영조물 하자 배상, 관 공서의 서류발급·행정업무 과실 배상 등 8가지 상품 판매
- 영조물배상공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2018년 기준 영조물배상공제회비 482억 원, 배상공제사업비 495억 원
- 청구 절차: 시민이 영조물보험이 가입된 공단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영조물배상 사고접수 신청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고처리를 위한 사고조사 후 처리결과에 따라 보상

# 3. 자원봉사 종합보험

- O 2006년부터 지자체별 시행되어 왔으며, 지자체별 차이를 평준화하고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3개 부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 족부) 통합계약 실행함
- O 예산액은 30억 원 내외 수준이고 지급액은 연 8억 원대에서 15억 원 대로 연도별 상이함
- O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 예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O 가입대상은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 등의 피해를 자원봉사활동인증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원봉사자임
  - 자원봉사 시행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본보장 내용과 함께 변호사 비용, 정신적 피해 심리상담 등 추가보장이 가능함
  - 명단을 받지 않고 예상활동 인원으로 가입하므로 활동한 모든 봉사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명단 누락에 따른 담보누락도 최소화할 수 있음
- O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법에 근거함
- O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운영협 의체를 구성하여 보험제도를 운영함



출처: 2022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업무매뉴얼

## [그림 7-2] 자원봉사종합보험 업무매뉴얼(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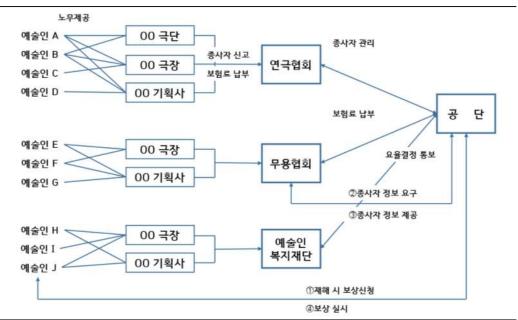
# -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담보와 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음 <표 7-2> 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담보 및 기입금액 (2023년 기준)

가입금액
각 2억원
의 2 <del>기</del> 전
7만원/5만원
2억원/5억원
1억원
각 2백만원
5백만원/1백만원
1천만원/5백만원
71 50101
각 5억원
5백만원
50만원
1천만원

출처: 1365 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

# 4. 항운노조 산재보험관리기구

- 근로자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보험가입자 특정이 어려운 항운노조원의 산재 보험 적용을 위해 구성된 <산재보험관리기구>가 항운노조원의 산재보험 보험 가입자 지위를 행사하고 있음
  - 항운노조원을 필수 구성원으로, 하역업체, 화주(단체) 등을 임의구성원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구성됨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항운노조원 의 산재보험 보험 가입자 지위를 가짐으로써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됨
  - 항운노조원의 보험료 부담은 정관에 따라 기구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관리기 구가 관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업무상 재해 발생 시 평균임금에 따라 산재보상 을 실시하고 있음



출처:예술인 산재보험 관리기구(단체) 구성을 통한 산재보험 보호 방안 (2023. 7. 13.). [관계부처 회의 발표자료]
[그림 7-3] 예술인 산재보험 관리기구 추진 모델(안)

- O 시각예술인의 산재보험 관리기구 구성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자율 기구 구성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 특히, 예술인단체, 협회,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시각예술인을 포섭할 지원 방안이 요구됨
  - 자율 기구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예술계 내부의 자율적인 수행 역량이 필요함
  - 자율 기구 구성 및 활성화까지 장기간의 노력이 불가피함

# 시각예술분야 예술인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예술 작업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예술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창작 활동을 조성하고,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이에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분야 활동 현황과 작업여건, 산업재해 실태 및 재해관련 보험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조항에 따라 모든 정보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을 완료하신 모든 예술인을 대상으로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사기관 (주)케이스탯리서치

귀하의 개인정보와 응답하여 주신 내용들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DB작성, 통계분석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조사 참여 및 분석과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응답 시 조사종료)

(사전질문) 귀하는 <u>지난 1년간(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u>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이 발생하였습니까?

예

② 아니오 🐷 설문종료

#### Part.1 작업 여건

다음은 귀하가 예술활동을 수행하시는 작업 과정과 공간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예술활동을 하시는 경우 가장 주된 예술활동 계약 수행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하의 예술활동 수행을 위한 **일평균 작업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시간\_\_\_\_\_분

	① 전혀 없다	② 가끔 있다	③ ス	<sup>†주</sup> 있다	구 ④ 호	상 있다	
문3.	귀하가 현재 활동하	고 계시는 공간은	어떤 형	형태입니	시까? <b>모두</b> 글	글라 주십시오	
	① 개인창작공간(집	l 안)	② 가	비인창작	공간(집 밖	별도 공간)	
	③ 공동작업실		④ સ	공레지	던시	⑤ 민간레7	시던시
	⑥ 야외		⑦ <del>=</del>	구·공립 I	미술관	⑧ 민간 미	<del>술</del> 관
	⑨ 복합미술공간, 비	비영리전시공간	⑩ 컨	선벤션 선	센터(코엑스,	벡스코 등)	
	⑪ 기타(구체적으로	<u> </u>			_)		

문2. 귀하의 예술활동 수행 중 <u>야간 혹은 밤샘 작업의 비중</u>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4. 귀하가 예술활동을 수행하시는 **작업 과정과 주된 작업공간에 대해 각각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면 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잘 모르 겠다
1. 건축 구조물 파손 등 공간이 잘 관리되어 있지 않다	$\odot$	2	3	4	(5)
2. 무거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odot$	2	3	4	(5)
3. 무거운 물건을 운반 또는 취급한다	1	2	3	4	(5)
4. 이동 통로가 어둡거나 장애물이 있다	1	2	3	4	(5)
5. 조명이 어둡거나 자주 암전된다	1	2	3	4	(5)
6. 움직일 때 넘어져서 다치기 쉽다	1	2	3	4	(5)
7. 사다리를 사용하는 등 높은 위치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 장치가 없다	1	2	3	4	(5)
8. 피난계단이나 비상 출구 등 대피수단이 잘 관리되어 있지 않다	1	2	3	4	(5)
9. 전기시설이 잘 관리되어 있지 않아 감전이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다	1	2	3	4	(5)
10. 소화기나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1	2	3	4	(5)
11. 소음이나 먼지,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1	2	3	4	(5)
12.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 페인트 등을 취급한다	1	2	3	4	(5)
13. 온도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며, 고온이나 추위에 노출된다	1	2	3	4	(5)
14. 폭염(혹서기) 또는 한파(혹한기)에도 밖(야외)에서 일한다	1	2	3	4	(5)
15. 사람이 쉽게 오가지 못하는 곳(산간 오지, 섬, 선박 등)으로 간다	1	2	3	4	(5)
16. 생활환경이 매우 다른 곳이나, 외교관의 도움을 받기 힘든 해외로 간다	1	2	3	4	(5)
17. 재난장소 및 사고현장에서 촬영(활동)한다	1	2	3	4	(5)
18. 감염병 노출위험이 높은 장소(늪, 숲 속 등)에서 촬영한다	1	2	3	4	(5)

19. 스케줄로 인해 수면시간이 부족하다	1	2	3	4	5
20. 작업공간 이용 시 안전매뉴얼을 보거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	1	2	3	4	5

#### 문5. 귀하가 예술활동을 수행하시는 **작업 <u>과정에</u>서** 다음의 사항이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작업 장소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자주 바뀐다	1	2	3	4
(2)작업 시간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자주 바뀐다	1	2	3	4
(3)예정에 없던 과업이나 잡무가 추가된다	1	2	3	4

# 문6. 귀하가 예술활동을 수행하시는 **작업 <u>과정에서</u>** 다음 사항을 **얼마나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작업 장소를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다	1	2	3	4
(2)작업 시간을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다	1	2	3	4
(3)작업 내용을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다	1	2	3	4

## 문7. 귀하가 예술활동을 수행하시는 작업 과정(사전준비, 리서치, 실행, 철수 등 전체 포함)과 공간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전혀 안전하지 않음

매우 안전함 →

#### Part.2 산재 현황

다음 문항은 귀하가 현재 활동하시는 예술 분야에서 경험한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한 질문입니다.

#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에 대한 다음의 설명을 확인하신 후,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본 설문에서는 '(근로자)산재보험'으로 표기합니다.
- 예술인산재보험 : 프리랜서인 예술인이 '중소기업사업주'로서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 방식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사무대행기관으로 하여 예술인이 가입하는 산재보험입니다.
- 예술인고용보험 :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사업주(사업장)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실직했을 때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 **상해보험(민간보험)** : 우연한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가입 내용에 따라 상해 치료비용이나 상해로 인한 사망, 고도의 장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단체나 개인이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민간보험): 개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나 처방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문8. 귀하가 예술활동을 수행하시는 작업 과정 중 <u>직접 당한 사고</u>와 <u>다른 사람의 사고를 목격한 경우</u>가 있다면, 다음 중 해당하는 경우를 <u>모두</u> 골라 주십시오.

	사고 직접	경험 여부	사고 목격 여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떨어짐	①	2	1	2	
2. 넘어짐	①	2	1	2	
3. 깔림·뒤집힘	①	2	1	2	
4. 부딪힘	①	2	①	2	
5. 물체에 맞음	①	2	①	2	
6. 무너짐	①	2	①	2	
7. 끼임	①	2	①	2	
8. 절단·베임·찔림	①	2	1	2	
9. 화재·폭발·파열	①	2	1	2	
10. 교통사고	①	2	①	2	
11. 감전사고	①	2	①	2	
	①		1		
40 = 01 740 (5775)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12. 그 외 겪은/목격한 사고	사고였습니까?	2	사고였습니까?	2	
	:)		:)		

☞ 사고 직접 경험 여부 항목에 하나라도 ①번을 응답한 경우 문7-1로 이동

문8-1. (문8의 사고 직접 경험 여부 ① 응답자만) 귀하가 직접 당한 사고가 지난 1년(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동안에 발생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8-2. (문8의 사고 직접 경험 여부 ① 응답자만) 가장 크게(심각하게) 경험한 업무상 사고는 어떠한 예술 활동 중에 일어났습니까? ① 기획  ② 창작 준비(인력구성, 예산확보, 재료 준비, 공간확보, 출퇴근 등) ③ 창작  ④ 퍼포먼스(시연) ⑤ 전시 설치, 운송, 철거(미술품의 포장, 작품 설치와 철거, 보험 업무 대행 등) ⑥ 전시·행사 홍보와 이벤트(언론매체 응대, SNS관리 등) ⑦ 행정(회계관리, 시설운영 및 관리, 티켓 매니저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
문8-3. (문8의 사고 직접 경험 여부 ① 응답자만) 가장 크게(심각하게) 경험한 업무상 사고가 일어난 공간은 어디입니까? ① 개인창작공간(집 안) ② 개인창작공간(집 밖 별도 공간) ③ 공동작업실 ④ 공공레지던시 ⑤ 민간레지던시 ⑥ 야외 ⑦ 국·공립 미술관 ⑧ 민간 미술관 ⑨ 복합미술공간, 비영리전시공간 ⑩ 컨벤션 센터(코엑스, 벡스코 등) ⑪ 출·퇴근 공간 ⑫ 기타(구체적으로 :)
문8-4. (문8의 사고 직접 경험 여부 ① 응답자만) 귀하가 당한 사고 중 가장 크게(심각하게) 당한 업무상 사고로 인해 <b>일을 쉰 기간</b> 은 얼마나 됩니까? 년
문8-5. (문8의 사고 직접 경험 여부 ① 응답자만) 가장 크게(심각하게) 경험한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목격한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① 사고를 목격한 다른 사람이 있었다 ② 사고를 목격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문8-6. (문8의 사고 직접 경험 여부 ① 응답자만) 귀하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으셨습니까? 여러 번 사고가 난 경우 가장 큰 사고 또는 자주 발생한 사고를 중심으로 응답해주십시오. ① 보상 받지 못하고 본인 비용 처리 로구-6-1로 이동 ② 본인의 개인 민간보험(상해보험, 실손보험)으로 보상 로구-6-1로 이동 ③ 계약상대방측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 로구-7으로 이동 ④ 계약상대방측의 비용으로 치료 로구-7으로 이동 ⑤ 근로자 산재보험으로 보상 로구-7으로 이동 ⑥ 예술인 산재보험으로 보상 로구-7으로 이동 ⑦ 기타(구체적으로 :) 로구-7으로 이동

문8-6-1. (문8-6의 ①, ② 응답자만) 계약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고 <u>본인 부담으로 처</u>

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계약상대방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어서
- ② 대부분 동료들이 하는 방식이라서
- ③ 보상의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 ④ 사고 피해가 경미해서
- ⑤ 내 잘못으로 일어난 피해라고 생각해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_\_\_\_
- 문9. 귀하와 귀하의 동료가 업무상 사고를 경험할 때, 충분한 치료·재활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sup>®</sup> 문9로 이동 ② 아니오<sup>®</sup> 문8-1로 이동
- 문9-1. (문9의 ② 응답자만) 충분한 치료·재활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참는 게 당연한 분위기 때문에
  - ② 치료·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③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 ④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 ⑤ 치료·재활 기간의 대체 인력이 없어서
  - ⑥ 무리한 전시 대관 일정 때문에

(7)	기타(구체적으로	:	

문10. 귀하가 예술활동을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업 관련 질병 경험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직업관련 질병	경험 여부
	있다	없다
1. 반복 작업을 수행하여 근골격계 질환(목, 어깨, 손목, 무릎, 다리 등의 통증과 저림) 및 관절염이 생겼다	1	2
2. 중량물을 다루어 근육통이나 디스크(목, 허리 등)가 생겼다	1	2
3. 화학물질, 물감 등의 재료로 인해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	1	2
4.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여 전신피로를 자주 느낀다	1	2
5.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고 혼자 작업하면서 정신질환(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이 생겼다	①	2
6.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로 뇌심혈관계질환(뇌경색, 심근경색, 뇌출혈 등)이 발생했다	①	2
7.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여성질환(난임, 유방암, 부정출혈, 자궁난소 질환 등)이 생겼다	①	2
8. 화학물질에 자주 노출되거나, 먼지와 분진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호흡기 질환(폐렴,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이 생겼다	①	2
9. 큰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청력에 문제가 생겼다	1	2
10. 영상편집, 특수효과 등 전자기기를 통한 작업을 오래 하여 눈의 피로	1	2

가 발생한다		
11. 카메라 플래시 등 강한 빛에 장시간 노출되어 시각에 무리가 발생한다	1	2
	1	2
	(그 외 질병	경험자만)
12. 그 외 경험한 직업 관련 질병	구체적으	로 어떤
	질병이었습	습니까? :

#### Part.3 산재보험 관련

문11. 귀하는 산재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 <del>른</del> 다	잘 모르는 편이다	잘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안다
(1) 민간 상해보험과의 차이	0	2	3	4
- 과실과는 상관없이 요양기간 동안 평균 - 민간상해보험이 특약사항으로 보장하는 - 중증 장해나 사망사고 발생 시 장해연금, - 합병증 예방관리부터 안정적인 직장 복구	내용을 기본 <sup>ス</sup> , 유족연금 지	덕으로 보장  급	H활 서비스 ?	세공
(2) 산재보험 급여 종류	0	2	3	4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성	}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 <sup>0</sup>	셔, 유족급여	및 장의비
(3) 산재 발생 시 신청 절차	1	2	3	4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요양·휴업급여 신	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담당지사 접	ļ수→승인여

문12. 귀하는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문12로 이동
- ②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 문12로 이동
- ③ 필요한 편이다 🖙 **문11-1로 이동**
- ④ 매우 필요하다 <del>☞ 문11-1로 이동</del>

문12-1. (문12의 ③, ④ 응답자만) 귀하가 산재보험료의 75%를 부담해야 한다면 귀하는 산재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① 절대 가입하지 않겠다 🔊 문11-1-1로 이동
- ② 가입하지 않을 것 같다 **E11-1-1로 이동**
- ③ 가입할 것 같다

부 통지→급여지급

④ 확실히 가입하겠다

문12-1-1. (문12-1의 ①, ② 응답자만) 귀하가 산재보험료의 50%를 부담해야 한다면 귀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① 절대 가입하지 않겠다 🔊 문11-1-2로 이동
- ② 가입하지 않을 것 같다 ☞ 문11-1-2로 이동
- ③ 가입할 것 같다
- ④ 확실히 가입하겠다
- 문12-1-2. (문12-1-1의 ①, ② 응답자만) 귀하가 산재보험료의 25%를 부담해야 한다면 귀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① 절대 가입하지 않겠다
  - ② 가입하지 않을 것 같다
  - ③ 가입할 것 같다
  - ④ 확실히 가입하겠다
- 문13. 귀하는 현재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가입하신 보험이 있습니까? 가입하신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없음 🖙 <del>문</del>13으로 이동
- ② (근로자)산재보험 ☞ <del>문15로</del> 이동
- ③ 민간 실손보험 🐷 문13으로 이동
- ④ 민간 상해보험 ☞ 문13으로 이동
- ⑤ 예술인산재보험 📨 **문12-1로 이동**
- ⑥ 기타 ☞ 문13으로 이동
- 문13-1. (문13의 ⑤에 응답한 사람) 귀하는 예술인산재보험에 어떤 경로로 가입하셨습니까?
  - ① 필요에 의해 개인적으로 가입
  - ② 공공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가입
  - ③ 소속 단체 혹은 계약당사자 등 예술활동 관계자의 권유로 가입
  - ④ 지인의 추천으로 가입
  - ⑤ 기타(구체적으로: )
- 문14. (문13의 ①, ③, ④, ⑥번 응답자만) 귀하는 예술인산재보험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계셨습니까? 설명문을 읽고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은 일하는 중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2012년부터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예술인도 중소기업사업주 형태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직업예술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을 위한 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을 대신해 산재보험 가입, 정보변경, 해지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예술인은 매월 납부한 보험료의 50~90%를 분기별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

② 아니오

문15. (문13의 ①, ③, ④, ⑥번 응답자만) 귀하는 예술인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del>문14-1로 이동</del>

- 문15-1. (문15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가 예술인산재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서
  - ② 민간보험으로 충분해서
  - ③ 산재 발생 가능성이 낮아서
  - ④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로 승인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 ⑤ 행정처리 등 절차가 번거롭고 귀찮아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_\_\_\_)

#### Part.4 산재 인식 및 교육 수준

문16.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한 다음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 <del>는</del> 다	동의하지 않는다	<del>동</del> 의한 다	매우 동의한 다
1. 나는 예술 활동에 필요한 안전 수칙을 알고 있다	1	2	3	4
2. 나는 예술 활동에 필요한 안전 수칙을 잘 지킨다.	1	2	3	4
3. 내가 속한 예술 분야의 종사자들은 안전 수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	2	3	4
4. 내가 속한 예술 분야의 종사자들은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편이다.	1	2	3	4

<b>-</b> 17	MI 스	하도에	디니스ト	ロトスイ	0 0	HFO	겨워이	이스티	77 L	. つ
ᆫ   / .	에돌	철중에	네인	단선	교육을	걷匸	경임이	겄늅닉	"	ŗ

1	예☞ 문16-1로 이동	② 아니오 <mark>☞ 문17으로 이동</mark>
•		<u> </u>

문17-1. (문17 ①번 응답자만)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 ② 문화시설 (미술관, 갤러리, 아트페어 등)
- ③ 교육 관련기관(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 ④ 예술단체
- ⑤ 기타(구체적으로: )

문17-2. 예방 교육이 사고 예방과 재해 대처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18. 귀하의 예술 분야에서 일어난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사고와 재해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② 충분한 창작/설치 및 철수 기간을 확

#### 보한다

- ③ 충분한 인력을 확보한다
- ④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비와 보조도구를 사용한다
- ⑤ 작업별 안전 매뉴얼 또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⑥ 창작공간의 조명·공기·온도를 개선한다
- ⑦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⑧ 치료·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

선한다

⑨ 기타(구체적으로: )

#### Part5. 예술 활동 현황

문19. 귀하가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분야는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직	업군	직무내용
	1	작가	신작을 창작하거나 구작을 개변하는 업무
창작/	2	평론가(비평가)	특정 전시의 전시 서문, 작가에 대한 비평문이나 평론 등을 작성 해서 제공
기획/	3	안무가	실연자들의 춤동작이나 움직임을 구성(퍼포밍 아트)
실연	4	실연자	안무가가 구성한 춤동작이나 움직임을 실연(퍼포밍 아트)
	5	기획자	전시 및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전반적인 운영을 진행
	6	어시스턴트	작가의 활동을 보조하는 업무
	7	테크니션	영상설치와 음악(음향) 등 기술적 측면과 관련된 전반적 지원
	8	공간 디자이너	미술품 설치 방식 및 위치, 벽의 색깔, 공간의 높이와 폭, 조명의 위치와 세기, 관람자의 동선, 시선, 전시실 온도를 비롯하여 미술 품을 보여주는 방식 전반을 디자인
	9	도록 디자이너	도록이나 전시기관의 출판물을 디자인하는 업무
	10	도슨트	전시를 관람객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업무
기술	11	에듀케이터	관람객이나 일반인이 전시와 미술을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 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
지원	12	홍보마케팅	전시와 관련하여 언론매체 응대 및 관리, VIP응대, 이벤트, 프로 모션, 미디어 제휴, SNS관리, 콘텐츠 개발·디자인 등의 업무
	13	행정	회원관리, 회계관리, 시설운영 및 관리, 대관, 티켓매니저, 전시장 지킴이, 안내 등
	14	유통업자	미술품의 대여·중개 또는 판매
	15	아트컨설턴트	공간 연출, 소장품, 전시공간 등과 관련하여 기획, 운영, 자문 등 일련의 컨설팅 제공
	16	감정인	미술품의 진위나 예술적·문화적·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기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감정서 발급
	17	설치·운송	미술품의 포장, 운송과 작품 설치, 수출·입시 선적 및 통관, 보험 업무 대행, 철거 등의 업무
	18	기탁	구체적으로 :

문20. 귀하가 <u>주로 활동하는 예술분야(택 1)</u>와 <u>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총 기간</u>을 작성해 주십

시오. 교육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활동하는 분야 : <u>(번호)</u> , 활동기간 :	년개월
문21. 지난 1년간(2022년 1월 1일~12월 31일) 활동 분야의 예술작품 발표 <u>9</u> 얼마나 되십니까?	또는 참여 횟수는
* 발표 및 참여 횟수는 주제와 내용이 다른 작품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I	면, 권, 건, 회 등
문22. 귀하의 연간 총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지난 1년간(2022년 1월 의 소득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입해주시고, 액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적어 주시	
1. 지난 1년간 예술활동을 통해 얻은 총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술활동 소득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수입과 '예술 관련 부업'으로 얻은 소득을 포함합니다.	만원
1-1. 예술활동소득 중 <b>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수입</b> 을 통한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만원
1-2. 예술활동소득 중 <b>예술 관련 부업</b> (예: 실기레슨, 예술강사, 자문 등)을 통한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원
2. 연간 총소득 중 예술과 관련 없는 일(예: 음식점, 택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원
3. 일하고 받은 용역대가가 아니라 증여 또는 유족연금, 실업수당, 치료비, 재난지원금 등 이른바 <b>이전소득</b> 을 통한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원
문23. 예술인 단체나 협회, 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 ① 예 (:개) <mark>☞ 문5-1로 이동</mark> ② 아니오	
문23-1. (문23 ①번 응답자만) 가입하신 단체나 협회, 조합 중 <u>회비를 납부</u> 하고 ① 예 ② 아니오	그 계십니까?
다음의 문항은 지난 1년간(2022년 1월 1일~12월 31일) 체결한 예술활- 가장 주된 계약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동 계약 중
문24. 귀하가 체결한 예술활동 계약의 종류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모른         ① 정규직 근로계약       ②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       ③ 단시간(아르바이를 가장하여 등이 보다를 하는 전시계약         ④ 문화예술용역계약(도급, 위임, 업무위탁 등)       ⑤ 전시계약         ⑥ 전속계약       ② 저작권계약       ⑧ 기타(구체적으로)         ☞ 응답한 선택지마다 문23-1로 이동	) 트)·일용직 근로계약
문24-1. 귀하가 체결한 예술활동 계약의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① 1일 이하 ② 2일 이상~1주일 미만 ③ 1주일~1개월 대	기만

④ 1개월~3개월 미만 ⑦ 12개월 이상			
문24-2. 귀하가 체결한 예술홀 ① 서면계약 ☞ <b>문23-2</b>		무엇입니까? ② 구두계약	:
문24-2-1. (문24-2 ①번 응답 래위원회 등)에서 개발한 ① 예		나 그에 준하는 계약서	
문25. 귀하는 지난 1년간 체 팀 단위 계약은 총괄, 김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방 경우를 말합니다.	독, 팀장 등이 대표로 저	- 베작사 등과 계약을 체	l결하고, 이후 수입을
① 예 ® <b>문24-1로 이동</b>		② 아니오	
문25-1. (문25 ①번 응답자만) - ① 팀의 대표(총괄, 감독	- 등) ② 팀의 구성	원(보조, 지원 등)	
문26. 귀하의 가장 주된 예술홀	날동 계약 시, 계약 내용어 		
4 01015101 7171 711171 5	7111 7101	예	아니오 ②
1. 아이디어, 기획, 리서치 등	준비 작업	①	☞ 문25-1로 이동
2. 작업 종료 후 유지·보수 R	관련 업무	1	② ☞ 문25-1로 이동
문26-1. (문26의 ②번 응답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나 ① 예 ☞ 문25-1-1로 이동	업무를 경험한 적 있습!	⊣까?	박정에서 계약 내용에
문26-1-1.(문26-1의 ①번 응답 필요한 기간은 어느 정도	·	되지 않는 사전 준비기	간과 사후 보수기간에
글표인 기진는 이트 성급 ① 1일 이하 ④ 1개월~3개월 미만 ⑦ 12개월 이상	② 2일 이상~1주일 미 ⑤ 3개월~6개월 미만	⑥ 6개월~1	개월 미만 2개월 미만 체적으로:)
문27. 귀하의 주된 계약의 업· ① 계약서에 명기된 시작 ② 계약서에 명기된 시작 ③ 계약서에 시작일을 당 ④ 기타(구체적으로:	박일에 시작 박일과 상관없이 상황에 병기하지 않고 상황에 따	따라 시작	

① 예	② 아니오	
문29. 귀하는 주된 계약	약을 체결할 때, <예술인 고용보험>	을 가입하였습니까?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조건을 채우면 국가에서 구직급여와 같습니다.	예술인이 돈을 받고 일하는 동안, 일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보험료를 내고 일정 술인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의
① 가입하였다	② 가입하지 않았다	
문30. 귀하는 실업상태어	서 <예술인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수급 경험이	있다. ② 수급 경험이 없다	
문31. 귀하는 <del>공공</del> 예신	· 및 기금으로 운영하는 시각예술분이	· · 사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del>문30-</del> 1	1로 이동 ② 없다 ☞ 문 31로 이동	3
문31-1. (문31 ① 응답 골라주십시오.	·자만) 참여하신 <del>공공</del> 사업의 유형은 <u>'</u>	무엇이었습니까? 해당하는 유형을 <b>모</b> 두
① 창작지원	② 전시지원	③ 생활문화
③ 공간운영	⑤ 레지던시	⑥ 예술교육
⑦ 행사/체험	⑧ 공공미술	
⑨ 기타(구체적으	.로: )	
	·	
	응답자 특성	
문32. 귀하의 주민등록	응답자 특성 상 성별은 무엇입니까?	
문32. 귀하의 주민등록 ① 남성		
① 남성	상 성별은 무엇입니까? ② 여성	
① 남성	상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상 성별은 무엇입니까? ② 여성	( ) <i>\</i>
① 남성 문33. 귀하의 <b>연령</b> 은 [	는상 성별은 무엇입니까? ② 여성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문33. 귀하의 <b>연령</b> 은 [	사 성별은 무엇입니까? ② 여성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지와 <b>주된 예술활동 지역</b> 은 어디입니	<i>n</i>  ?
① 남성 문33. 귀하의 <b>연령</b> 은 대 문34. 귀하의 <b>현 거주</b> 2	상 성별은 무엇입니까? ② 여성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지와 주된 예술활동 지역은 어디입니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까?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① 남성 문33. 귀하의 <b>연령</b> 은 [	사 성별은 무엇입니까? ② 여성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지와 <b>주된 예술활동 지역</b> 은 어디입니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i>n</i>  ?
① 남성 문33. 귀하의 <b>연령</b> 은 단 문34. 귀하의 <b>현 거주</b> 2	*상 성별은 무엇입니까? ② 여성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지와 주된 예술활동 지역은 어디입니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⑰ 제주 ① 익정한 등 ①~①번 성택	까?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① 남성 문33. 귀하의 <b>연령</b> 은 대 문34. 귀하의 <b>현 거주</b> 2	*상 성별은 무엇입니까? ② 여성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지와 주된 예술활동 지역은 어디입니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⑰ 제주 ① 익정한 등 ①~①번 성택	까?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① 남성 문33. 귀하의 <b>연령</b> 은 단 문34. 귀하의 <b>현 거주</b> 2	*상 성별은 무엇입니까? ② 여성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지와 주된 예술활동 지역은 어디입니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⑪ 제주 ① 일정함 ☞ ①~⑪번 선택	까?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① 남성 문33. 귀하의 <b>연령</b> 은 단 문34. 귀하의 <b>현 거주</b> 2	*상 성별은 무엇입니까? ② 여성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지와 주된 예술활동 지역은 어디입니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⑪ 제주 ① 일정함 ☞ ①~⑪번 선택	까?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① 남성 문33. 귀하의 <b>연령</b> 은 단 문34. 귀하의 <b>현 거주</b> 2	*상 성별은 무엇입니까? ② 여성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지와 주된 예술활동 지역은 어디입니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⑪ 제주 ① 일정함 ☞ ①~⑪번 선택	까?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③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문28. 귀하는 가장 주된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나 조수(어시스턴트 등)을 고용하십니까?